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심층조사 보고서

2017. 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5
1. 조사 배경과 목적	7
2. 조사 실시	9
제2장 제품 안전관리 체계와 전생안법	17
1. 전생안법 개요	19
2. 전생안법 주요 내용과 영향	22
3.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기관	27
4. 전생안법 관련 업계의 주장	31
제3장 전생안법 영향 조사 결과	35
1. 소상공인 현황	37
2. 가구제조업	41
3. 가정용섬유제품제조업	58
4. 가죽제품제조업(제화)	78
5. 안경테제조업	92
6. 접촉성금속장신구제조업	104
7. 구매대행업	113
8. 전자상거래업	116
제4장 조사 결과 종합	121
1.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 비용 부담	123
2. 시장상황의 변화	132

<표 목차>

[표 1-1] 조사대상 공급자적합성대상제품	9
[표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별 심층조사 대상	12
[표 1-3] 심층면접 조사지역	13
[표 2-1] 규제대상 품목의 차이	25
[표 2-2] 한국인정기구 등록 시험기관	28
[표 3-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관련 제조업체 현황	37
[표 3-2] 수입업체 및 소상공인 수입업체 현황(2016)	38
[표 3-3] 전생안법의 관련 소상공인 업체수	40
[표 3-4] 사용공간에 따른 가구의 분류	41
[표 3-5] 가구 공급자적합성 적용 범위	46
[표 3-6] 가구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47
[표 3-7] 가구 심층면접업체 현황	48
[표 3-8] 가구업체의 원자재 사용 및 제품생산 특성	55
[표 3-9] 가구 제조업체당 시험 비용	56
[표 3-10] 가구 제조업종의 시험 비용	57
[표 3-11] 안전요건에 따른 가정용 섬유제품의 분류	58
[표 3-12] 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가정용섬유제품	59
[표 3-13] 가정용섬유제품의 관련 업태와 연관관계	61
[표 3-14] 가정용섬유제품 제조업체 현황	62
[표 3-15] 가정용섬유제품 도매업체 현황	62
[표 3-16] 가정용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	64
[표 3-17] 가정용섬유제품 심층면접 응답자 특성	65
[표 3-18] 가정용섬유제품 생산품목별 응답자 분포	65
[표 3-19] 가정용섬유제품 ‘상품기획~상품입고’ 소요기간	66
[표 3-20] 월간 사입하는 원단의 종류	66
[표 3-21] 가정용섬유제품 응답자의 전생안법 이해 정도	68
[표 3-22] 가정용섬유제품 심층면접업체 특성	73
[표 3-23] 가정용섬유제품 유해물질 검사비	75
[표 3-24] 가정용섬유제품 제조업체당 시험 비용	76
[표 3-25] 가정용섬유제품제조업종의 시험 비용	76
[표 3-26] 가죽의 가공공정	80
[표 3-27] 가죽제품 안전요구사항	83

[표 3-28] 가죽제품 심층면접 응답자 특성	84
[표 3-29] 가죽제품 심층면접업체 현황	84
[표 3-30] 가죽제품 유해물질별 시험검사비	89
[표 3-31] 가죽제품 제조업체당 시험 비용	90
[표 3-32] 가죽제품 제조업종의 시험 비용	90
[표 3-33] 안경테의 분류	92
[표 3-34] 안경테 심층면접 응답자 특성	98
[표 3-35] 안경테 심층면접업체의 전생안법 이해도	99
[표 3-36] 안경테 안전확인 제품시험 기준	102
[표 3-37] 안경테 제조업체당 시험 비용	103
[표 3-38] 안경테 제조업종의 시험 비용	103
[표 3-39] 접촉성금속장신구 안전요구사항	107
[표 3-40] 접촉성금속장신구 심층면접 응답자 특성	107
[표 3-41] 접촉성금속장신구 심층면접 업체의 전생안법 이해도	109
[표 3-42] 접촉성금속장신구 제조업체당 시험 비용	112
[표 3-43] 접촉성금속장신구 제조업종의 시험 비용	112
[표 3-4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전자상거래 규모	117
[표 4-1] 가구 기준별 시험비용 산출	123
[표 4-2] 가구 매출액·영업이익 대비 시험 비용	124
[표 4-3] 가정용섬유제품 기준별 시험 비용	125
[표 4-4] 가정용섬유제품 매출액·영업이익 대비 시험 비용	125
[표 4-5] 가죽제품 기준별 시험 비용	126
[표 4-6] 가죽제품 매출액·영업이익 대비 시험 비용	127
[표 4-7] 안경테 기준별 시험 비용	127
[표 4-8] 안경테제조 매출액·영업이익 대비 시험 비용	128
[표 4-9] 접촉성금속장신구 기준별 시험 비용	129
[표 4-10] 접촉성금속장신구제조 매출액·영업이익 대비 시험 비용	129
[표 4-11] 5대 품목의 시험 비용 종합	130
[표 4-12] 전생안법 시행에 따른 영향 종합	134

<그림 목차>

[그림 2-1] 우리나라의 공산품 안전관련 법의 변천	20
[그림 2-2] 현행 안전관리 제도	20
[그림 2-3] 전생안법 전후의 안전관리 체계 변화비교	22
[그림 2-4] 생활용품 안전관련 규제 변화	26
[그림 2-4] 시험진행 절차도	28
[그림 2-5] 전생안법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31
[그림 3-1] 가구산업 밸류체인	42
[그림 3-2] 여러가지 목재류	43
[그림 3-3] 우리나라 가구제조업체 분포 현황(2014)	45
[그림 3-4] 우리나라 가구류 무역수지	45
[그림 3-5] 가정용섬유제품업의 산업구조	60
[그림 3-6] 가정용섬유제품(의류)의 유통구조	61
[그림 3-7] 서울지역 가정용섬유제품업체의 업종별 분포	63
[그림 3-8] 의류봉제업체의 유통채널	64
[그림 3-9] 가죽제품의 밸류체인	79
[그림 3-10] 가죽구두 제조공정	81
[그림 3-11] 디자인별 안경테 분류	93
[그림 3-12] 안경테 산업 밸류체인	94
[그림 3-13] 금속 안경테의 제조공정도	95
[그림 3-14] 우리나라 안경 제조업체 분포 현황(2014)	96
[그림 3-15] 우리나라 안경테류 무역수지	97
[그림 3-16] 장신구(주얼리) 분류	104
[그림 3-17] 장신구(주얼리) 산업 밸류체인	105
[그림 3-18] 구매대행 절차도	113

조사 요약

1. 조사 개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¹⁾고 규정
- 이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소상공인업체와 수입을 대행하는 구매대행업체 등은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품시험 비용의 과다발생과 함께 산업기반 약화, 경쟁력 상실, 사업의욕 저하 등을 초래한다’며 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 그러나 전생안법의 공급자적합성확인에 의해 받게 될 소상공인의 영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한 자료가 부족
- 이에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품목과 구매대행업체, 전자상거래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심층조사를 실시
- 심층조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41개 품목 중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고, 제품의 구성이 다양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해서는 여러 번의 제품시험을 필요로 하는 업종인 가구, 가정용섬유제품, 가죽제품안경테, 접촉성금속장신구의 5개 품목과 구매대행업체, 온라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 5개 품목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제조, 유통 등의 밸류체인을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품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발생빈도를 추정하여 수반되는 비용을 분석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 구매대행업체와 온라인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품의 구매대행 및 온라인판매 과정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영향의 내용과 정도를 파악
- 이 조사연구는 심층조사표본수가 적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애로 이해에 충분한 가치가 있음

2. 조사 결과

- 5개 품목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제조업체는 40,570개로 전체사업체의 91.2%를 차지
-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소상공인제조업체가 다양한 신제품을 신속하게 출시하는 것은 특별한 경쟁우위
 - 특히 가정용섬유제품(의류), 안경테, 접촉성금속장신구(액세서리) 등은 중국제품과의 경쟁 또는 중국업체의 디자인 베끼기에 맞서 계속 신제품을 출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의 특성을 보여 줌
- 그러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해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면 신속성이나 제품의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업체의 특성상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소상공인업체는 사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로 인식
- 또한 법에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는 모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서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시험비용은 전생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모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제품을 기본모델로 할 때와 기존과는 다른 원자재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을 기본모델로 할 때로 가정하여 연간 시험횟수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가구는 연간 신제품을 연 24개 정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마다 시험을 하면 24회의 시험이 필요하고, 사용하는 원부자재가 달라질 때마다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 10회 정도의 시험이 필요
 - 가정용섬유제품은 신제품을 기본모델로 하면 468회의 시험이 필요하고, 신규 원단을 사용하는 경우를 기본모델로 하면 192회의 시험이 필요
 - 가죽제품은 신제품을 기준모델로 하면 57회의 시험이 필요하고, 신규 원단 사용 제품을 기준모델로 하면 18회의 시험이 필요
 - 안경테는 신제품을 기본모델로 하면 113회의 시험이 필요
 - 접착성금속장신구는 신제품을 기본모델로 하면 50번의 시험이 필요하지만 사용하는 주요재료가 단순하기 때문에 원재료가 변경된 경우를 기준모델로 하면 10회 정도를 시험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
- 5개 품목 소상공인업체 전체의 매출액은 10조8천315억원이고, 영업이익은 1조1천317억원인데, 소상공인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안전 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한다고 하면 시험비용으로 1조3천68억이 필요(매출액 기준 12.1%)하며, 영업이익의 115.5%를 지출해야 하므로 영업이익으로는 제품 시험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업종이나 업체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런데 전생안법시행규칙에서 전기용품은 '제품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달라지면 시험을 통해 공급자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을 생활용품에도 적용하면 새로운 원자재를 사용할 때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신규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기본모델로 하면 매출액의 3.0%, 영업이익의 28.8% 정도의 시험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제1장 조사 개요

1절. 조사 배경과 목적

2절. 조사 실행

1. 조사 배경과 목적

가. 조사 배경

- 정부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영향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제품의 안전관리체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을 제정하여 2017년 1월부터 시행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언론보도나 관련된 단체 등에서 ‘전안법’으로 불리기도 하고 ‘전생안법’으로 통용되기도 하는데, 조사보고서에서는 ‘전생안법’으로 통일하여 사용
- 통합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기법’)」을 따랐고,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을 적용하였음
- 정부는 통합법안인 전생안법이 이전의 전기법 및 품공법과 내용 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통합입법을 추진
- 그러나 생활용품 제조 또는 수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은 전생안법으로는 소비자 안전의 확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비용의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만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소상공인 단체, 언론의 우려로 전생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
- 이에 법률의 일부조항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었고 국회와 정부, 관련단체 등은 공급자적합성확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및 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임
 -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관련서류에 대한 5년간의 보관 의무 유예
 - 인터넷을 통한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자의 인터넷 정보 게시 의무 유예

나.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소상공인이 전생안법의 시행으로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
- 또한 전생안법 시행 시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영향을 줄이면서도 소비자안전 확보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취합·수렴하고자 함
- 본 조사결과는 전생안법이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안전 확보는 훼손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데 활용되도록 함

다. 조사 내용

- 전생안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별 소상공인업체 현황 파악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품목별 소상공인업체 수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품목별 소상공인업체 사업규모
- 전생안법에서 정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 기준 정리
 - 안전확인 방법과 절차, 시험분석 내용
- 전생안법에서 정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심층조사
- 전생안법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관련단체의 법률개정 또는 지원제도 등의 요구사항 파악
- 공급자적합성확인에 필요한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을 통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관련 현황과 개선과제 도출

2. 조사 실시

가. 조사 대상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제조업자

- 전생안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은 섬유, 화학, 기계금속, 건축, 생활의 5개 분야 41개 품목이 대상
- 41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에는 가죽제품, 화장비누, 화장지, 양초 등과 같이 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업종 전체가 확인대상인 것도 있고, 고령자용신발, 바퀴달린 운동화, 고령자 위치추적기 등과 같이 업종분류 단위가 아닌 특정 제품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음
- 본 조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41개 품목 중에서 산업분류기준상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먼저 선정한 후에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업체 수와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고 다품종소량생산 등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에 따른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조사대상으로 함
- 조사대상에 포함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은 가구, 가정용섬유제품, 가죽제품, 안경테, 접촉성금속장신구의 5개 품목이며, 제조·판매자를 대상으로 함

 [표 1-1] 조사대상 공급자적합성대상제품

분 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적용범위	표준산업분류업종	
		제조업	도매업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책상 및 테이블, 의자, 옷장·이불장, 사무용 캐비닛·파일 캐비닛·로커, 침대, 싱크대, 소파, 기타 가구류에 대하여 적용 • 다만, 유아용 의자, 아동용이단침대, 유아용 침대, 침대매트리스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별도 품목으로 관리되거나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실험실용 기자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32019 • C32021 • C32029 • C320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46431

분 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적용범위	표준산업분류업종	
		제조업	도매업
가정용 섬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용 섬유제품 •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한복, 학생복 • 침구류 • 기타 제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3221, C13223 • C14111, C14112 • C14120, C14194 • C14130, C14191 • C14192, C14199 • C14300, C14411 • C14419, C14491 • C14499, C15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46411, G46412 • G46413, G46414 • G46415, G46419
가죽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가죽 및 인조가죽, 천연모피제품 원단의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 이상인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4193 • C15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46416
안경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경테(렌즈가 있는 안경테를 포함 • 특수용도인 것(산업용 안경테 등)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27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46493
접촉성 금속장신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pendant),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에 적용 • 플라스틱, 목재 등의 표면을 금속재료로 도금한 제품도 포함 •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과 금(함량이 58.5%이상), 은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33120 • C33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46417

2) 구매대행업자

-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통관 전 안전확인 규정에 따라 41개 품목을 수입할 경우 안전확인 관련 증빙을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공산품 품질관리법의 내용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 수입업자는 전생안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음
- 그런데 전생안법 제26조에서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이 때문에 구매대행업자는 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온라인에서

카페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전생안법 개정 요구 등에 앞장서고 있어서 조사에 포함

3)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기관

- 전생안법 제23조는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소상공인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은 전생안법 제14조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심층조사에 포함

4) 소상공인 관련 단체

- 전생안법 시행과 때를 같이하여 의류 제조판매, 구매대행업자, 핸드메이드, 병행수입자 관련 단체 등이 전생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강력히 요구
- 이 중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법률개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전생안법대책위원회, 전폐모(전생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구매대행협회, 핸디모(핸드메이드 디자이너 모임) 등을 조사대상으로 함

5) 기타

- 전생안법 개정을 추진 중인 국회의원실의 입법보좌관 및 소비자단체

나. 심층조사 규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가구, 가정용섬유제품, 가죽, 안경테, 접착성장신구 등의 5개 품목을 제조 및 판매하는 85명의 소상공인업자 외 구매

대행업자, 안전확인시험기관, 전생안법관련단체 등 109개 표본을 심층면접

○ 보조적으로 통신판매업자 112명 대상 온라인으로 조사

☞ [표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별 심층조사 대상

구분			심층면접수	
			예비조사	본조사
소상공인업체	제조 및 판매업자	• 가구	4	10
		• 가정용섬유제품	5	40
		• 가죽제품	3	10
		• 안경	4	15
		• 접촉성금속장신구	5	10
	수입업자	• 구매대행업체	3	15
	판매업자	• 온라인판매업자	-	112
	합계(온라인조사 제외 시)		24	212(100)
관련단체	안전확인시험기관		4	
	전생안법 관련 단체		5	

다. 조사표본의 선정

1) 조사지역

○ 조사지역은 통계청의 사업체조사 및 도소매업조사 등의 통계자료와 다른 연구자료 등을 통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소상공인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파악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품목별 업체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확인하여 결정

○ 그 결과 가구는 경기도, 안경은 대구, 그리고 가정용섬유제품과 가죽제품, 접촉성금속장신구는 서울을 조사지역으로 선정

○ 품목별 세부조사지역과 심층면접 대상업체는 아래와 같음

- 가구 :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포천시의 가구제조 소상공인

- 가정용섬유제품 : 서울시 동대문도매시장의 의류도매업체
- 가죽제품 : 서울 성수동의 제화업체
- 안경 : 대구시의 안경테 제조업체
- 접촉성금속장신구 : 서울시 남대문 액세서리 도매상가 입주 제조업체

☐ [표 1-3] 심층면접 조사지역

품목 구분	조사지역	전체 소상공인 제조업체수(a)	조사지역의 소상공인	
			업체수(b)	비율(b/a)
가구	경기도 용인, 광주, 포천	9,784	4,021	41.1%
가정용섬유제품	동대문 도매의류시장	27,169	14,325	52.7%
가죽제품	서울 성수동, 동대문 일대	654	359	54.9%
안경	대구	578	465	80.4%
접촉성금속장신구	남대문 액세서리 상가지역	2,385	1,393	58.4%
합계		40,570	20,563	50.7%

* 자료 : 경제총조사(통계청, 2015)

2) 조사표본 선정

- 심층조사대상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별 업종단체에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에 적합한 업체를 추천해 주도록 요청하여 소개받은 업체를 1차로 조사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에 조사를 마친 업체가 소개해 준 인근의 동종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
- 다만, 가구는 업종단체의 협력을 받지 못하여서 조사자가 직접 해당 지역의 업체를 무작위로 방문하여 조사
- 제조업체 중에는 도매업체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임가공해서 단순 납품하는 업체도 많은데, 단순 임가공업체에게는 전생안법에서 적시한 안전확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단순 임가공 제조업체는 제외하고 제조·판매를 겸하는 경우 조사 표본으로 함

라. 조사 방법

- 조사는 조사대상 품목 연관 업체 3~4개를 연구책임자가 방문하여 전생안법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전생안법에 의해 소상공인이 받게 될 영향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여 심층분석이 필요한 항목을 도출
- 예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본조사를 위한 기본 설문조사표를 작성
- 본조사는 먼저 소상공인이 설문조사표를 작성하게 한 후 조사 응답내용을 보면서 즉석에서 필요사항을 추가 질문하여 내용을 심층파악하는 형태로 진행
- 본조사는 사전에 작성한 조사지침서로 사내교육 실시(2시간)하고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상황별 대응방법 및 조사표 작성기준 숙지 후 조사 투입

마. 조사비용 추정 기준

- 본 조사는 전생안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소상공인이 제품의 안전확인을 위해 외부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으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단위인 모델을 인식함에 있어서 소상공인과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해석이 서로 달라서 명확하게 한 가지 기준으로 영향의 정도를 설명하기는 불가
 - 소상공인은 전생안법에서 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을 제품의 칼라·소재가 변경된 제품은 물론 동일 원재료라도 로트가 달라지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
 -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수입업체가 최소한의 안전 확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을 고려하면,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은 제품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입장
 -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시험대상이 원자재이거나 제품이거나를 따지지 않고 시험을 의뢰한 대상물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그 결과를 제공할 뿐이지 기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

전생안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p>1. "모델"이란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p> <p>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분류별 모델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분류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을 말한다.</p> <p>3.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분류별 모델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분류 중에서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p>

○ 본 조사에서는 현시점에서 모델에 대한 각계의 해석을 종합하고, 기존에 제조된 제품은 공급자적합성이 확인되었다는 전제하에 신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본모델을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기본 단위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음

- 전생안법 이전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적용기준 및 제품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품을 기본모델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생안법 시행규칙에서도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음
- 생활용품의 안전적용기준 및 제품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대부분 제조 원자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같은 원자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제조 공정상 제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해석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모델 범위를 포함하고자 아래의 경우도 조사하였음

- 신제품을 만들 때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을 받는다고 할 경우
- 제품생산 로트 단위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을 받는다고 할 경우

제2장 제품 안전관리 체계와 전생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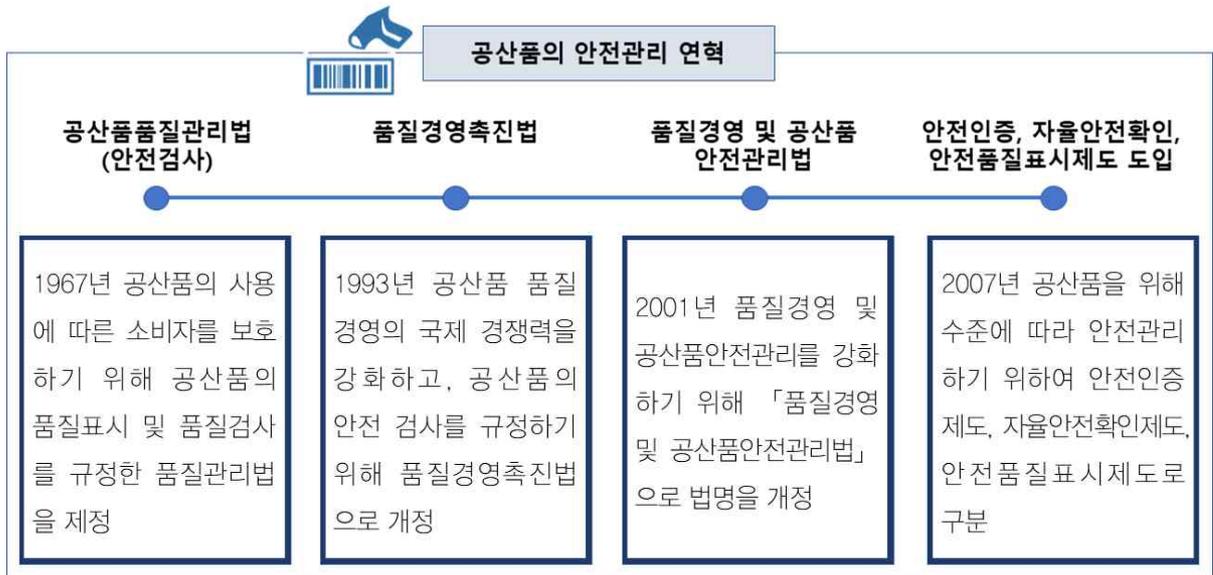
- 1절. 전생안법 개요
- 2절. 전생안법 주요 내용과 영향
- 3절.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기관
- 4절. 전생안법 관련 업계의 주장

1. 전생안법 개요

가. 법 개정 배경

- 2017년 1월 28일, 전기용품과 공산품(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종합관리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발효
 - 기존 제품안전관리제도는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공산품에 대해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운영됨
 - 하지만, 제품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통합법안 제정
- 전생안법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안전관리 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와 감독 강화를 위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생활용품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종류는 줄이고, 주기를 늘리는 등 사업자의 부담 경감
 - 또한,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안전강화를 위한 조항들을 마련
- 하지만, 법 시행을 전후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은 ‘전생안법이 오히려 소상공인 제조, 판매업체의 애로를 가중시키는 법’이라고 반발하면서 법 시행에 대한 논란이 표면으로 부상
 - 정부와 소비자단체 등은 이 제도가 기존에 있던 규제들로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으며,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
 - 반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사업자들은 인증비용의 과다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며, 현실적으로 법의 준수가 어려워 불법업자를 양산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집단적 움직임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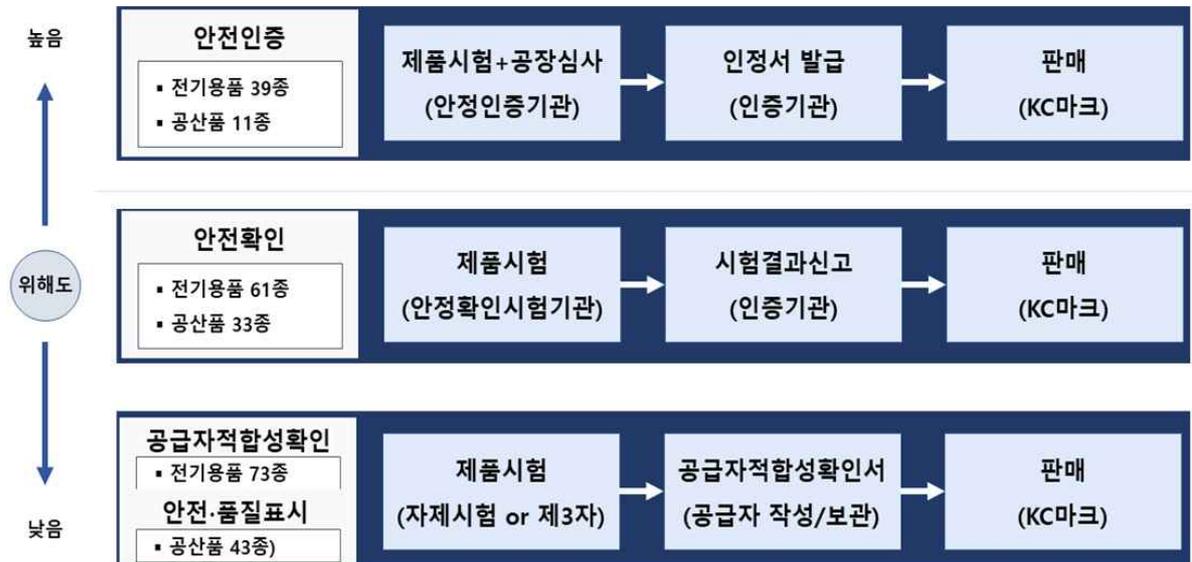
[그림 2-1] 우리나라의 공산품 안전관련 법의 변천



나. 제품안전 관리제도

-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법체계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을 만드는 자가 안전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는 사전관리체계를 채택

[그림 2-2] 현행 안전관리 제도



- 현행 전생안법은 제품별 위해수준에 따라 3단계 안전관리 체계(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로 구성
- 안전인증제도는 위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을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제품시험+공장심사)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만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 ‘제품시험 → 공장심사 → 인증서 발급 → 정기검사’의 절차를 거침
 - 안전확인제도는 '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안전인증보다 위해수준이 낮은 제품에 대해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한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안전인증제도와 달리 공장심사와 정기검사 절차를 생략
-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위해가 일부 존재하지만 제조자 시험만으로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제품을 스스로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으로 지정하되, 사업자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장이 감시하는 민간 자율안전관리 제도로서 '12년에 도입되었고 개정법률로 승계되어 시행 중

2. 전생안법 주요 내용과 영향

가. 개정 경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16.1.27 개정, 2017.1.28 시행)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017.1.28 폐지)
- 통합 배경 : 법 운영의 합리성 제고 (법 집행의 형평성, 합리성 유지)

☞ [그림 2-3] 전생안법 전후의 안전관리 체계 변화비교



- 2015년 8월 27일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어 같은 해 12월 31일 국회본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며, 2016년 1월 27일 공포되어 2017년 1월 28일 시행
 - 다만, 논란이 확대되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시험결과서 보관의무와 인터넷을 통한 관련 정보 게시 의무는 금년 말까지 유예

나. 주요 개정 내용

- 공급자적합성 확인관리 강화 : 생활용품의 서류 보관 의무 신설, 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제도 도입 등으로 규제를 강화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신설(법 제23조 제4항)

법령 내용	④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 기존 법에는 안전확인대상 공산품과 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해서만 서류 보관의무를 부과
- 서류 보관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42조 제2항 제12호)
- 단, 법 시행 초기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험 결과서 보관 의무를 유예함으로써, 올 연말까지는 제품설명서만 보유하면 됨 (시행규칙 부칙 제3조)

○ 표시·정보제공 의무 강화 : 인터넷판매 제품의 인증관련 정보게시 의무와 안전 인증/확인 표시 없는 생활용품의 대여·중개 금지 등 판매·대여·중개·대행업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법 제9조, 제18조, 제25조)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려는 판매업자 등은 안전인증 등의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정상적으로 안전이 확인된 제품만이 유통되고 소비되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 게시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법 제42조 제2항)
- 이에 따라, 판매자가 인터넷상 게시해야 할 인증정보는 인증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등임(시행규칙 제19조, 제35조, 제45조)
- 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조치를 취한 통신 판매중개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
- 즉,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 인증이나 확인 표시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

- 벌칙강화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의 사용금지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벌칙 강화
 - ‘판매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며,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은 기존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강화(제재 대상 사업자 범위는 동일)
 -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용품의 ‘대여·중개 금지’ 신설(법 제10조, 제19조, 제26조)
- 안전인증/안전확인 책임자 확대 : 안전인증/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용품의 판매·사용 금지 대상이 기존에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에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로 확대
 - 기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제외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 운영자)도 판매중개업자의 범위에 포함
 - 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 중개자가 일정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
 - 대여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의 판매·사용 금지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법 제42조)
-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통일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
 -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통일(시행령 제7조 제3호)
 -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과 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인증 대상 제품의 ‘3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시험설비를 보유하는 것으로 통일
 - 기존에는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2분의 1 이상, 생활용품의 경우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4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시험설비를 보유하도록 규정

- 안전인증기관 등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신설(법 제13조 및 제22조)
 -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때 그 업무정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조자 등이 적시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지 못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함

다. 전기안전법의 적용범위 변화

- 규제 대상 품목의 확대 여부 : 규제 대상 품목에 있어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어린이용 장신구’가 제외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에 ‘온열시트’가 추가되었을 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표 2-1] 규제대상 품목의 차이

구분		(구)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공산품)	전기용품+생활용품
대상 품목	안전인증	41	6	47
	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	66	28	95
	공급성적합성확인 (안전·품질표시)	74	42	115

- 그러나 소상공인 제조업체는 전반적으로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 것으로 인식
 -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체도를 통합·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는 완화,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 것으로 확인됨
-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허위·부정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

분 규정신설,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제도 도입 등 규제 강화된 조항도 있지만,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정기검사 주기 완화, 일회성 수입/생산 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규정 신설,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유효기간 폐지, 임의인증제도 폐지 등 규제 완화된 조항이 다수

- 특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완화(정기검사 주기 완화, 일회성 수입/생산 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처벌 경감 등)
- 이에 반해, 생활용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허위·부정 신고 등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및 확인 표시 등의 사용금지/개선명령 신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서류보관의무 신설 등 규제가 강화
- 특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허위·부정 확인에 대한 조치와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서류 보관의무가 신설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이 강화된 것으로 느낄 수 있음

 [그림 2-4] 생활용품 안전관련 규제 변화

구분	규제 강화		규제 완화
안전인증	대상 제품 중 '4분의 1 이상' 에서 '3분의 1 이상' 시험설비를 보유하여야 인증기관 지정	인터넷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정보 게시의무(위반시 과태료부과) 신설(제조/수입/수입대행/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대여업자 등)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신설
안전확인	허위/부정 신고 등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및 안전확인표시 등의 사용금지명령/개선명령 규정 신설(제조/수입업자)	인증/확인 표시 없는 제품의 중개/대여 금지 신설(수입대행/판매중개/구매대행/대여업자)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신설
공급자적합성확인	허위/부정 확인 등에 대한 공급자적합성 확인 표시 등의 사용금지명령/개선명령 신설(제조/수입업자) 서류 보관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신설(제조/수입업자)		유효기간 폐지(기존 5년)

3.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기관

가. 현황

1)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기관

- 전생안법시행규칙 제38조3항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기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 제품시험을 실시한 자를 말하며,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기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용 서류발급의 의무를 지님
- 전생안법은 안전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시험기관의 자격과 조건을 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자격과 조건을 두지 않음
- 따라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표준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면 누구나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기관이 될 수 있고,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 줄 수가 있음

2) 등록 시험기관 현황

- 공급자적합성확인이 가능한 시험기관에 대한 등록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인정기구²⁾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은 2017년 7월 기준 497개가 있음
- 이 중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과 관련된 섬유, 피혁, 광학, 유아용품, 가정용품, 사무용품 등의 분야로 등록된 시험기관은 30개임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은 안전인증 시험기관이면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시험기관

2)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국가교정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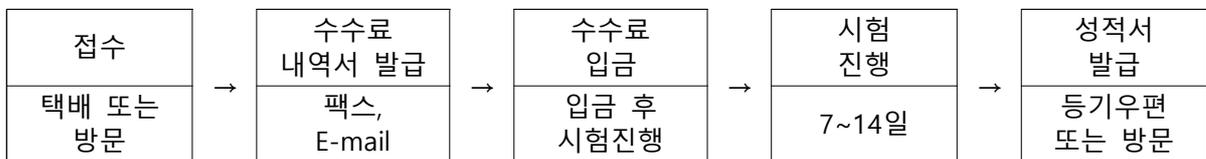
[표 2-2] 한국인정기구 등록 시험기관

구분	섬유	피혁	가정용품	유아용품	광학	계	비고
시험기관	15	6	3	18	6	30	중복등록

3) 시험 운영

- 시험기관의 시험절차와 시험관련 서비스는 대부분 비슷한데 온라인, 방문, 팩스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시험샘플은 택배,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

[그림 2-4] 시험진행 절차도



- 시험진행과 결과는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는 재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서류의 보관업무 자체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
- 시험비용은 각 시험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시험항목별로 공개하고 있으나 실제 확인한 결과 시험제품의 특성, 시험의뢰 건수 등에 따라 다소의 할인이 가능하다고 안내
 - 실제 당사가 면접한 업체의 경우 시험건수가 많아서 약간 할인받고 있다고 설명
 -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개별업체가 시험을 신청할 경우 대기업에서 받는 유리한 조건으로 시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소상공인이 시험가격을 낮출 수 있는 단체협약 등의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실시 현황

-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 실시 횟수나 수수료 등은 시험기관이 영업비밀로 취급하여 외부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은 불가

- 그러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에서 성인용 제품에 대한 시험은 많지 않고 주로 유·아동용 시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
 - 성인용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은 지금까지 의무사항이긴 했지만, 위반해도 유·아동 제품에 비해 처벌이 가벼웠기 때문에 대기업을 제외하면 거의 시험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험기관이 적극적으로 영업도 하고 시험관련 변경사항이나 규정변경이 있을 경우 알려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 아웃도어업체 B사의 사례 >

“ 우리회사는 연간 15억원 이상을 시험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성인용제품만 아니고 어린이용 제품도 포함한 것입니다. 시험기관은 두 곳을 지정해서 거래합니다. 얼마 전에도 전생안법 관련 규정 변경 등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의견

- 시험기관은 고객이 의뢰한 제품에 대해서 원하는 시험을 거쳐 성적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시료를 제품으로 해야 할지 원단이나 부품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맡기는 것으로 시험을 진행
- 시험기관은 고객이 시험신청서에 적은 기본모델명과 최종제품명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어떤 모델을 기준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은 내지 않음
 - 그러나 전생안법의 본격 시행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의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받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이 전에 실시한 시험성적서가 어디까지 유효한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서비스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 전생안법 시행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현재의 시

험기관에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형 시험기관과 민간시험기관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공공기관형 시험기관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분야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에서도 유·아동 제품에 대한 시험을 주로 맡게 될 것이고, 나머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시험은 기존 민간시험기관이나 신규로 진입하는 시험기관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

○ 법에서 정한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서류보관의 의무에 대해서 시험기관이 일정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의견

- 시험기관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KC) 시험분석신청서를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접수, 확인, 인증서 재발부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관련서류에 대한 5년간의 보관의무를 지원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

○ 동대문 의류업체 등의 소상공인업체가 시험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품의 출시가 늦어지고 그것이 경쟁력 약화 원인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험소요기간이 통상은 5일 정도이나 빠를 경우 3일, 긴급한 경우는 2일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비용은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애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설명

○ 시험수요가 증가하면 민간업체가 생길 것이고 그에 따라 시험비용을 할인하면 시험의 품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지에 대해서는 시험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시험비용의 인하는 소상공인입장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된다고 생각

4. 전생안법 관련 업계의 주장

가. 소상공인의 문제 제기

○ 안전확인 제품시험 비용이 과다 발생

- 전생안법에서 정한 제품모델별 안전확인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원가를 상승시키고, 원가상승은 값 싼 수입품 대비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됨
- 특히 가정용섬유제품의 경우 원단의 종류와 색상, 디자인이 다양해서 시험성적서를 갖추기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전생안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요 논지 중의 하나

☞ [그림 2-5] 전생안법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 빠른 제품생산을 무기로 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상실

- 동대문의류, 안경테, 접촉성금속장신구 등이 중국제품이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은 것은 ‘값싸고 좋은 품질’이 바탕이 되었겠지만 제품의 기획에서 생산까지를 수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분업화된 생산시스템과 제품출시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기여
- 그러나 전생안법이 시행되면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안전확인을 받는데 최소 1주일 이상의 시험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제품개발과 시장반응을 통한 재생산의 강점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한 시즌별로 판매할 제품을 기획할 수 있는 회사와 그런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금력을 가진 업체만 생존가능

- 전생안법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의류, 안경, 액세서리류는 패션제품으로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제품이 우리나라 업계 전체의 디자인을 주도하는 형편임. 대기업도 동대문, 남대문에서 좋은 디자인을 참고해서 상품을 기획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은 기동성 있는 산업활동이 있을 때에만 가능함

< 전생안법과 원가상승 관련 주장 >

- ☞ 나염티셔츠 1장당 검사료는 1,133원으로 생산원가의 27.4%를 차지
 - 3색상을 초도물량 300장으로 생산할 경우
 - 1장(기본 반팔티)당 생산원가 3,000원
 - 검사료 : 34만원(원단검사료 27만원+나염검사료 7만원)
 - 1장당 검사료 : 1,133원 (34만원/300장)
- ☞ 8천원짜리 슬리퍼 한 켤레의 검사비용이 27만8천원
- ☞ 80원짜리 금속 침 액세서리 부자재 2개 검사 비용이 7만4천원

< 전생안법과 제품출시 지연 주장 >

- ☞ 동대문 의류 상권의 판매핵심은 트렌드(유행)를 확인한 후 단시간에 '기획→판매' 과정을 반복하는 것인데, 지금은 2~5일이 소요되지만 법이 본격 시행되면 원단검사 기간이 5일 늘어나게 되어서 7~15일이 걸릴 것이다. 특히 여러 원단으로 만들면 인증기간만 2주 이상 걸린다
- ☞ 액세서리의 경우 검사 및 인증하는데 9일이 걸린다. 액세서리는 오전에 재료를 사다가 오후에 팔기도 한다. 전생안법이 되면 그런 것은 꿈도 못 꾸다

○ 법의 실효성과 현실성

- 전생안법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법을 지킨다고 해도 소비자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의견
- KC정보은행³⁾자료에 따르면 원단 673건 중 불합격한 것은 2.5%로 아킬아민 1건, 폼알데하이드 1건, PH 15건으로 '무관리 상태의 원단이 이 정도이므로 더 관리를 강화해서 얻는 이익보다 관련 비용이나 시간이 더 큰 손실이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생각한다면 다른 방식의 관리, 예를 들면 원단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주장

3) 서울시에서 공급자적합성대상제품의 안전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한 원단시험 결과 DB

- 법의 실효성도 문제가 되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인데 가죽공예는 1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일이 허다하고 한 개를 만들 때마다 사용하는 약품이나 가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품 하나 당 검사 한 번을 받아야 하는데, 10만원짜리 핸드폰케이스 검사 비용만 20만원 넘게 드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 구매대행업은 고객을 대신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므로 일종의 서비스업이며, 구매대행업자는 그냥 통관절차만 도와주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안전확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지

나. 이슈의 정리

- 개정 전생안법은 과잉규제에 대한 논란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는데 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와 영향을 분석해보니 규제대상 품목은 변화가 없으나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조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인식되어 반발이 확산
 - 특히,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한 규제가 다수 완화되고 공급자적합성대상 제품에 대한 규제는 많이 강화되면서, 위해수준(3단계)에 따른 안전관리 차별화가 무뎠고 결과적으로 규제 수준(강도)이 유사하게 수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류·신발·가죽제품 등) 제조·수입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 인터넷을 통한 안전 인증/확인 정보 게시 의무가 신설되고 인증·확인 표시 없는 제품의 중개·대여가 금지되면서 특히, 구매대행·수입대행·대여·판매중개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동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사업자 특히 소상공인들은 시험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동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 이러한 법 시행의 찬반은 규제와 관련한 중요한 가치인 '소비자안전의 확보와 소상공인 보호'의 두 가지 관점으로 대변되는 모습을 보임

-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현상을 두 가지 가치의 대립적인 구조로 파악하기 보다는 원래 입법(규제)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이러한 규제 또는 방법이 타당한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동법과 관련한 주요 규제는 소비자안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규제’에 속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 등에 있어서 기준을 강화하고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진입제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경제적 규제’(구체적으로 ‘진입규제’)의 성격도 내포
 - 정부가 사회적 규제인 제품안전 규제를 (강화)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또는 비의도적으로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과 타격을 줌으로써 현재의 논란을 초래

제3장 전생안법 영향 조사 결과

- 1절. 소상공인 현황
- 2절. 가구제조업
- 3절. 가정용섬유제품제조업
- 4절. 가죽제품제조업
- 5절. 안경테제조업
- 6절. 접촉성금속장신구제조업
- 7절. 구매대행업
- 8절. 전자상거래업

1. 소상공인 현황

가. 제조업체⁴⁾

- 본 조사대상에 포함된 5개 품목의 제조업체는 44,486개이며 이 중 소상공인업체는 40,570개로 전국사업체의 91.2%임
- 가구 제조업체는 전국에 10,609개가 있으며, 소상공인업체는 9,784개로 전체 가구업체의 92.2%임
- 가정용섬유제품 제조업체는 전국에 29,931개가 있으며, 소상공인업체는 27,169개로 전체 사업체의 90.8%임
- 가죽제품 제조업체는 전국에 783가 있으며, 소상공인업체는 654개로 전체 사업체의 83.5%임
- 안경테 제조업체는 전국에 643개가 있으며, 소상공인업체는 578개 업체로 전체 사업체의 89.9%임
- 접촉성금속장신구 제조 및 도매 업체는 전국에 2,520개가 있으며, 소상공인업체는 2,385개로 전체 사업체의 94.6%임

☐ [표 3-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관련 제조업체 현황

구분	제조업체		소상공인업체 비율(b/a)
	전체(a)	소상공인(b)	
가구	10,609	9,784	92.2%
가정용섬유제품	29,931	27,169	90.8%
가죽제품	783	654	83.5%
안경테	643	578	89.9%
접촉성금속장신구	2,520	2,385	94.6%
합계	44,486	40,570	91.2%

4) 경제총조사(통계청, 2015)

나. 수입업체⁵⁾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입업체는 168,700여 개이며,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업체는 121,400개로 소상공인의 비중은 71.9%임
- 비내구성소비재 수입업체는 우리나라 전체에 56,427개가 있으며 이 중에서 1~9인 규모의 업체는 41,377개로 73.3%임
 - 수입되는 재화는 내구성소비재와 비내구성소비재로 구분되는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은 비내구성소비재로 분류되는 품목이 많은데 인쇄물, 의류, 가죽·고무제품, 신발류, 가방류, 화장품류, 비내구성 생활용품 등을 비내구성소비재로 분류
- 따라서 비내구성소비재 수입업체 중에는 상당수의 소상공인 수입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업체 수는 파악이 불가
- 수입업체는 전생안법 이전에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 후에 통관할 수 있었고, 전생안법에서 특별히 새롭게 부여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 안전관련 법이 전생안법으로 개정되면서 수입업자가 받는 영향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볼 근거는 미약

 [표 3-2] 수입업체 및 소상공인 수입업체 현황(2016)

구분	전체(a)	소상공인업체(b)	비율(b/a)
수입업체수	253,774	172,488	67.9%
소비재 수입업체	86,806	62,973	72.5%
비내구성소비재 수입업체	56,427	41,377	73.3%

- 수입업체 중 병행수입업체가 전생안법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병행수입은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으나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에 따라 등록된 업체는 2017년 6월말 기준 16개인 것은 확인

5) 기업특성별 무역통계(통계청, 2016)을 근거로 작성

다. 구매대행업체

- 구매대행업체는 표준산업분류 상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업종이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통해 업체현황을 파악하기는 불가
-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도 해외직구는 1,739만 5천 건에 16억3천만 달러로 전체 수입규모의 0.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활발한데, 구매대행업체에서는 해외직구량의 절반 정도가 구매대행을 통해 통관되었을 것으로 추단
- 구매대행업체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서울지역의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사업 여부를 온라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매대행 현황조사 >

- ☞ 2017년 6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통신판매사업자는 89,184 업체임
- ☞ 이 중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신고를 한 업체 13,401개의 통신판매 품목을 파악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업체 6239 곳(46.5%)을 모집단으로 하여 온라인조사를 실시
- ☞ 발송된 설문 중 회수된 유효설문은 112개였으며 이 중 9개 업체가 구매대행사업을 한다고 응답

- 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대행업체를 추정하면 구매대행사업자는 전국에 약 1만6천여개의 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2015년 기준 전국의 통신판매사업자는 444,021개 업체인데, 그 가운데서 취급상품을 식품, 가전제품, 컴퓨터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업체를 제외하면 약 20만 6천여 업체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통신판매사업자 중 8.0%가 구매대행사업을 한다는 온라인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체는 대략 1만6천여 업체로 계산됨

라. 전자상거래업체

-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체는 전체 10,618개이고 소상공인업체는 9,711개로 91.5%임

마. 종합

- 전생안법과 관련된 소상공인업체를 추정한 결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91.1%, 수입업체의 73.3%, 구매대행업체의 93.8%가 소상공인업체로 파악됨

☐ [표 3-3] 전생안법 관련 소상공인 업체수

구분	전체(a)	소상공인(b)	비율(b/a)	비고
제조업	44,486	40,570	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가정용섬유제품 • 가죽제품, 안경 • 접촉성금속장신구
전자상거래업	10,618	8,971	84.5%	
수입업	54,427	41,377	76.0%	전체 수입업체 중 비내구소비재를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수를 추정한 것임
구매대행업	16,000	15,000	93.8%	비소상공인업체수는 업체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가 추정한 것임

2. 가구제조업

가. 가구산업 이해

1) 가구의 정의와 분류

-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이며,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에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 있는 것도 포함
- 가구는 전통적으로 목재로 제작되어 왔으나, 현재는 철재 등의 금속류나 플라스틱을 이용해서도 제작
- 국내 가구산업계에서는 가정용 가구류, 주방용 가구류, 사무용 가구류, 특관 가구류의 4종류로 구분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
- 특관 가구류는 판매방식에 따른 분류로 아파트의 현관 신발장, 거실가구, 주방가구, 옷방 가구물 등의 붙박이 가구, 주방용 가구, 사무용 가구 등을 포함하는데 아파트 붙박이장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서 제외

☐ [표 3-4] 사용공간에 따른 가구의 분류

구분		사용되는 가구	
실내가구	가정용 가구	침실용	• 장롱, 침대, 협탁, 서랍장, 화장대, 의자 등
		거실용	• 소파, 콘솔, 거실장, 싱크대, 장식장, 티테이블, 옷걸이
		주방용	• 식탁, 의자,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기능장
		욕실용	• 수납장
		공부방용	• 책상, 의자, 책장, 옷장, 수납장, 침대
	사무용 가구	• 책상, 의자, 캐비닛, 로커, 책장, 서랍장, 파티션	
	상업용 가구	식당 등	• 탁자, 의자, 소파, 스툴, 진열장, 실내벤치, 옷걸이
병원용		• 침대, 수납장, 책상, 의자, 책장	
공연장 등		• 의자, 테이블, 책장	
실외가구	거리가구	• 벤치	
	정원가구	• 벤치, 탁자, 의자	
	경기장	• 의자	

2) 가구의 밸류체인

- 가구는 디자인, 원부자재 조달, 제조, 보관, 판매(유통), 배송, 설치의 7단계의 특색 있는 밸류체인을 가짐
- 디자인은 가구산업의 R&D활동에 해당하며 가구산업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나 우리나라 소상공인 업체는 디자인 역량이 매우 뒤떨어지기 때문에 단순 하청생산만 하는 곳도 다수
- 가구의 주원료는 목재 또는 목재 가공품인 목질재, 금속재, 플라스틱재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목재와 목질재는 대부분 수입되거나 대기업이 공급을 주도
- 가구제조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자동화하기 곤란한 부분이 커서 노동집약적인 것이 특징
- 가구유통은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유통마진이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전통적인 유통방식은 넓은 매장을 이용하여 전시판매하는 형태이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판매방식이 급증하는 추세

☐ [그림 3-1] 가구산업 밸류체인



*자료 : 가구 산업경쟁력 조사(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2016)

3) 가구용 목자재

- 가구는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초 재료는 천연목, 천연목을 가공하여 만든 합판,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과 같은 목재제품임
- 대표적인 목재제품인 합판, MDF 등은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사업으로 대부분 대기업이 생산
 - 합판(PW, Ply Wood)은 원목을 원주 방향으로 얇게 깎아서 두께만큼 가로와 세로결로 여러 겹을 적층하여 유기 접착제로 접착시킨 다음 표면을 가공하여 만든 판재
 - 파티클보드(PB, Particle Board)는 목재를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접착제를 혼합한 후 성형하고 열압착하여 만든 판재
 - 중밀도섬유판(MDF, Medium Density Fiberboard)는 목재를 섬유화한 것에 합성수지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 열압착하여 만든 판재

 [그림 3-2] 여러가지 목재류



- 가구의 표면은 천연목, 합판, 파티클보드 및 중밀도섬유판 같은 목재료를 그대로 노출시켜 완성하기도 하지만 천연재료로는 표현하기 힘든 다양한 색상과 무늬결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표면재료를 부착하여 마감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표면재료는 무늬목, LPM, HPM, PVC, 하이그로시도장 등이 있음

- 무늬목은 천연목을 종이처럼 얇게 썬 목재
- LPM은 종이에 인쇄로 모양지를 만들고 멜라민수지를 함침시켜 성형한 시트
- HPM은 종이 및 섬유질의 기재에 열경화성수지를 함침하여 성형한 판재
- PVC는 PVC를 소재로 만든 필름류
- 하이그로시도장은 고광택 코팅 재료를 도포하여 광택이 강한 표면효과를 얻은 도장 방법의 일종

4) 우리나라 가구산업 특성

○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

- 우리나라 전체 가구제조업체수는 10,609개로 10인 미만 기업이 9,784개인 92.2%를 차지
- 가구 원자재는 대기업이 제조·유통을 주도하고 있고,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제조업체는 부가가치를 내기 어려운 산업이며, 쉽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

○ 가구는 관련 업체 간 협업이 필요한 클러스터형 산업

- 국내 가구업체는 수도권 지역에 68.5%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도가 57%로 국내 가구업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인천은 대기업 위주의 가구업체가 많고 광주, 용인, 포천, 파주 등은 중소기업이 주로 사업을 영위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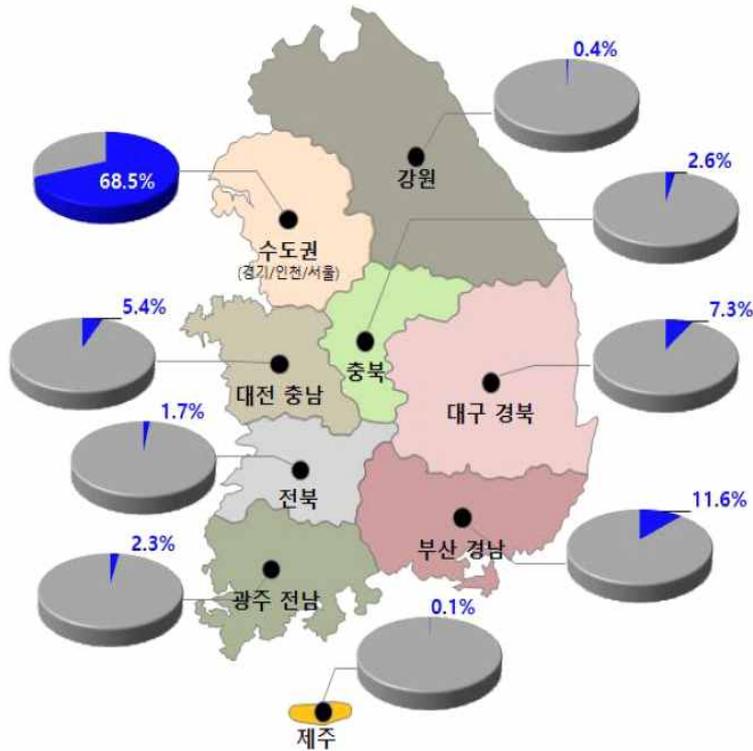
○ 대기업 주도형으로 전환되는 산업

- 국내 가구생산액 중 매출 1천억원 이상의 상위 업체의 매출액은 전체 가구산업 규모의 절반에 육박하며, 매출 100억원 이상인 100여 개의 매출이 가구산업 전체의 65%를 점유

○ 수입완제품의 지속적 확대

- 가구산업의 무역수지는 '13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15년에는 무역적자폭이 약 9억 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가구류 수입이 빠르게 증가

[그림 3-3] 우리나라 가구제조업체 분포 현황(2014)



* 자료 : 가구 산업경쟁력 조사(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2016)

[그림 3-4] 우리나라 가구류 무역수지



나. 가구에 대한 전생안법 규정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가구류

○ 전생안법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은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책상 및 테이블, 의자, 옷장·이불장, 사무용 캐비닛, 침대, 소파, 기타 가구류에 적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외 가구류

- 유아용 의자,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침대, 침대 매트리스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별도 품목으로 관리되거나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실험실용 기자재
- 상업시설용 및 아파트 붙박이 가구 등

☞ [표 3-5] 가구 공급자적합성 적용 범위

품목	적용 범위
책상 및 테이블	일반 가정,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목재 사무용 책상, 목재 테이블, 사무용 응접 테이블, 목재식탁, 강제 사무용 책상, 가정용 학습 책상에 한함
의자	일반 가정,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목재 의자, 목재 열람 의자, 목재 사무용 의자, 강제사무용 의자, 가정용 학습의자, 사무용 응접 의자에 한함
옷장·이불장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목재 가구로, 옷장, 이불장에 대하여 적용함
사무용 캐비닛·파일 캐비닛·로커	학교,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사무용 캐비닛, 파일 캐비닛, 로커에 대하여 적용함
침대	침대란 수면에 사용하는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지지하는 구조체로 조합된 것을 말하며, 주택용 보통 침대, 소파 침대, 분할 침대, 2단 침대에 대하여 적용함
싱크대	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복합 취사대, 벽장, 후드장, 코너벽장, 키친장, 장식장 등에 대하여 적용함
소파	일반 가정, 사무실, 학교, 도서관 등에서 사용하는 소파에 대하여 적용함
기타 가구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목재가구로, 화장대, 문갑 및 학교에서 사용하는 청소용구함, 도서관 등에서 사용하는 목재도서정리서가 및 정리함, 사무실용 철재 서고 등에 대하여 적용함

2) 안전요건

- 가구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안전요건은 표면가공된 목재재질에 대해서만 적용
 - 표면가공이라 함은 도장, 무늬목, PVC, 시트, 피니싱 포일, 저압 멜라민 화장판(LPM), 고압 멜라민 화장판(HPM) 등 가구부재의 표면을 장식하거나 마감하는 형태를 의미함
- 안전요건은 방출량, 톨루엔 방출량,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등이 허용기준치 이하여야 함

☐ [표 3-6] 가구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허용기준치
데시케이터법	폼알데하이드 방출량(mg/L)	평균값이 1.5 이하일 것
소형챔버법	폼알데하이드 방출량(mg/m ² .h)	0.12 이하일 것
	톨루엔 방출량(mg/m ² .h)	0.080 이하일 것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TVOC(mg/m ² .h)	4 이하일 것

3) 시험 방법

- 가구의 안전확인 시험은 대부분 가구 제작용 원재료 시편으로 실시되며, 제품 자체를 검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시험은 데시케이터법을 주로 사용하며, 시험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통상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

다. 소상공인 심층면접 결과

1) 심층면접 개요

- 4곳을 예비조사하고 광주, 용인, 포천 지역의 가구업체 10곳을 심층면접

- 심층면접은 조사지역에서 영업 중인 가구업체를 무작위로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한 후 다른 업체를 소개받아 방문하는 형태로 실시
- 조사업체 10곳의 평균 업력은 평균 8년이었으며, 대부분 가구업계에서 5~10년의 경력을 쌓은 후 창업하였는데 대표자의 연령은 평균 45세임
- 제조 품목은 주로 목재를 이용하여 침대, 소파, 옷장·이불장, 의자, 책상 및 테이블 중에서 업체마다 주력제품으로 한두 가지 품목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2곳은 국내 제조 외에 수입도 하는 업체

☞ [표 3-7] 가구 심층면접업체 현황

번호	사업장 주소지	연령	경력	업태				주요 제품
				도매	소매	인터넷	납품	
1	경기도 포천시	39	4	○	○	○		침대
2	경기도 포천시	37	5		○	○		소파
3	경기도 포천시	35	1	○	○	○		서랍장
4	경기도 포천시	36	3		○	○		책상
5	경기도 광주시	44	6	○			○	소파
6	경기도 광주시	48	11		○	○	○	옷장
7	경기도 광주시	58	22				○	책상
8	경기도 용인시	52	12				○	침대(수입)
9	경기도 용인시	54	7				○	서랍장
10	경기도 용인시	49	6				○	식탁(수입)

2) 사업운영 특성

- 심층조사에 응한 포천지역의 업체는 비교적 젊은 층이 많았음
 - 이는 최초 방문한 업체의 대표가 비슷한 연배의 사업자를 소개해 주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별히 포천지역의 사업자 연령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움
- 조사지역은 크게 3개 지역이었는데 포천지역의 업체는 전통적인 가구대리점

(도매업체)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는 인터넷 판매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임

- 인터넷판매의 경우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는 한 곳도 없었으며, 오픈마켓에 입점하거나 온라인 가구 판매회사를 통하는 형태를 보임
- 경기도 광주나 용인은 업체 대표의 나이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자기 제품을 만들어 팔기 보다는 건설사에 납품될 가구를 재하청 받아 제작하거나 비교적 큰 가구회사의 발주를 받아 납품하는 하청생산 비중이 높음
- 수입을 겸하는 2곳의 업체는 국내에서 가구제조를 거의 접었고 대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가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전환 중임
- 표면재료를 접착하는 공정에서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계흐름이 도장을 하지 않고 마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종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이 부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전생안법에 대한 인식과 이행 여건

가) 전생안법 인식

- 예비조사 4개 업체와 본 조사 10개 업체의 대부분은 전생안법에 대해 어렵פות하게 들어 알고 있었으나 전생안법이 문제가 많아 폐지된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음
 - 포천지역의 업체는 인터넷 판매업체에서 KC인증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받았고 그 과정에서 법에 대해 어렵פות하게나마 알게 됐다고 설명
- 가구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는 통관 전에 안전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KC마크를 알고 있었으나, 전생안법에 따른 수입업체의 의무와 구체적인 안전확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음
- 납품 위주로 제조하는 업체는 전생안법에 대해 거의 모르는 상태였고, 전생안법에 대해 설명을 해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음
 -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전생안법에 따라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발주를

낸 발주처(원청업체)가 하게 될 일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이고, 또한 '가구공장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응답

나) 전생안법 이행 여건

- 가구는 주문 후에 생산하여 납품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를 재고로 보유한 소상공인업체는 거의 없으나 생산 가능한 제품디자인은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음
- 전생안법을 따르려면 제품 주문이 들어와서 신제품을 만들 때마다 제품시험을 거쳐 안전확인을 한 후 납품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성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다고 주장
- 만약 지금 '제품 모델별로 시험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시험 받아야 하는 제품 수는 몇 개나 될 것 같은가'라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는 대략 150여 가지라고 응답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시험 성적서를 목재상(목재제품공급업체)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성적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10% 미만이다'는 응답자가 60%에 달했지만, 역으로 '90%이상 받을 수 있다'는 응답자도 40%로 나타나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납품을 주로 하는 사업체로 원청업체에서 납품을 요구할 때 KC인증 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에 목재구입 시부터 목재상에게 관련서류를 요청하여 받은 경험을 가진 곳임
 - 따라서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업체도 목재 구입 때부터 시험성적서를 받고자 한다면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임

4) 전생안법 관련 의견

가)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 통일을 요구

- 가구에 대한 안전확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방법으로는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기도 어렵고 업체의 비용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보

다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 예를 들면 원자재의 관리기준을 상향하여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안전관리 기준 이상으로 하면 유해물질 문제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업체의 견해
- 즉,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E1급 자재의 방출량 기준을 공급자적합성 안전확인 기준과 같게 하거나 조금 더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

< 참고: 목재제품 품질기준 >

- ☞ 우리나라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관리하고 있음
- ☞ 합판, 파티클보드, MDF 등 목재제품의 로 방출량도 품질기준에 포함

< 목재제품 품질기준과 가구제품 안전기준 비교>

구분	SE0	E0	E1	E2
목재제품 품질등급	• 평균 0.3 이하 • 최대 0.4 이하	• 평균 0.5 이하 • 최대 0.7 이하	• 평균 1.5 이하 • 최대 2.1 이하	• 5.0 이하 (실내상용 금지)
가구제품 안전기준	1.5 이하일 것			

- 가구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E1 품질등급의 자재에 대해 방출량 최대치를 공급자적합성확인부속서에서 정한 가구제품의 안전기준과 일치시키면 제품마다 안전확인 제품시험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논리

나) 목재 품질인증서로 시험검사 대체를 요구

-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목재 제품에 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원재료의 품질이 확실하다면 시험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가구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초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
- 따라서 가구제조업체는 목재상에서 E1 품질등급 이상의 목재제품을 구입하여 가구를 제작하였을 경우 시험성적서가 아니라 목재제품 품질등급확인

서류로도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줄 것을 요청

- 가구제조 업체에서 말하는 목재제품 품질등급확인 서류는 목재제품을 구입할 때 받는 거래명세표, 목재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업자가 발행한 품질확인서나 자체 시험성적서 등을 의미
- 자체 시험이든 목재상에서 시험하든 관계없이 시험성적서로 안전확인을 해야 한다면 비용이 추가로 들지만 자재를 구입할 때 품질확인서를 기준으로 KC를 붙여도 된다면 가구업계에서는 KC인증이 한결 쉬워질 전망

< 목재 품질관리 필요성 주장 >

“폼알데하이드가 나오는지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맘먹고 시험에 통과하려고만 한다면 판데기를 찌서 갖다주고 조사하면 시험해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가구를 갖다 주고 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또 수십 가지 제품에 옵션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검사하겠는가. 다른 방법도 많은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요즘에는 업체들이 친환경자재를 쓴다. 우리는 업체가 주문한 대로 만들기는 하지만, 친환경자재로 만들라고 하니까 그걸 쓰고 구매증빙을 붙여서 준다. 옛날처럼 나쁜 자재를 사용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본드 칠하는 것은 일부다. 거기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은 극히 일부다. 큰 회사에서 만든 재료를 사다가 쓰니까 안전관리를 하려면 원자재를 관리하면 된다”

< 전생안법 관련 자유 의견 >

“제품 모델별로 인증을 받으라고 하면 영세업자들은 다 굶어 죽을 것이다”

“영세업체보고 강제로 인증을 받게 하는 것과 문제가 있는 제품을 찾아내서 조치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대기업은 자체검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같은 영세업자는 외부에서 돈 들여 받으면 경쟁력만 더 떨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은 역차별이다”

“전생안법은 시행은 제품가격에 검사비용을 더 붙이겠다는 조치다”

“디자인 색상별로 검사를 따로 받으라는 것인지 아닌지조차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제품이 많아지면 비용이 늘어나니까 신제품 개발을 맘 놓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가구업체는 디자인을 서로 베끼기 때문에 그걸 막자고 디자인특허도 하고 그런다. 하루 이틀이면 시장에서 밀리는 현실에서 검사받다가 실기하면 살아 남기 어렵다. 같은 법의 전기용품처럼 파생제품으로 인증을 대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한다”

다) 안전확인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 요청

- 응답자는 전생안법시행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지만 검사 기준의 모호함에 대해서 더 분노
 - 제품모델별로 안전확인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 혹은 무력감을 포함
 - 안전확인을 가구의 디자인마다 하라는 것인지 가구의 색상마다 하라는 것인지 재료가 달라질 때만 하라는 것인지를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심한 반감을 표시

라. 전생안법 영향 분석

1) 안전확인 시험비용 부담

가) 분석 기준

- 안전확인 시험비용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가구에 대해서만 검토하였고 수입 되는 제품의 안전확인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음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업자가 국내에서 안전확인 시험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수출국의 제조업체를 통해서 성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 안전확인 시험비용과 관계있는 시험횟수는 가구의 설계·기능이 달라지는 제품 1개에 대해서 1회의 시험을 받는 것으로 가정
 - 전생안법 시행규칙에는 가구에 대한 모델구분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모델의 정의를 준용하여 제품의 설계·기능 등이 달라질 때마다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
- 안전확인을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소상 공인업체는 자체적인 시험능력이 없어서 전부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므로 시험비용은 관련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확인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함
-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확인의 책임을 가진 자가 제3자가 실시한 시험성적서도 안전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시험 성적서를 별도의 비용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비용 산정에서 제외

- 전생안법에서는 제품 모델별 안전확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의 모델이 달라지더라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즉 동일 재료와 공법을 이용하여 다른 모델의 제품을 만든 경우는 원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받아 각기 다른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국가표준원의 해석기준에 근거하여 별도로 시험비용을 산출
- 제품의 안전확인을 위한 시험에는 시편이나 제품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겠지만 이것은 고려하지 않았고 기타 시험의뢰를 위한 교통비, 물류비, 통신비 및 시간비용 등은 배제

나) 안전확인 제품시험량 산출

- 10개의 심층분석업체는 설계·기능이 다른 신제품 모델을 연간 평균 24개 정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간 24회의 안전확인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
- 그러나 모델별로 3~4개씩 만들어지는 옵션제품은 기본 모델의 제품을 만들 때와 공법이나 원재료도 같고 기능과 설계도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안전확인 시험을 받을 필요는 크지 않겠으나 계산하면 72회가 됨
 - 옵션제품이란 기본 디자인은 같으나 마감재의 색상이나 무늬가 다른 제품 혹은 기본 디자인에서 사이즈를 달리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함
 - 연간신제품 24개 × 옵션제품 3종 = 72
- 만약 제품을 추가생산할 때도 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업체가 통상 월간 생산하는 제품수가 20가지이므로 연간 240회의 시험이 필요
- 가구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접착제에 의한 방출량은 미미하다고 가정할 경우 계속 사용하는 원자재에 대해서 안전확인 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성적서를 계속 사용하여 각각의 모델에 대한 안전확인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약 10여개의 목재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시험을 하면 될 것으로 추정

○ 더 나아가서 목재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과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가구제조에 사용되는 파티클보드, MDF, 합판은 품질인증을 관리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목재상이나 원자재업체에 적극적으로 구입자재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요청할 경우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조업체가 안전 확인 시험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

- 다만, 현실적으로는 제조업체가 목재상에게 안전확인을 위한 시험성적서를 요청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번 심층조사에 응한 10개의 가구제조업체 모두 방출량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요청해 본 곳은 없었음

○ 가구제조업체가 안전확인 제품시험을 해야 하는 시험의 양은 제품의 모델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24건, 사용원자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10건 이내로 파악되었으며, 실내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E2 등급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원재료회사나 목재상을 통해 시험 성적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시험은 2~3회로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임

☞ [표 3-8] 가구업체의 원자재 사용 및 제품생산 특성

번호	사업장 주소지	연간 신제품수	화학처리 공정 유무		지속사용 원자재 ⁶⁾ 종류		
			접착제사용	오버레이	MDF	PB	PW
1	경기도 포천시	10	○		4	2	0
2	경기도 포천시	15	○		2	0	3
3	경기도 포천시	8	○	○	3	0	2
4	경기도 포천시	10	○		3	2	0
5	경기도 광주시	30	○		1	1	2
6	경기도 광주시	40	○	○	3	2	0
7	경기도 광주시	50	○		2	4	0
8	경기도 용인시	20			0	0	0
9	경기도 용인시	30	○	○	3	2	0
10	경기도 용인시	30			0	0	0

다) 안전확인 제품시험 비용 추정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목재가구연구센터에 목재류의 방출량 시험 비용을 문의한 결과, 건당 시험비용은 공식적으로는 105,000원(부가세 별도)이었으나 할인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비용산출 시에는 건당 10만원을 적용(데시케이터법 기준)
- 조사대상 업체가 신제품을 모델별로 안전확인 제품시험을 받을 경우 시험비용은 연간 240만원이고, 목재제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표면마감재로 사용되는 LPM, HPM 또는 PVC필름의 색상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칼라별 옵션제품을 기준으로 안전확인 제품시험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은 72건에 720만원이 됨
- 기존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자재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연간 240회의 시험으로 2,400만원의 비용이 필요
- 그러나 주사용원자재가 바뀔 때에만 원자재를 시험하는 것으로 하면 10건 100만원, 원자재업체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성적서를 받지 못해 시험을 직접해야 하다면 3건, 30만원의 시험비용 발생

☐ [표 3-9] 가구 제조업체당 시험 비용

구분		시험 실시 기준	발생빈도(회)	단가	금액(천원)
신제품기준	기본모델 한정	신제품 모델별로 시험	24	100,000원	2,400
	옵션모델 포함	신제품의 마감재 색상별로 시험	72		7,200
생산제품기준		월간 생산되는 제품별로 시험	240		24,000
원자재 기준	주사용 자재	원자재가 추가될 때만 시험	10		1,000
	목재품질인증서	품질인증서가 없으면 시험	3		300

- 심층면접을 한 10개 업체가 가구제조 소상공인업체를 대표한다고 가정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위의 결과를 가구제조 소상공인 업체수에 대입하여 가구산업 전체의 영향을 산출해 보면 235억의 신모델에 대한 안전인증 시험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6) MDF : 중밀도 섬유판, PB : 파티클 보드, PW : 합판

[표 3-10] 가구 제조업종의 시험 비용

구분	신모델별	옵션제품별	생산제품별	원자재별	구매처별
필요 시험수(회)	24	72	240	10	3
시험금액(억원)	235	704	2,348	98	29

2) 기타 전생안법의 영향

- 신제품 개발이 위축될 전망. 만약 제품 모델별로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면 시험비용과 기간 때문에 신제품 개발에 소극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
- 지금 실정이라면 목재의 품질확인서 같은 것으로 안전확인 시험을 대체하기가 쉬운데, 소규모 목재상은 큰 규모의 목재상에 비해 품질확인서를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공장에서 만들어진 PB나 MDF에 LPM, HPM, PVC 등의 표면재까지 신경을 써서 구입하게 될 것이므로 소규모 목재상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소규모 목재상은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

3. 가정용섬유제품제조업

가. 가정용섬유제품의 이해

1) 안전기준에 따른 분류

-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의 안전기준은 가정용섬유제품을 피부접촉의 정도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기타 제품류로 분류

☞ [표 3-11] 안전요건에 따른 가정용 섬유제품의 분류

구분		안전확인 대상 제품 예시	안전확인 제외 제품
내의류	지속적으로 피부에 접촉하는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 가터벨트류, 코르셋류,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 슈양말류(타이즈, 스타킹 포함), 복대 등 	
중의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 체조복, 체육복, 방한대, 수면안대, 스포츠용 • 보호대, 가발 등 * 블라우스, 바지, 치마,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 	
외의류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울스 •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 스카프, 앞치마, 토시 	맞춤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 :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를 말하며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 	천연가죽·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
침구류	잠을 자는데 이용하는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커버, 시트, 해먹 • 카펫(면적이 1㎡미만) 	
기타 제품류	직접착용하지 않는 제품		쿠션류, 방석류, 가방, 모기장, 덮개, 커튼, 수의

- 아동용섬유제품 : 36개월 초과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 등
- 내의류 : 지속적으로 피부에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거들) 등
- 중의류 : 피부에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방한대, 수면안대 등

- 외의류 :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를 말하며,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 등
- 침구류 : 잠을 자는 데 이용하는 제품으로서, 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커버, 시트, 해먹, 카페트(면적이 1㎡미만) 등
- 기타 제품류 : 아동용 및 성인용 섬유제품 중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아동용 가방 제외),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덮개, 커튼, 수의 등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

○ 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보면 가정용섬유제품은 봉제의복제조업(C141), 의복액세서리제조업(C143), 신발제조업(C1521)등의 업종으로 구성

☐ [표 3-12] 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가정용섬유제품

구분	산업코드	산업 내용
내의류	C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중의류	C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외의류	C14111, 14112	남자용 정장 제조업, 여성용 정장 제조업
	C14130	한복 제조업
	C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C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C14300	편조의복 제조업
	C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C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C14491	모자 제조업
	C14499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C15211, 15219	구두류 제조업, 기타 신발 제조업
침구류	C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류	C14499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C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C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3) 산업의 밸류체인

- 가정용섬유제품은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기업을 중심으로 섬유, 직물 등 제조업과 도소매유통업, 전문지식서비스업이 연계된 다단계 산업구조를 보임
- 이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중소기업체의 산업참여가 높고 깊은 협업관계 (strong-tight)가 산업발전의 핵심동력이 됨

☞ [그림 3-5] 가정용섬유제품업의 산업구조



* 자료 : 의류산업경쟁력조사(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원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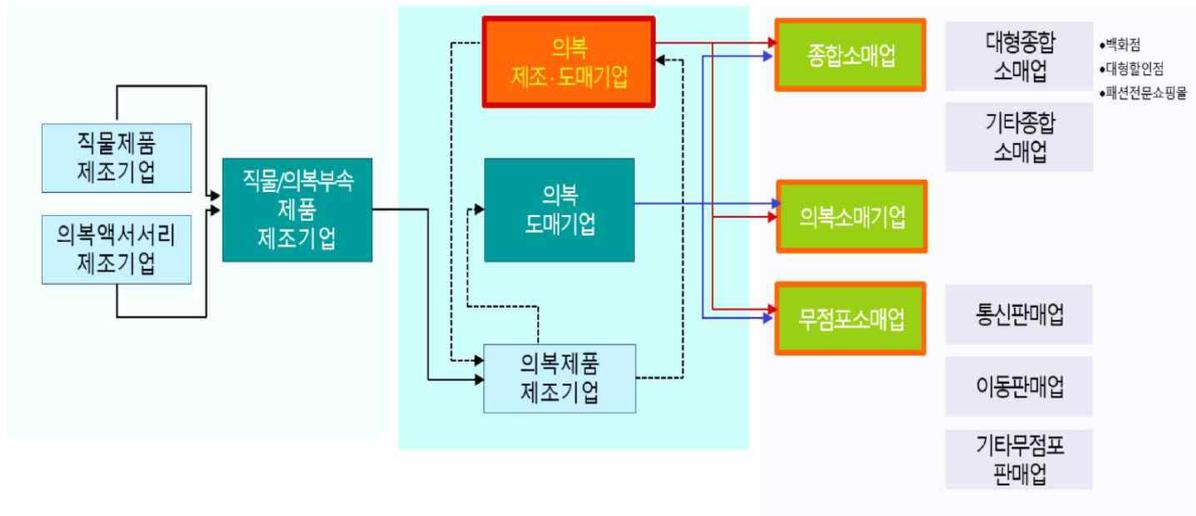
- 가정용섬유제품은 원부자재 생산, 제품생산, 유통·판매 등 복합적인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고, 실 방적업자, 섬유 제조업자, 원단과 부자재 제조업자, 원단 염색업자, 프린트업자 및 가공업자, 의류제조업자, 도매 및 소매상 등 다양한 업종의 업체가 관여
- 현재 가정용섬유제품 중 특히, 의류산업은 기획·디자인·유통 등을 담당하는 판매부문과 염색·봉제를 담당하는 생산부문으로 이원화되는 추세이며 산업의 주도권은 판매부문의 업체가 장악

☞ [표 3-13] 가정용섬유제품의 관련 업태와 연관관계

구분	세부 업종	산업 내용
원부자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단업체 • 부자재업체 • 염색가공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제품 제조업체에 원단이나 완성된 부자재를 납품 • 자체 설비를 보유한 기업이 대부분이나 재하청도 많음 • 염색가공시설을 보유하거나 하청공장을 운영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제가공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설비 또는 하청업체를 통해 의류를 생산하여 유통 업체에 납품
유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체 • 도소매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생산 또는 납품받은 제품을 판매 • 브랜드 없이 도매판매하거나 자가 브랜드로 판매

- 소상공인 섬유제조업체는 대부분 도매판매를 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동대문 등의 의류시장은 이들 제조·판매업체가 주도
- 특히 최근 온라인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과 소매를 연결하는 제조겸 도매업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

☞ [그림 3-6] 가정용섬유제품(의류)의 유통구조



* 자료 : 의류산업경쟁력조사(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2016)

나. 가정용섬유제품업체 현황

- 우리나라 섬유제조업체는 외환위기 이후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견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영세소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영세업체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⁷⁾
- 2015년 기준 가정용섬유제품 제조업체는 전국에 29,93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0인 미만의 업체가 90.8%인 27,169개임⁸⁾
- 참고로 가정용섬유제품 도매업체 19,727개 중 96.4%인 19,014개 업체가 소상공인일 만큼 영세한 생계형 산업의 특성을 지님

7) 봉제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 2013)

8) 경제총조사(통계청, 2015)

[표 3-14] 가정용섬유제품 제조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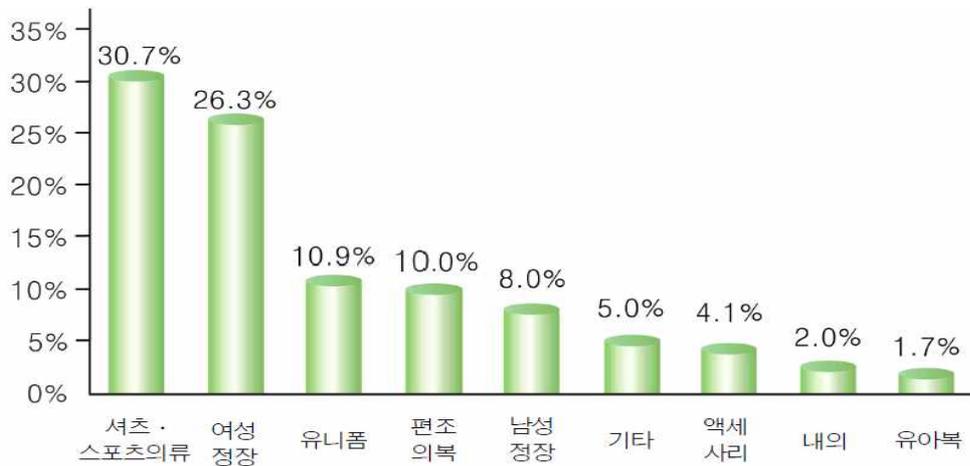
산업코드	업종 분류	전국 사업체수(a)	소상공인 사업체수(b)	비중(b/a)
C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2,286	2,101	91.9%
C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63	1,492	95.5%
C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1,715	1,559	90.9%
C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4,726	4,298	90.9%
C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702	542	77.2%
C14130	한복 제조업	2,666	2,656	99.6%
C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5,738	4,863	84.8%
C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2,762	2,523	91.3%
C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465	386	83.0%
C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971	930	95.8%
C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613	1,440	89.3%
C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992	923	93.0%
C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781	711	91.0%
C14491	모자 제조업	449	405	90.2%
C14499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913	833	91.2%
C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89	1,507	94.8%
합계		29,931	27,169	90.8%

[표 3-15] 가정용섬유제품 도매업체 현황

산업코드	업종 분류	전국 사업체 수(a)	소상공인 사업체 수(b)	비중 (b/a)
G46411	가정용 섬유 및 실 도매업	1,078	1,052	97.6%
G464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1,061	1,029	97.0%
G46413	셔츠 및 외의 도매업	15,671	15,128	96.5%
G46414	유아용 의류 도매업	239	214	89.5%
G46415	내의 도매업	632	582	92.1%
G46419	기타 가정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1,046	1,009	96.5%
합계		19,727	19,014	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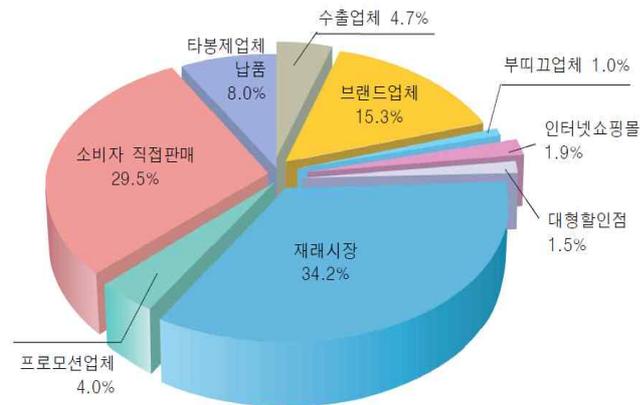
- 가정용섬유제품업체는 유통시장에 인접한 서울과 경기 및 대도시인 부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에는 전국 29,931개의 가정용섬유제품 제조업 중 15,921개(53.2%)가 밀집되어 있음
- 가정용섬유제품 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여성정장업체가 가장 많아서 24.6%를 차지하고, 셔츠·스포츠 의류업체 23.8%, 남성정장업체 12.3%, 유니업체 12.2%, 편조의를복업체 9.5% 순으로 분포
 - 서울지역은 셔츠·스포츠의류업체가 전체의 3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여성정장업체(26.3%), 유니업체(10.9%)로 나타남

☐ [그림 3-7] 서울지역 가정용섬유제품업체의 업종별 분포⁹⁾



- 가정용섬유제품은 업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게 구별되는데 업종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7~8월, 12~1월까지 연간 약 4개월이 비수기이고 이 때에는 성수기 대비 생산과 판매가 60% 수준으로 감소
- 국내 가정용섬유제품의 유통구조를 분석한 자료는 없으나 의류봉제업체의 유통실태를 통해서도 그 구조를 대략 파악할 수 있을 것인데 봉제업체 실태조사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 2013)에 따르면 국내 의류봉제업체는 재래시장 유통비중이 34.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는 비중은 29.5%로 나타남

9) 봉제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 2013)

[그림 3-8] 의류봉제업체의 유통채널¹⁰⁾

다. 가정용섬유제품에 대한 전생안법 규정

1) 안전확인 대상 제품

- 안전확인대상제품은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및 침구류를 포함하되 기타 제품류는 제외되고 외의류 중에서 천연가죽·인조가죽·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

2) 안전요건

- 가정용섬유제품의 안전요건은 섬유제품의 피부접촉 정도에 따라 달리 규정

[표 3-16] 가정용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

구분	적용 대상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폼알데하이드(mg/kg)	전부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아릴아민(mg/kg)	염색	3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mg/kg) ³ -TBT (tributyltin)	코팅, 프린팅	1.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mg/kg)	피혁, 모피	0.1 이하		
방염제	방염가공품	사용하지 말 것		
pH	전부	4.0 ~ 7.5	4.0 ~ 7.5	4.0 ~ 9.0
니켈(Ni)의 용출량	금속재	0.5 μ g/cm ² /week이하		

10) 봉제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 2013)

- 가정용섬유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요건 규정은 총 10가지 항목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현재 소상공인업체가 전생안법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는 주로 성인용 제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품시험을 통해 확인해야 할 유해물질은 , 아릴아민 또는 유기주석화합물, PH 등 3~4개로 볼 수 있음

라. 소상공인 심층면접 결과

1) 심층면접 개요

- 서울 동대문 일대의 의류도매상가에 입주해 있는 의류 제조·판매업자 4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

☐ [표 3-17] 가정용섬유제품 심층면접 응답자 특성

평균연령	종사자수	종사기간
40.1세	2.3명	11.3년

- 심층면접은 동대문의 의류도매상가 입주상인회를 통해 입주업체에게 조사 안내를 요청한 후에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 응답자 중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는 17개, OEM 생산 후 판매하는 업체는 23개이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는 4개였음
- 주력 상품별로 응답자를 구분하면 내의류 2명, 중의류 30명, 외의류 8명으로 중의류가 가장 많았음

☐ [표 3-18] 가정용섬유제품 생산품목별 응답자 분포

구분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전체
	속옷	잠옷	면티	남방	치마	바지	니트류	정장	
응답자수 ¹¹⁾	1	1	22	5	10	7	10	8	64

- 중의류 업체에 대한 심층면접을 많이 한 것은 중의류가 상품종류도 가장 많고 수명주기도 짧으며 동대문 지역의 대표 제품이기 때문에 전생안법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가장 적절한 대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

11) 심층면접자는 40명이나 취급 제품이 여러 가지인 경우 복수응답으로 표시

- 반면 내의류는 비교적 원단의 사용이 단순하고 염색이나 프린팅이 적어 중의류에 비해 전생안법의 영향을 덜 받으며, 외의류는 계절적 특성으로 해당 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어 인터뷰 대상을 축소

2) 사업 운영 특성

가) 빠른 상품화 기간

-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가정용섬유제품 제조·판매업체는 6.6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품을 디자인한 후 원단을 발주하고 봉제가공해서 상품을 완성하는 전체과정이 끝나는 것으로 나타나 '동대문 의류업은 신속성이 경쟁력이다'라는 소상공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임

- 상품기획에서 상품입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2일에 불과하다는 비율은 25%에 달했고, 응답 빈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 40명 중 22명이 먼 티셔츠를 만드는 업체임을 고려할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응답

☐ [표 3-19] 가정용섬유제품 '상품기획~상품입고' 소요기간

소요기간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10일	14일	15일	20일	평균
응답자수	9명	6명	2명	3명	2명	7명	6명	1명	2명	2명	6.6일

나) 사용 원단의 다양성

- 월간 사입하는 원단이 몇 가지나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평균 30가지라는 응답을 얻었는데, 내의류가 가장 적은 6가지를 사입하고 있고, 먼티가 가장 많이 사입하여 35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20] 월간 사입하는 원단의 종류

구분		평균	최소	최대
내의류	속옷	6	6	6
	면티	35	5	150
중의류	남방	23	5	50
	치마	23	6	50
	바지	17	8	30
	니트	25	8	50
외의류	정장	27	10	50

- 원단의 75% 정도는 동대문 원단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지만, 나머지 25% 정도는 자기가 직접 원단 제조업체에 발주하거나 수입하여 사용

다) 다품종 소량생산

- 월간 개발하는 신상품은 평균 45개로 중의류는 37개, 정장류는 30가지로 파악되었는데 신상품에는 통상 4~5가지 칼라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 8~10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신제품 중 약 1/3의 제품은 시즌 중 약 3회 정도 리오더(재생산)를 진행
- 신상품을 만들 경우 초도물량은 복잡별로 다르고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다르지만 100~150장 정도를 만들고 있었으며, 업체에 따라서는 500~1,000장씩 대량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음
 - 신상품의 초도물량을 소량으로 만드는 것은 시장의 반응을 보고나서 리오더(재생산)하더라도 평균 1주일 짧게는 2~3일만에 물건을 만들 수 있어서 재고 부담 없이 디자인으로 경쟁하려는 시장의 흐름 때문으로 보여짐
- 신상품을 만들 때 기존에 쓰던 원단을 사용하는 비율은 약 40%이고 신규 원단을 사용하는 비율은 60%임
 - 동대문의 가정용섬유제품 제조업체는 한 달에 평균 30가지의 원단을 사용하여 45가지의 신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사용원단 중 18가지는 신규원단으로 파악됨

3) 전생안법에 대한 인식과 이행 여건

가) 전생안법 인식

- 가정용섬유제품 관련 소상공인은 가죽제품, 가구, 안경 등의 소상공인에 비해 전생안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생안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명의 응답자 중 22.5%,

‘대강은 알고 있다’는 비율은 55.0%, ‘법의 세부내용과 규정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15%이며 ‘법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다’는 응답은 7.5%임

- 이러한 결과는 가정용섬유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더 많이 전생안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

☐ [표 3-21] 가정용섬유제품 응답자의 전생안법 이해 정도

전혀 모른다	대강은 알고 있다	세부적으로 알고 있다	법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22.5%	55.0%	15.0%	7.5%

- 현재 전생안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10% 미만의 제품만 확인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90%로 나타나 가정용섬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소상공인업체는 거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남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고 있다는 업체가 관련 시험성적서나 제품시험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절반 정도는 매장에 자료를 보관 중이었고, 절반은 자료가 집에 있다고 하거나 지금은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임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증비용 때문이다’는 응답이 37.5%이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았음
-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안전확인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함
 - 안전인증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3.5%였고, 필요하지만 시험내용이나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48.7%임

나) 전생안법 이행 여건

- 응답 업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종류를 파악하였는데 적은 곳은 20여 가지의 제품이 있었고 평균 80여 종류가 있었음

- 보유 제품의 종류는 디자인이 같더라도 칼라가 다르면 한 종류로 인식하여 조사하였는데 디자인별 칼라수가 4~5개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소재가 완전히 다른 제품은 평균 15~20가지 정도인 것으로 가정해도 무방
- 지금 당장 모든 제품에 대해 시험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그 제품의 수는 몇 개나 되느냐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는 평균 1,066개가 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비현실적으로 여겨짐
 - 안전확인 시험 대상 제품 모델이 1,066개나 된다고 말한 것은 ‘제품이 진짜 많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다분히 과장되게 응답한 것으로 여겨짐
 - 현재 판매중인 제품이 몇 가지나 되는지를 물었을 때의 응답은 80가지였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정도의 응답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균 1,066 가지를 시험받아야 할 것이라는 응답은 크게 신뢰할 수 없는 결과
- 공급자적합성확인용 시험성적서를 원단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성적서를 받을 가능성이 10% 미만이다’는 응답자가 90%에 달함
 - 그 이유로는 원단공급업체도 영세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시험 성적서를 요구해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
 - 또 원단공급업체에게 시험 성적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기간이 5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옷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체가 모험일 수 있다고 우려
- 컴퓨터 활용분야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로는 판매·재고관리 47%, 발주·생산관리 10%, 회계 관리 15%, 기타 28%로 응답
 - 전생안법의 유보조항이 시행되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업무(시험신청, 결과 보관 등)를 수기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컴퓨터 활용의 정도를 파악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 특이한 점은 회계 관리에 컴퓨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유를 들어 본 결과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전산화하지 않거나 업장에서는 볼 수 없는 곳에서 사용한다고 설명

4) 전생안법 관련 의견

가) 원단에 대한 안전관리 도입

- 가정용섬유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유해물질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원단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
 - 원단 생지를 염색-가공(날염)-포장하는 과정이 유해물질 차단이 골든타임
 - 원단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통제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면 원단을 생활용품 범주에 넣어서 관리하면 됨
 - 요즘에는 소비자가 원단을 구입해서 자기가 손수 물건을 만들어 사용하는 DIY가 많아졌고, 소규모로 원단을 사서 작품수준으로 만들어 파는 청년공예가도 많기 때문에 생활용품 차원에서 원단을 관리해야 할 명분도 충분
- 물론 원단 상태를 단순가공하지 않고 후가공(예:워싱)하는 경우는 별도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원단의 검사성적서만으로 제품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산업이 활성화 됨
- 서울시에서는 KC안전확인을 단속하면서 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류 원단제공자의 정보공개 의무화(재료 공급자 안전요건 충족)를 건의함

< 전생안법 관련 자유 의견 >

“ 대기업을 위한 제도이지 동대문 실정을 알고 이런 법을 만들었냐? ”

“ 장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걸. 시험기관 돈 벌어 주려는 수작이지 무슨 법이냐 ”

“ 담당자 보고 와서 동대문 한바퀴만 둘러보라고 해라. 유해물질 그러는데 요즘 그런 것 없다. 가뜩이나 장사 어려운데 검사받느라고 1주일 날려 때 놓쳐서 장사 못해. 그러면 누가 책임질건데! ”

“ 식당에서 장사하는데 쌀에 농약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검사하겠다는 말이다. 농약이 유해하면 쌀을 출하할 때 농민들보고 농약을 적게 쓰라고 하거나 쌀 도정상태에서 검사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

나) 사후관리로 전환

- 섬유 원단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해도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비율은 2.5%에 불과

- 정말 가정용섬유제품이 안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 발생의 원천을 차단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하되 위반 시에는 적절한 처벌을 통해서 수용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 지금처럼 사전관리로 하면 검사에 따른 제품출시지연, 안전확인 제품시험비용의 부담, 안전인증 서류보관의 복잡함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

마. 전생안법 영향 분석

1) 안전확인 시험비용 부담

가) 분석 기준

- 안전확인 시험비용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가정용섬유제품 중에서 아동용 제품은 검토에서 제외하였고,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비용도 반영하지 않음
 - 전생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소상공인이나 단체가 아동용 제품의 안전확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용의 경우 성인용보다 더 엄격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인용 중심으로 검토함
- 안전확인 시험비용과 관계있는 시험횟수는 동일 원단이라 하더라도 색상이 달라지면 염색이나 코팅에 의한 유해물질의 함유 정도가 달라지므로 제품 디자인에 따른 색상별로 제품시험의 경우도 분석에 포함
- 안전확인을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가 꼭 있어야 하는데 소상공인업체는 자체적인 시험능력이 없어서 전부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므로 시험비용은 관련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확인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함
 -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검사비용은 시험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 공공 시험기관 중 섬유제품을 가장 많이 검사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개시된 수수료를 참고
-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확인 책임을 가진 자가 제3자를 통해 확보한 시험성적서도 안전확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원단공급업체에서 시험 성적서를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10%미만이기 때문에 제품시험 대상을

산출에는 반영하지 않았음

- 전생안법에서 제품 모델별 안전확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의 모델이 달라지더라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동일 재료와 공법을 이용하여 다른 모델의 제품을 만든 경우는 원재료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받아 각기 다른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국가표준원의 설명에 따라 기존원단 사용비율을 확인하여 분석에 추가
- 가정용섬유제품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뚜렷한데 성수기는 8개월을 비수기는 4개월을 기준으로 함
 - 비수기는 성수기 대비 제품개발의 수준을 60%로 계산
- 제품의 안전확인을 위한 시험에는 시편이나 제품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겠지만 이것은 고려하지 않았고 기타 시험의뢰를 위한 교통비, 물류비, 통신비 및 기타 부대비용 등은 배제

나) 안전확인 제품시험량 산출

- 완제품을 가지고 안전확인 시험을 받아야 한다면 월평균 45가지의 신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연간 468회의 안전확인 시험을 받아야 함
 - 성수기 : 월간신제품 45개 × 8개월 = 360회
 - 비수기 : 월간신제품 45개 × 60% × 4개월 = 108회
 - 디자인과 소재가 같아도 색상이 다르면 한 가지 신제품으로 계산
- 만약 같은 제품이라도 원단의 로트마다 유해물질이 달라진다고 가정하면 연간 432회의 시험이 추가되어 연간 900회의 검사가 필요
 - 성수기 : 월간리오더제품수 15개 × 리오더횟수 3회 × 8개월 = 360회
 - 비수기 : 월간리오더제품수 9개 × 리오더횟수 2회 × 4개월 = 72회
- 섬유원단을 봉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거의 없다고 파악되므로 원자재에 대해서 안전확인 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성적서를 계속

사용하여 각각의 모델에 대한 안전확인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시험검사는 연간 192회로 감소

- 성수기 : 월간원단사입수 30개 × 신원단비율 60% × 8개월 = 144회
- 비수기 : 월간원단사입수 20개 × 신원단비율 60% × 4개월 = 48회

○ 그러나 같은 원단이라 하더라도 로트마다 품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보면 원단을 사입 하는 횟수에 따라 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라면 신규 원단 사입 시 검사 192회와 재생산에 따른 원단검사 648회가 추가되므로 합계 840회의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성수기 : 신제품당원단수 1.5종 × 월간리오더제품수 15개 × 리오더 3회 × 8개월 = 540회
- 비수기 : 신제품원단수 1.5종 × 월간리오더제품수 9개 × 리오더 2회 × 4개월 = 108회

○ 제조업체가 원단업체를 통해 구입한 원단에 대해 시험 성적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0% 미만이다라는 응답이 90% 이상이였기 때문에 원단업체로부터 성적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하여 분석에서 제외

○ 가정용섬유제품 제조·판매업체가 현재 보유중인 제품의 수는 약 80개이므로 전생안법을 지키려고 하면 일시에 약 80회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 [표 3-22] 가정용섬유제품 심층면접업체 특성

번호	업무 경력	주력 제품	월간 신규 사입원단수	현재 제품수	월간 신제품수	디자인별 색상수	신제품 초도물량	기존원단 사용비율
1	7	바지	30	50	10	3	1,000	50
2	18	면제품	50	30	20	5	500	50
3	15	남방, 치마	6	40	20	5	20	50
4	15	면제품	5	100	50	3	100	90
5	7	면제품	50	50	70	5	20	30
6	무응답	면제품	50	40	30	7	50	20
7	무응답	니트	50	60	50	5	300	10
8	15	니트	50	30	30	5	100	30
9	10	면제품, 정장	20	30	20	5	50	50

번호	업무 경력	주력 제품	월간 신규 사업원단수	현재 제품수	월간 신제품수	디자인별 색상수	신제품 초도물량	기존원단 사용비율
10	13	니트	3	20	5	5	50	70
11	10	니트	5	30	10	5	100	50
12	23	면제품	15	30	10	7	50	30
13	4	정장, 남방, 치마	15	35	20	4	50	30
14	20	정장, 치마	무응답	50	40	3	50	50
15	18	면제품	16	43	20	5	40	40
16	15	정장, 치마, 니트	40	50	70	3	50	20
17	7	치마	40	52	45	5	70	10~15
18	무응답	면제품	100	1,000	250	5	150	10
19	15	면제품	150	120	300	5	500	0
20	12	면제품	5	40	15	5	50	60
21	5	면제품, 내의	무응답	30	10	3	10	50
22	10	면제품	120	320	30	4	50	10
23	10	면제품	20	150	80	4	30	30
24	5	남방, 치마	25	50	30	5	50	25
25	10	면제품	15	30	15	4	60	40
26	3	면제품, 정장, 바지, 니트	15	90	45	5	50	60
27	5	면제품, 치마, 바지	8	60	30	4	40	70
28	1	면제품	10	20	10	2	20	40
29	10	바지	10	50	20	5	3	20
30	10	정장, 치마	10	30	20	3	30	40
31	26	면제품, 정장, 남방, 치마, 바지	20	50	20	3	60	40
32	2	면제품, 정장, 남방, 치마	50	70	200	4	100	50
33	15	바지	20	32	6	5	300	70
34	12	니트	20	25	40	5	200	80
35	15	바지	10	40	10	4	100	30
36	6	니트	무응답	50	20	5	500	40
37	10	면제품	15	40	30	3	50	70
38	10	니트	무응답	100	50	4	30	70
39	15	면제품, 내의	6	70	20	4	150	50
40	14	면제품	10	100	10	7	50	30

다) 안전확인 제품시험 단가

○ 시험검사비는 완제품인 경우 10만원, 원단검사인 경우 6만원을 기준함

- 염색된 제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PH시험 및 아릴아민 3가지 검사가 필요하고 금속 재나 가죽의 사용여부 코팅, 방염처리 등에 따라 시험내용이 추가되므로 제품당 시험비용 기준을 잡기는 쉽지 않음
-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은 섬유제품에 대한 환경유해물질 시험검사비를 시험의뢰 제품의 색상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받고 있지만, 단색의 원단인 경우 시험비용은 평균 6만원 정도로 확인됨
- 조사에 따르면 가정용섬유제품은 통상 1.5개의 원단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10만원(단색 원단 시험비 6만원×1.5개)으로 하였으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가정용섬유제품의 시험비용을 평균 10만원 내외로 알고 있었음

☐ [표 3-23] 가정용섬유제품 유해물질 검사비

시험 항목	항목 설명	표준 시료량	수수료(원)
pH시험	섬유제품의 수소이온 농도 측정	30cm x 30cm(10g)	6,000
폼알데하이드	함유 정도 측정	30cm x 30cm(15g)	17,000
아릴아민	염색한 제품의 아릴아민 함량 측정	30cm x 30cm(10g)	80,000
유기주석화합물	맹독성 화합물 측정	30cm x 30cm(5g)	65,000
니켈(Ni)의 용출량	피부접촉 금속재의 니켈용출량	10개	25,000

*자료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홈페이지(katri.re.kr)

라) 안전확인 제품시험 비용 추정

- 조사대상 업체가 신제품을 만들 때마다 안전확인 제품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경우 업체당 시험비용은 연간 4,680만원이고, 동일한 소재·패턴·칼라의 원단으로 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다시 만들더라도 원단의 로트별로 유해물질의 함유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여 기존 제품도 시험을 하는 경우라면 9천만 원이 필요
- 신규 원단을 사용할 때마다 제품시험을 한다고 할 경우는 1,152만원, 원단을 추가 발주할 때에도 검사를 해야 한다면 5,천4십만 원의 검사비가 필요

[표 3-24] 가정용섬유제품 제조업체당 시험 비용

구분		시험 발생 횟수			시험단가 (천원)	시험비용 (천원)
		성수기	비수기	연간		
제품 기준	신제품 및 옵션 포함	360	108	468	100	46,800
	생산되는 제품 기준	720	180	900	100	90,000
원단 기준	신규원단 한정	144	48	192	60	11,520
	기존원단 포함	684	156	840	60	50,400

- 심층면접한 40개 업체가 가정용섬유제품제조 소상공인업체를 대표한다고 가정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위의 결과를 가정용섬유제품 소상공인 업체수에 대입해 보면 가정용섬유제품업체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될 제품안전 시험비용의 추정이 가능
-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 가정용섬유제품 제조업체 중 소상공인업체는 27,169개이고 이들 업체가 부담하게 될 안전확인 제품시험의 연간 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25] 가정용섬유제품제조업종의 시험 비용

구분		시험단가 (천원)	시험비용(백만원)	
			업체별	업종 전체
제품기준	신제품만	100	46.8	1,271,509
	리오더 제품 포함	100	90.0	2,445,210
원단기준	신규 원단만	60	11.5	312,444
	기존원단 포함	60	50.4	1,369,318

2) 기타 전생안법 영향

- 생산 기동성 상실로 인한 동대문 패션산업의 생태계 변화 초래
 - 동대문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의류 생태계가 자리한 곳으로 그 생명력은 빠른 제품출시와 소비자반응에 기초한 적기 추가생산에 있음

-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에 정한대로 제품검사를 하게 된다면 빠른 제품생산과 소비를 무기로 하는 동대문 업체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규모 있는 기업이 하는 것과 같은 기획생산으로 가야 함
- 가정용섬유제품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으로 바꾸면 업체는 더 경쟁력 있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

○ 원가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판매 감소

- 업체의 설명을 빌리자면 봉제가공인 경우 라벨을 붙이기 위해서 제봉틀을 멈추는 순간 생산성이 떨어져서 제품당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제품의 라벨을 붙이는 것도 생략할 정도로 원가를 줄이는 것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호소

4. 가죽제품제조업(제화)

가. 가죽제품 이해

1) 가죽제품의 정의와 분류

○ 전생안법의 안전확인 대상이 되는 가죽제품이란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죽 면적 비율의 60% 이상인 제품을 말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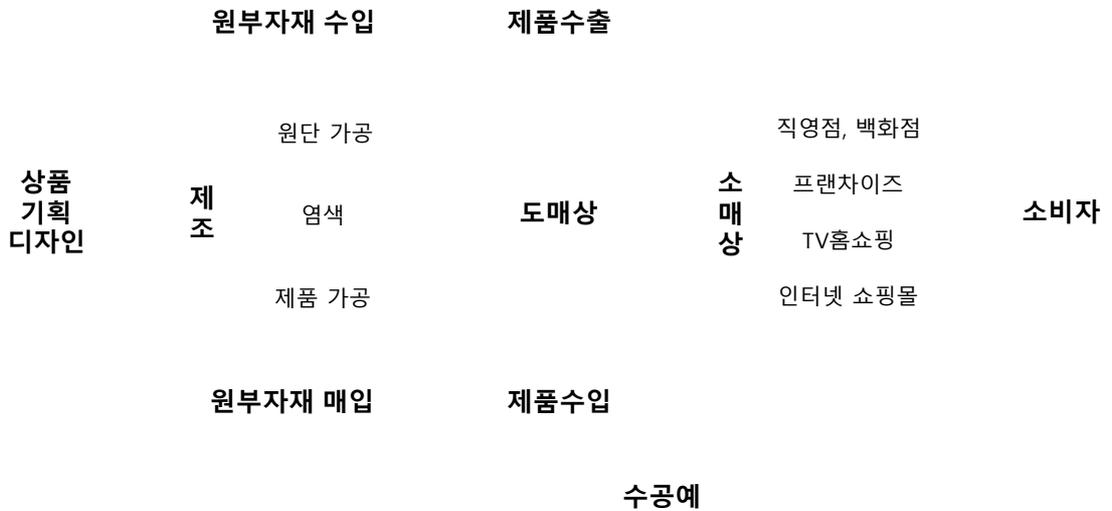
- 천연가죽, 인조가죽, 코팅가죽, 라미네이팅 가죽, 재조합 가죽, 합성가죽, 천연모피 등의 원단으로 만든 제품을 지칭
- 천연가죽이란 동물의 껍질을 벗겨 무두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가죽(말, 소 등 큰 동물의 가죽) 또는 스킨(송아지, 돼지 등 작은 동물의 가죽)을 의미
- 인조가죽이란 천연가죽을 대체하기 위하여 화학적으로 합성하거나 천연가죽에 일정수준 이상의 물리적·화학적 처리를 한 것으로, 원료 및 처리공정에 따라 코팅가죽, 라미네이팅가죽, 재조합가죽, 합성가죽으로 분류
- 코팅가죽이란 가죽 표면에 각종 안료나 바인더 및 합성수지를 분무(Spray), 덧칠(Padding), 코팅(Roll coating) 등의 방법으로 코팅한 것으로, 코팅 두께는 0.15mm 이상이고 전체가죽 두께의 1/3 미만인 것을 말함
- 라미네이팅가죽이란 두 개 이상의 가죽층 또는 한 개의 가죽층에 한 개 이상의 특수합성필름 또는 다른 물질 층이 접착제로 부착 또는 접착된 것으로, 가죽층 이외의 물질의 두께는 0.15mm 이상이고 전체 두께의 1/3 이상인 것으로 정의
- 재조합가죽이란 무두질한 가죽을 섬유나 작은 조각 또는 파우더의 형태로 해체시킨 후,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시트나 형태로 만든 가죽
- 합성가죽이란 천연피혁 대체품으로 개발된 합성피혁 원단을 총징(과이록신레더, 비닐레더, 스폰지레나일론도장 합성레더, 폴리아미드계 합성레더 등)
- 천연모피란 동물 모피로 만든 원단(밍크, 여우 등의 모피를 포함한 동물 모피)

12) 전생안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인 가죽제품은 신발 외에 가죽옷 등을 포함 하지만 소상공인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죽신발에 집중하여 분석하였음. 본 연구에서 가죽제품은 가죽구두의 의미로 사용되었음

2) 가죽제품의 밸류체인

- 가죽제품은 디자인, 원부자재 조달, 원단 가공, 염색업, 제품 가공, 도매업, 소매업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
 - 대기업의 경우 직영점,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 가죽 수공업업체의 경우 직영점(공방) 직접 판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 국내 가죽제품 유통은 몇몇 대기업과 해외 유명 브랜드 수입을 제외하고 가죽 수공업업체의 형태를 나타냄

☒ [그림 3-9] 가죽제품의 밸류체인



* 자료 : 피혁의류 전문브랜드 개발 및 상품 디자인 연구(2007)

3) 가죽의 가공

- 가죽의 가공공정은 20여 단계로 구분되며, 크게 준비공정, 무두질 공정, 마무리 공정의 세 공정으로 나뉨
- 가죽의 유해물질은 제조공정 중에서 특히 크롬을 이용한 무두질 공정에서 많이 발생

[표 3-26] 가죽의 가공공정

구분			공정 과정
준비공정	1	염장 처리(Brine Curing)	원피 조직의 부패방지를 위한 소금용액 투입
	2	수적 공정(Soaking)	원피 내의 오물·염성분 등을 패들(paddle)에서 물세척
	3	석회침 공정(Liming)	석회침을 통한 원피 털제거
	4	제육 공정(Fleshing)	원하는 두께를 얻기 원피의 지방질을 물리적으로 제거
	5	선별 공정(Splitting)	용도에 따른 고·저급의 구분, 은면의 등급결정
	6	탈회 공적(Deliming)	원피에 침투된 석회를 드럼을 이용하여 제거
	7	연화 공정(Bating)	불필요한 단백질 층을 가수분해하여 신장력 부여
중간	8	침산 공정(Picking)	식물성유제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과정
	9	무두질 공정(Tanning)	테닝·크롬을 사용하여 내열성·내부식성·유연성 부여
마무리공정	10	세밍 공정(Sammying)	수분함량 40~45%로 조절, 세빙을 돕는 물짜기 과정
	11	세빙 공정(Saving)	용도에 맞게 세빙으로 깎아 두께를 조절
	12	염색 공정(Drying)	미적 감각의 보완으로 기본(Base Color)을 넣는 과정
	13	재유성 공정(Retanning)	테닝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한 신탄·식물성 테닝 침투
	14	가지 공정(Fat Liquoring)	유연성 증가를 위해 드럼에 기름 투입
마무리공정	15	건조 공정(Drying)	다양한 건조 방법으로 89~90°C정도의 열풍 건조
	16	연화 공정(Satking Milling)	부드러운 촉감을 위해 드럼 내에서 장시간 무두질
	17	신장 공정(Toggling)	구겨진 가죽을 열 고정(Toggle Dryer)에 의해 당겨 신장
	18	도장 공정(Coating)	가죽 표면의 흠집 은폐를 위해 연료·안료·바인더 처리
	19	계평 공정(Measuring)	크기(넓이) 측정 S/F(pin식 계량기) 측정
	20	천연피혁(Natural Leather/Genuine Leather)	

* 자료 : 피혁의류 전문브랜드 개발 및 상품 디자인 연구(2007)

4) 가죽신발의 제조

○ 가죽제품 중 신발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유해물질은 주로 사상(仕上, しあげ¹³⁾) 공정에서 발생하는데 사상을 마무리 공정의 의미로 사용

13) 사상공정은 그림 3-10의 12와 13 사이에 진행

☞ [그림 3-10] 가죽구두 제조공정



○ 마무리 공정에서 화학약품이 추가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품이나 물질이 무엇인지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나 연구가 부족한 상황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제품의 안전검사 대신 가죽원단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해서 안전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상공정에 쓰이는 약품이 안전기준에 명시된 유해물질과 무관한 것이어야만 가능할 것임

5) 가죽제품제조업의 특성

○ 가죽은 중저가의 합성가죽부터 고가의 천연가죽까지 다양한 소재로 구분됨에 따라 가죽제품도 소재, 형태, 용도, 가격에 따라 품질, 디자인, 색상 등이 다양하며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패션지향적인 상품으로 진화

- 가죽제품제조업은 디자인, 소재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지만 전형적인 노동집약적·중소기업형·도시형 산업 업종이며, 제조공정의 특성 상 협력업체를 필요로 하므로 소재, 부품 공급원의 확보와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클러스터형 산업
- 가죽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대부분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이 약 81% 정도 차지하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
 - 현재 가죽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수는 총 783개이며, 그 중 소상공인 업체 수는 654개임
 - 서울 지역에서 가죽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수는 382개이며, 그 중 소상공인 업체수는 359개임
- 성수동 수제화 산업의 형성기에는 성수동의 지역적 이점으로 인한 입지 유인이 컸다면, 현재는 성수동의 동종업체 집적으로 산업집적도에 물리적으로 늘어나 효율이 증대되고 산업 관련 정보가 집결되는 이점이 클러스터 형성의 주된 동력

나. 가죽제품에 대한 전생안법 규정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가죽제품류

- 전생안법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천연가죽(피혁), 인조가죽(피혁), 천연 모피제품(모피) 원단이 표면가죽 면적 비율의 60% 이상인 가죽제품에 적용되며, 다만 카페트는 면적이 1m² 이상인 경우에도 가죽제품 품목에서 관리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외 가죽제품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유아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과 이것을 제외한 가죽제품은 피부 접촉 정도에 따라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및 기타 제품류로 구분하며,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름

2) 안전요건

- 가죽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요건은 , 염소화페놀류,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아릴아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유기주석화합물, 납, 카드뮴, 니켈 방출량이 허용기준치 이하여야 함

☐ [표 3-27] 가죽제품 안전요구사항

제품		유아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및 기타제품
유해물질명						
폼알데하이드(mg/kg)		20 이하	75 이하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염소화페놀류(PCP)(mg/kg)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6가 크로뮴(mg/kg)		0.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mg/kg)		0.1 이하				
아릴아민(mg/kg)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0.1이하	0.1이하	-	-	-
	DINP, DIDP, DNOP		-	-	-	-
유기주석 화합물(mg/kg)	DBT(dibutyltin)	1.0 이하	-	-	-	-
	TBT(tributyltin)	0.5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납(mg/kg)		90 이하	90 이하	-	-	-
카드뮴(Cd)		75 이하	75 이하	-	-	-
니켈($\mu\text{g}/\text{cm}^2/\text{week}$)		0.5 이하				

3) 시험 방법

- 가죽의 안전확인 시험은 피시험자가 제출한 샘플을 가지고 실시되며, 최소 시료 수는 30cm×50cm의 원단 1개, 4박 5일 기간이 소요

다. 소상공인 심층면접 결과

1) 심층면접 개요

- 심층면접은 (사)한국제화산업협회를 통해 제화업체의 특성과 지역 분포

현황을 파악하였고 제화업체와 가죽원단판매업체(피혁점) 및 관련 업체가 잘 발달한 성수동 지역의 제화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함

- 응답업체는 대표자 평균연령 51.7세, 종사기간 21.8년, 종업원 3.4명임
- 제화업체 본 연구에서 심층조사 한 다른 업종에 비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이나 종사기간도 높은 것이 특징

☞ [표 3-28] 가죽제품 심층면접 응답자 특성

평균연령	종사자수	종사기간
51.7세	3.4명	21.8년

- 제조품목으로는 여성용 구두는 10개 업체 모두가 만들고 있었고 남성용구두는 6개 업체, 기타 제품은 5개 업체만 만들고 있음
- 사업내용별로 살펴보면 제조·도매를 겸하는 업체는 6개이고 온라인에 직접 판매하는 곳은 2개이며 납품도 겸하는 곳은 4개임

☞ [표 3-29] 가죽제품 심층면접업체 현황

번호	연령	종사자수	경력기간	생산 제품			사업내용				
				남성화	여성화	기타	제조	도매	소매	온라인	납품
1	63	5	45	○	○		○	○	○		
2	34	2	8		○		○	○	○		
3	54	9	10		○		○				○
4	51	3	11		○		○	○	○		
5	46	3	21	○	○	○	○	○			
6	66	4	40		○		○			○	
7	59	4	30		○		○				○
8	58	8	40	○	○	○	○	○	○	○	○
9	58	3	무응답	○	○	○	○	○	○		
10	48	3	5	○	○	○	○				○

2) 사업운영 특성

- 응답 업체가 연간 구입하는 가죽원단의 종류는 평균 13.8개이며 80% 정도는 피혁점을 통해서 구입하고, 나머지 20%는 피혁 업체에서 직접 구입

- 그러나 맞춤형 소량생산용 피혁은 100% 피혁점에서 구입하고, 수량이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특별히 피혁제조업체와 직접 거래
- 가죽원단은 국내에서 제조된 것이 30%, 수입된 것이 70%를 차지
- 연간 개발하는 신제품의 모델 수는 57개로 월간 5~6개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었음
 - 디자인별로 보통 3개의 색상을 기본 칼라로 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제품을 칼라별로 세분화해서 계산하면 연간 약 150~160가지의 신제품을 만듦
-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약 100여개 모델임

3) 전생안법에 대한 인식과 이행 여건

가) 전생안법 인식

- 응답자 중 2명은 전생안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한 곳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 KC마크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응답
 - 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나머지 한 곳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전생안법은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뒤따르기 전에는 잘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나머지 8개 업체는 전생안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법이 있다는 것을 들어는 봤지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반응
- 납품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는 발주처가 정한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제작하고 있으나 전생안법의 구체적 내용이나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름

나) 전생안법 이행 여건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시험성적서를 원단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절반의 응답자가 그 가능성을 '30~50%'로 응답

- 특히 수입가죽제품을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응답
 - 또한, 납품업을 겸하는 업체도 시험성적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임
- 가죽원단업체를 통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 성수동의 원단업체 4곳을 방문하여 전생안법과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를 설명하고 원단구매 시 시험성적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수입업체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죽업체이기 때문에 요청할 경우 성적서를 보내올 것이므로 이를 가죽사용업체에게 줄 수 있다고 함
- 그러나 국내산 가죽인 경우 별도의 성적서를 받아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되는데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
- 따라서 국내산 가죽원단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비용을 가죽제품 제조업체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필요시마다 한두 장씩 소량으로 구입하는 제조회사는 피혁점에 대해서 인증서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협업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를 받기 용이한 수입원단의 사용을 늘릴 것으로 보임

4) 전생안법 관련 의견

가) 화평법과 전생안법의 연계 요구

- 가죽은 원피제조에서 공정만 아니라 제품제조 과정에서도 많은 화학약품을 사용하므로 전생안법으로는 관리하지 못하는 수많은 물질들의 유해성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 방법을 찾고, 소상공인의 애로는 풀어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
- 화학물질에 대해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가죽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국내유입과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
 - 유해물질의 원천적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가죽제품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고 가죽을 단순히 재단하고 결합하는 방식의 소상공인업체나 가죽공방 같은 공예업체와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

< 전생안법 관련 자유 의견 >

- " 한 켤레 주문받아 한 켤레 인증 받으러 다녀야 하나요? "
- " 수제화는 고객이 주문해서 만들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 "
- " 발주처가 하라면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
- " 전에는 몰라서 그랬는데 법의 내용을 대강 알고 나니 폐지해야 할 법인 것 같다 "
- " KC마크를 시행할 경우 생산에 어려움이 클 것 같다. 지금 하던 방식으로는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 "
- " 하라면 해야겠지만 비용이 걱정이다 "

나) 수공예형 가죽제품에 대한 예외 조치

- 가정용 섬유제품에서 맞춤형복은 안전확인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듯이 맞춤형 생산 또는 핸드메이드 제품은 화평법 개정 등을 통해 제조물질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형태로 안전관리체계가 전환될 때까지 안전확인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
 - 맞춤형 수제화나 소품류는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검사하면 관가를 두 배로 해도 모자라는 것들이 많고, 그렇다고 제조공정에서 염료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죽원단의 검사성적서를 써서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라. 전생안법 영향 분석

1) 안전확인 시험비용 부담

가) 분석 기준

- 가죽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범위규정은 가정용섬유제품과 동일하므로 가정용섬유제품에서 검토한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
 - 안전확인 제품시험은 동일한 가죽원단이라도 후가공 과정에서 염료처리 등을 따라 유해물질의 함유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

- 가죽제품은 공장에서 제조된 가죽원단을 구입하여 단순 봉제만 하여 완제품화 하는 경우도 있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봉제가공 이후에 표면처리를 거치는 제품도 있는데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물질의 유해성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처리의 경우에 대한 계산은 별도로 하지 않았음
 - 오히려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가죽원단은 가죽의 소재, 가공 상태와 색상이 유사해 보이지만 가죽원단은 로트별로 품질차이가 크고 유해물질의 정도도 달라 지므로 원단의 로트단위 검사의 경우는 반영
- 안전확인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수료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
- 응답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는 한 개만 만들어지는 맞춤형 수제화나 소품류, 통가죽제품 등이 있었으나 이들 제품에 대한 검사는 분석에서 제외
- 제품의 안전확인을 위한 시편(샘플) 제공, 기타 교통비, 물류비, 통신비 및 시간비용 등은 배제

나) 안전확인 제품시험량 산출

- 기본모델을 기준으로 제품시험을 할 경우 연간 57회의 시험 필요
 - 연간 신제품 모델수는 평균 57개이나 칼라나 디자인이 변형된 것을 포함하면 90~100개 정도가 됨
- 업체가 사용하는 가죽원단의 종류는 연간 18.3종이지만 구입하는 원단을 로트별로 분류하면 대략 91가지임
 - 원단종류 : 사용하는 가죽의 종류 6~7가지, 종류별 색상 2~3가지
 - 원단로트 : 원단종류 18.3종 × 피혁점의 로트변경 구매 빈도 연간 5회 = 91.5개
 - 성수동의 가죽제품 제조업체는 하루에 1~2차례 한 두 장씩 구입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필요시 마다 구입해서 사용

- 그러나 피혁점에서는 한 가죽을 수백 수천 장씩 한꺼번에 구입하고 있어서 가죽 제품 제조업체가 원단을 살 때마다 로트가 바뀐 제품을 구매한다고 보기는 곤란
- 따라서 피혁점에서 로트변경이 되면 사용하는 제품의 로트도 변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혁점의 구매빈도를 기준으로 로트변경 제품의 수를 파악

다) 검사비용

- 가죽제품은 사용되는 원료와 공법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별로 시험항목이 달라지므로 시험비용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천연가죽을 원단상태에서 검사하는 경우 20만원 이상이 소요

☐ [표 3-30] 가죽제품 유해물질별 시험검사비

구 분	검사비용	비고
폼알데하이드	17,000	
염소화페놀류	65,000	합성가죽은 생략 가능
6가 크로뮴	25,000	
다이메틸푸마레이트	100,000	
아릴아민	80,000	안료, 염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5,000	코팅제, 고무, 플라스틱 소재 사용 시
유기주석 화합물	65,000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	25,000	
니켈 용출량 검사	25,000	

* 자료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홈페이지

라) 안전확인 시험비용 산출 결과

- 가죽제품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때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검사비용은 1,140만원이 되고, 생산제품의 모델마다 검사를 받는다면 2,000만원이 소요
- 연간신제품수 57개 × 시험비용 20만원 = 1,140만원

○ 원단 종류별로 안전확인 제품시험 검사비용을 산출하면 연간 366만원임

- 원단종류 18.3개 × 20만원 = 366만원

○ 사용하는 가죽원단 로트를 기준으로 검사비용을 계산하면 1,820만원이 됨

- 로트구매 91회 × 20만원 = 1,820만원

☐ [표 3-31] 가죽제품 제조업체당 시험 비용

구분		연간 발생량	시험단가 (천원)	시험비용 (천원)
제품 기준	신제품 기준	57	200	11,400
	생산제품 기준	100		20,000
원단 기준	주사용 자재 기준	18.3		3,660
	재사용 원단 포함	91		18,200

○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 가죽제품 제조 소상공인업체는 654개로 위의 시험비용을 대입하여 업종 전체의 영향을 분석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표 3-32] 가죽제품 제조업종의 시험 비용

구분		연간 발생량	연간 비용(백만원)	
			업체별	업종 전체
제품기준	신제품 기준	57	11.4	7,456
	기존제품 기준	100	20.0	13,080
원단기준	신규 원단만	18.3	3.6	2,354
	기존원단 포함	91	18.2	11,903

2) 기타 전생안법 영향

○ 업의 존립자체가 불가능

- 맞춤형 구두 한 켤레 값이 갑자기 40만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임

- 애써서 성수동을 수제화 거리로 만들고 가죽공방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 국내 가죽제조업체의 위축

- 지금도 수입가죽 사용 비중이 높는데 시험성적서를 요구받게 되면 영세한 국내 가죽업체로서는 품질을 맞추지 못해서 제조업체가 구매를 기피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임
- 또 소규모 제조업체는 비교적 시험성적서를 잘 갖추고 있는 규모가 큰 피혁업체만 거래하게 될 것이므로 원단의 다양성이나 거래의 편리성 등 여러가지 면에서 산업구조가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

○ 가죽이용 공예활동 의욕 저하

- 수제가죽공예제품도 법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고 팔아야 한다면 가격도 싸고 대중적 인기가 있는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지 못하게 되므로 창작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을 것임

5. 안경테제조업

가. 안경테 산업 이해

1) 안경테의 정의와 분류

- 안경은 눈의 굴절 이상을 보정하거나 눈을 보호하거나 몸을 치장하기 위한 기구이며, 안경테, 안경알로 구성
- 안경테는 안경·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지칭
- 안경테는 일반적으로 재료, 구조, 형상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선글라스는 재료, 렌즈의 종류에 따라 분류
 - 재료에 따른 안경테 : 플라스틱 안경테, 금속안경테, 기타 안경테
 - 구조에 따른 안경테 : 조합 안경테, 반안경테, 무안경테, Slim fold 테, Prism 테, Binocular 안경테, Clip 테
 - 형상에 따른 안경테 : 원형, 사각형, 다각형
 - 렌즈에 따른 선글라스 : 밀도가 변하는 렌즈, 편광렌즈, 광색성 렌즈, 거울형태 렌즈, 반사방지 렌즈, 착색 또는 이중착색 렌즈

 [표 3-33] 안경테의 분류

구분			내용
재료에 따른 안경테	플라스틱 안경테	셀룰로이드 아세테이트 옵틸 카본 위스커	앞면의 전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안경테
재료에 따른 안경테	금속 안경테	청동 황동 양백 모넬	앞면의 전체 부분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안경테 (코받침 제외)

구분		내용	
기타 안경테	귀갑	거북이의 피혁으로 제조한 안경테 백갑, 흑갑, 담황배갑, 적갑, 반점갑 등이 있음	
	나무	나무로 만든 안경테	
구조에 따른 안경테	조합 안경테	A형	앞면의 전체부분이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렌즈고정틀이 플라스틱인 안경테
		B형	앞면의 전체부분이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렌즈고정틀이 금속인 안경테
	반안경테	앞면이 금속이나 플라스틱 또는 그것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반열림 렌즈고정틀로서 렌즈를 고정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안경테	
	무안경테	렌즈고정틀이 없고 렌즈에 직접 구멍을 뚫고 코다리 와 다리를 나사로 고정시킨 안경테	
	Slim fold 테	Pupil Distance(동공거리)를 조정할 수 있고 접혀질 수 있는 안경테	
	Prism 테	Prism lens를 끼워 누운 채로 독서할 수 있도록 만든 안경테	
	Binocular 안경테	약시용, 스포츠, 연극관람용 (일종의 망원경) 안경테	
	Clip 테	일반 안경테에 몸체(Front Part)를 덧붙여 이중으로 만든 안경테	

* 자료 : 안경테 산업 경쟁력 조사(2003)

☐ [그림 3-11] 디자인별 안경테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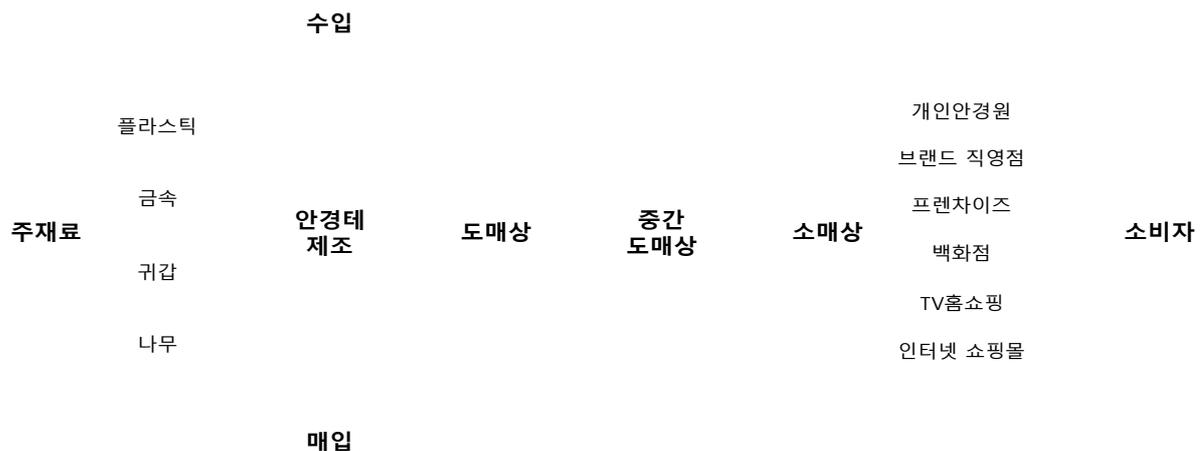
구분		내용	
형상에 따른 안경테	원형	Egg Plant형 (Ray-Ban형)	
		Oval형(타원형)	
	사각형	Boston 형	
		Square형(사각형)	
	다각형	Hexagon형(옥스퍼드형)	
		Oxtagon형(팔각형)	

* 자료 : 안경테 산업 경쟁력 조사(2003)

2) 안경테의 밸류체인

- 안경테는 국산제품은 제조업, 도매업, 지역별 중간도매업, 개인안경원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이, 수입품은 수입상, 도매상, 대리점을 통한 백화점, 전문점,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이 일반적임
- 안경테는 종류, 소재, 형태, 가격에 따라 품질이 다양하고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패션지향적인 상품으로서, 모델별 회전주기가 빠름
-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으로 자동화, 기계화가 어려운 수작업이 많고, 안경테다리, 코다리, 렌즈고정틀 등 부품생산에서 120여 공정, 조립부분에서 가공, 용접, 조립 등 140여 공정의 총 260여 공정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
- 안경테의 주요 재료는 비금속재료와 금속재료가 있으며, 원부자재의 약 65%는 수입되고 있음
- 최근에는 개인안경원 이외에 백화점, 할인매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음

 [그림 3-12] 안경테 산업 밸류체인



* 자료 : 안경테 산업 경쟁력 조사(2003) 재정리

3) 안경테 제조공정

가) 금속 안경테

- 금속 안경테는 크게 10단계의 공정과 260여 개의 세부공정을 통해 탄생

☞ [그림 3-13] 금속 안경테의 제조공정도

신 선	▪ 용도에 적합한 굵기(직경)로 신선(伸線)함
홈파기	▪ 안경알을 끼울 수 있도록 wire에 홈을 만듦
성형(권선)	▪ 안경치수별 외형모양을 디자인에 맞는 형태로 절단 및 렌즈의 커브에 맞게 만듦
부품류의 절단가공	▪ 안경테의 6대부품을 디자인에 맞게 절단 및 가공 (Temple, Bridge, Endpiece, Browbar, Toprim, Accessory)
용 접	▪ 6대부품과 부자재를 용접 (Rimlock용접, Bridge용접, Padarm용접, Hinge용접, Endpiece용접, 기타)
버프연마	▪ 표면광택 수작업
도금 및 도장	▪ 표면광택 자동 연마작업
코안장 및 다리탭 달기	
완제품 검사	▪ 플라스틱부품 부착
포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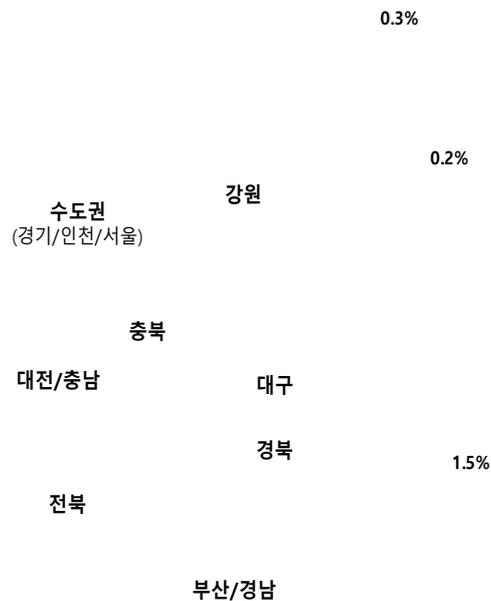
* 자료 : 안경테 산업 경쟁력 조사(2003)

4) 우리나라 안경테 산업 특성

○ 안경테 산업은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중소기업형, 도시산업 업종으로서,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음

- 우리나라 전체 안경 제조업체 수는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 643개로 10인 미만의 기업이 578개인 89.9%를 차지
- 제조공정 수가 많아 협력업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분품, 소재의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지역별로 편중이 심함
-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모델별 회전주기가 빠르며 금형, 사출, 도금 등 관련 산업의 기술적 파급이 큰 업종
- 패션 감각과 정밀 수공기술이 필요한 업종으로 손재주가 섬세하고 특출한 우리나라 체질에 적합한 산업

☞ [그림 3-14] 우리나라 안경 제조업체 분포 현황(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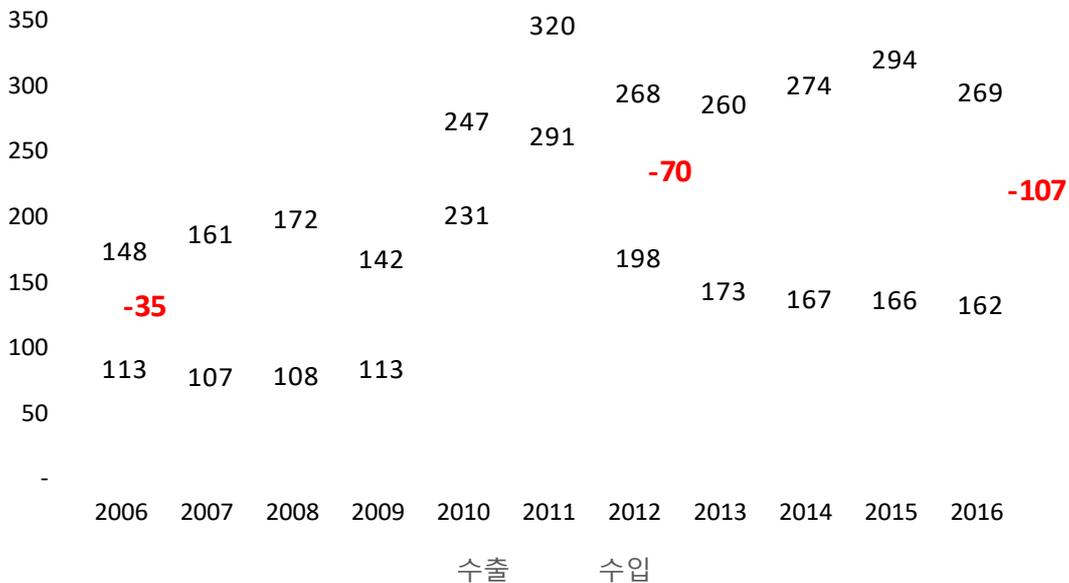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재정리

○ 안경테의 완제품 및 원부자재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안경테 산업의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무역적자이며, 특히 2012년을 기점으로 무역적자폭이 큰 폭으로 늘어나 안경테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
- 고가품의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주로 해외 명품브랜드이며, 안경테 부분품은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이탈리아에서 수입되고, 중저가품의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 수입이 증가하면서 안경테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부 제조업체의 폐업, 저가 부분품 조립생산으로 인한 대외신뢰도 상실, 제조업체 매출 감소, 제품가격 인하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남

○ 안경테는 개인안경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프랜차이즈 매장을 통한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

[그림 3-15] 우리나라 안경테류 무역수지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재정리

나. 안경테에 대한 전생안법 규정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경테류

- 전생안법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안경테(렌즈가 끼워져 있는 안경테를 포함)와 선글라스 제품류에 대하여 적용되며, 다만 특수 용도의 것(산업용 안경테)은 제외

2) 안전요건

- 안경테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은 니켈 용출량 기준만 있음
 - 니켈 용출량은 공급자적합성 확인기준 부속서 16에 따라 시험하여 $0.5 \mu\text{g}/\text{cm}^2/\text{week}$ 이하여야 함
- 선글라스는 제품마다 수평방향 렌즈 삽입부 크기, 렌즈간 거리 등의 표시 사항을 정해진 위치에 표시해야 하며, 다만 제조자, 모델명, 색상은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

다. 소상공인 심층면접 결과

1) 심층면접 개요

- 대구지역 안경제조 소상공인업체 10명을 대상으로 진행

☞ [표 3-34] 안경테 심층면접 응답자 특성

평균연령	종사자수	종사기간
52.9세	7.9명	20.5년

- 심층면접은 대구지역 안경업체를 특화지원하기 위한 「안경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대구지역의 안경산업특성과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한 후 조사대상 업체를 소개받아 진행
- 응답업체는 전부 제조·도매업체이고 소매하는 곳은 없었음
 - 안경이 일반 소비재품이면서도 안경사에 의해 안경렌즈가 맞춤형으로 착용되어야 하는 제품이어서 안경점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의 폐쇄성이 강하게 나타남

2) 사업운영 특성

- 안경은 일체 강점기에 전해진 기술을 바탕으로 대구지역에 자리 잡은 산업으로 지역 내의 협력 및 분업체계가 공고
 - IMF 이전에는 규모가 있는 회사형태로 운영되었으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제조 공정별로 분사되어 지금은 공정별로 소규모회사가 분업하는 형태로 생산
- 안경은 다품종소량생산 업종으로 최초의 주문단위는 보통 300개 내외인데 5~6개의 칼라로 만들기 때문에 생산은 옵션모델로 치면 50~60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경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관계자의 설명
- 조사대상업체의 경우 보유 모델수는 약 420개이며, 옵션모델은 5.2개임
 - 옵션제품이란 안경테의 기본모양은 같지만 다리, 브리지, 코받침 등 일부 구성품의 모양이나 소재가 달라진 것을 통칭

- 월간 개발하는 신모델은 9.4개이며 모델별 초도물량은 보통 300 ~ 600 장 정도로 조사업체의 평균값은 540장이고 칼라별 초도물량은 100장 정도
- 안경은 기획에서 생산까지 45~60일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며 260여 가지 이상의 세부공정을 분야별 협력업체가 분업형태로 담당
- 금속테가 44%이고 플라스틱은 56%로 플라스틱테 비중이 조금 더 높음
- 반제품 형태로 수입된 후 완제품화 되는 비율은 20%로 나타남
- 안경테의 유통은 안경 도매상을 통해 지역의 안경점으로 납품되는 전통적 유통경로가 지배적이며, 온라인은 선글라스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
- 해외 바이어는 안경에 대한 품질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는 납이나 니켈 같은 유해물질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므로 공급 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안전기준은 쉽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전생안법에 대한 인식과 이행 여건

가) 전생안법 인식

- 안경제조업체의 전생안법에 대한 인식은 양호한 편임
 - KC인증을 하고 있는 업체는 20%라고 응답되었으나 실제로 안경테의 KC부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안경원 3곳의 경우 판매되는 브랜드 약 50개 중에서 KC가 미부착된 제품은 20%에 불과
 - 이러한 결과는 수입제품과 OEM으로 제조하는 도매업체의 제품에서 KC부착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경테의 KC부착률은 높은 편

☞ [표 3-35] 안경테 심층면접업체의 전생안법 이해도

전혀 모른다	들어봤으나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인증 미실시	인증 실시 (KC마크 부착)
10%	30%	40%	20%

- 그러나 전생안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그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공급자적합성확인과 무관한 사항을 들어 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음
 - 전생안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기준,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함

나) 공급자적합성확인 이행 여건

- 현재 업체가 재고 보유 또는 생산 중인 제품의 수는 약 650가지임
 - 제품수의 기준은 디자인은 같아도 색상이나 다리의 모양, 코받침 등의 일부가 다른 옵션제품을 포함한 결과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성적서를 재료상 또는 하청업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응답
 - 수입되는 안경테는 주로 금속프레임이 가공된 상태로 수입되고 안경테의 제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도금과정은 품질문제로 전부 국내에서 진행되므로 수입되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없음

< KC 인증 안하는 이유 >

- " 안경의 생산과 판매과정과는 너무 맞지 않은 법이다. 지키다가는 전부 폐업해야 한다 "
- " 현재 안경제조에 사용되는 자재, 표면처리 등은 엄청 다양하다. 안경테 한 장에 적용되는 테스트가 매우 많을 것이다. 전생안법을 따르면 아마 생산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
- " 안경은 일종의 패션제품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이 기본이다. 각 품목마다 인증을 받으면 시간 비용도 문제거니와 유행에 맞추기 어렵다. 못 팔면 재고가 남는데 어떡할까요? "

- 현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시험이 필요한 제품의 수는 몇 개나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평균 2,160개로 응답
 - 그러나 이 응답 결과는 근거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막연히 '1,000개나 된다' '2,000개나 된다'고 응답한 결과를 평균한 것인데, 업체의 평균 신제품 모델의 수나 옵션제품의 수를 고려하더라도 2,160개라는 응답은 과도한 수준으로 보임

- 업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과 사용정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향후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서류를 보관하거나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임
 - 컴퓨터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회계관리 90%, 생산관리 50%, 자재 및 재고관리 70%로 나타남

4) 전생안법 관련 의견

- 안경테업종은 전생안법에 대한 불만으로 보면 다른 업종과 다를 것은 없으나 섬유나 가죽, 목재처럼 원단·원재료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음
 - 원재료가 전부 맞춤형으로 가공되고 유해물질에 영향을 주는 도금공정을 제조자가 관리하는 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 안경테는 다른 업종과 달리 전생안법 이전에도 브랜드별로 KC인증을 하고 있는데 전생안법이 되면서부터는 소재가 변할 때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불만을 표시

< 전생안법 관련 자유 의견 >

“ 법 시행이 1년간 미뤄져 다행이지만 결국 제조업자가 안경을 판매하려면 안경테마다 모델과 컬러별로 외부 공인검사소에서 인증을 받아 KC마크를 받아야 하고, 예를 들어 안경테 5가지 모델에 4가지 컬러로 안경을 생산해 검사받으려면 20종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로 수 백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

“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매번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막대한 자금 부담으로 결국은 국내 대부분의 안경 제조업체들은 폐업해야 할 판이다 ”

라. 전생안법 영향 분석

1) 안전확인 시험비용 부담

가) 분석 기준

-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지식경제부와 대구시 및 관련기업이 설립한 단체인데, 재단에서 게시한 전생안법 관련 시행공고를 보면 안경테의 공급

자적합성확인 기준을 색상변경시와 로트변경시에는 필요하고 디자인변경시에는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

- 소재에 따른 시험의 필요여부는 콤비(메탈+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도 메탈안경테와 동일하게 니켈용출량 시험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콤비제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업체가 금속테를 제조하는 비율 44%를 적용

나) 안전확인 제품시험 단가

- 안경테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니켈용출량 한 가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니켈 용출량 검사 비용을 가장 낮게 고시한 곳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재)한국안경광학산업진흥원으로 비용은 3만원임
- 시험비용 외에 접수비 및 전처리비용으로 1회 시험 의뢰마다 5천원을 받고 있으나 이 비용은 계산에서 제외

☐ [표 3- 36] 안경테 안전확인 제품시험 기준

종류	항목	검사	비고
메탈안경테	색상 변경 시	필요	색상은 염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자극,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각 검사 필요
	로트번호 변경 시	필요	로트번호가 다를 경우 동일 소재라도 사용기한에 따라 첨가된 염료물질 변성 및 독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필요
	디자인 변경 시	불필요	다만, 같은 디자인이라도 소재의 변경이나 재질이 서로 다를 경우 독성 및 피부자극에 따라 검사 필요
플라스틱 안경테	플라스틱 안경테의 경우 시험검사 및 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임의로 KC인증 마크 표시		

* 자료 : (재)한국안경광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다) 안전확인 시험비용 산출 결과

- 월간 신제품 9.4개를 개발하므로 연간 113회의 검사에 검사비용은 339만원임
 - 연간신제품수 113 × 검사비 3만원 / 금속테 비율 44% = 150만원
- 동일 모델이라도 칼라가 달라지면 검사를 받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옵션모델 5.2개임을 반영하면 연간 588회의 검사비용으로 1,764만원이 필요
 - 연간신제품수 113개 × 옵션모델 5.2개 × 검사비 3만원 / 금속테비율 44% = 776만원
- 로트단위 검사 관점에서는 현재 판매 중인 제품수(운영제품) 420개를 적어도 4개월에 1번씩은 생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740회의 시험을 위해 2,220만원이 소요
 - 현재판매중인모델수 420개 × 연간 3회 재생산 × 검사비 3만원 × 금속테 비율 44% = 1,663만원

☞ [표 3-37] 안경테 제조업체당 시험 비용

구분		연간 발생량	시험단가	금속테 비율	시험비용 (천원)
신제품	기본모델 기준	113	30,000원	44%	1,500
	옵션모델 기준	588			7,760
기존제품	옵션모델 기준	1260	30,000원	44%	16,00

-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 안경제조 소상공인업체수는 578개이므로 이들 업체가 부담할 비용을 산출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안경도매업체는 전국 985개가 있는데, 제조공장 없이 안경테를 OEM으로 생산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도매상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 분석은 생략

☞ [표 3-38] 안경테 제조업종의 시험 비용

구분		연간 발생량	연간 비용(백만원)	
			업체별	업종 전체
신제품	기본모델 기준	50	1.5	867
	옵션모델 기준	258	7.7	4,451
기존제품	로트단위 기준	554	16.6	9,595

6. 접촉성금속장신구제조업

가. 접촉성금속장신구 이해

1) 장신구의 정의와 분류

- 주얼리는 일반적으로 귀금속과 보석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귀금속과 보석을 주재료로 디자인하여 세공기술을 발휘하여 만들어진 장신구, 세부 분류로는 파인주얼리, 패션주얼리, 브릿지주얼리가 있음
 - 파인주얼리 : 귀금속과 천연보석으로만 만들어진 장신구
 - 브릿지주얼리 : 파인주얼리와 패션주얼리의 중간적 역할을 하는 주얼리로서, 1980년대 금과 은의 가격 상승여파로 합리적인 가격의 천연보석을 찾기 시작한 것에 기인하며 14K 이상의 금이나 순은 등으로 만들
 - 패션주얼리는 천연보석이 아닌 장신구로 다양한 패션스타일에 어울리도록 디자인되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특별히 의상과 어울리는 값싸고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장신구로서, 세부 분류로는 모조보석과 합성보석이 있음
- 전생안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은 주로 패션주얼리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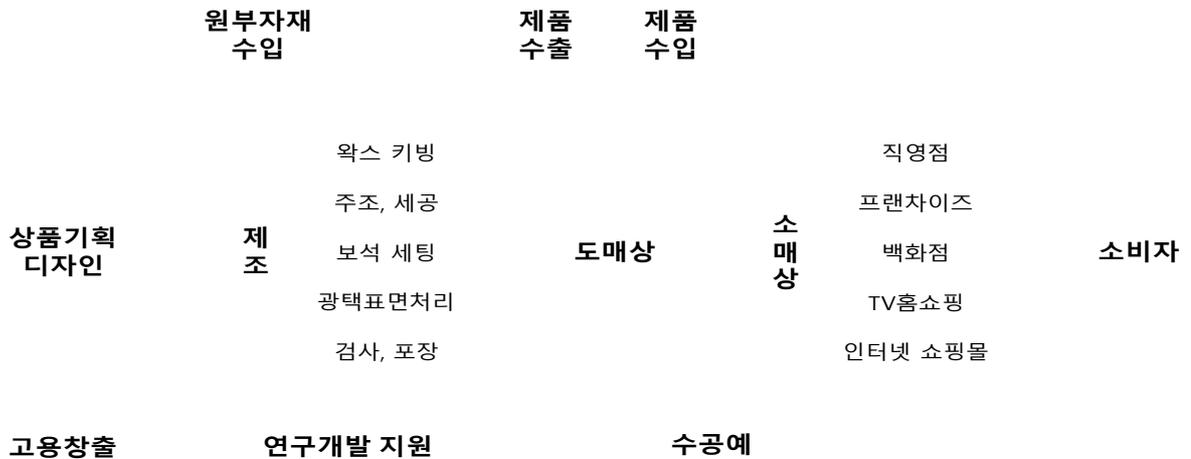
☞ [그림 3-16] 장신구(주얼리) 분류

구분	내용	예시
파인주얼리(Fine Jewelry)	골드, 다이아몬드, 루비 등 귀금속과 보석으로 디자인한 고급 주얼리	
브릿지주얼리(Bridge Jewelry)	골드(14k, 12k, 10k 등), 실버와 오톤스, 상아 등 다소 가격대가 낮은 보석을 사용한 주얼리	
패션주얼리(Fashion Jewelry)	다양한 패션스타일에 초점을 둔 주얼리로서, 모조보석과 합성보석을 소재로 만들	

2) 장신구 밸류체인

- 장신구는 상품기획/디자인, 제조, 도매업, 소매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밸류체인의 형태를 가짐
 - 주얼리 산업은 원자재를 장식품의 형태로 디자인, 가공 및 세공한 후 소비자에게 유통·공급하는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 주도의 패션지향적·창조적 지식과 숙련된 노동이 필요
 - 주얼리 산업에서 상품기획과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우리나라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소규모 업체의 디자인 역량은 해외 유명브랜드를 카피하는 수준
 - 주얼리의 주요 유통지역으로는 서울의 남대문시장, 익산 주얼리 산단, 대구 주얼리 산업 등이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TV홈쇼핑 등에서도 판매

☐ [그림 3-17] 장신구(주얼리) 산업 밸류체인



* 자료 : 국내유탄 패션주얼리 선도기업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재정리 (2010)

3) 우리나라 장신구 산업 특성

- 장신구 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부분
 - 소비자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규격화가 어려워 창조적 지식을 요함
 - 원자재의 종류, 색상, 크기의 다양성으로 기계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공과정에서 세부적인 정밀성을 요구하므로 숙련된 기능공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음

- 우리나라 주요 주얼리 유통지역은 서울 남대문시장, 익산 주얼리 산단, 대구 주얼리 산업 등임
 - 남대문시장은 집약된 건물 안의 작은 점포형태로 직거래가 이루지는 재래시장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패션주얼리, 브릿지 주얼리이며, 디자인, 생산과 판매를 모두 총괄하거나 가내수공형 하청업체를 통해 제품을 조립하기도 함
 - 익산 주얼리 산단은 1970년대 정부정책으로 조성되고 1990년대까지 호황을 누렸지만, 디자인 가치 하락, 주얼리산업의 전국화로 산단 가치 하락, 해외 수출 부진,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실패 등 시장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점차 쇠락했으며, 2012년 이후 신규 산단 조성과 정부 지원이 재개 되면서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
 - 대구 주얼리 산업은 지역특화산업육성 정책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노력으로 대구 지역의 집적화된 주얼리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관 산업인 패션, 섬유, 안경, 디자인과의 산업간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추진

나. 장신구에 대한 전생안법 규정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장신구류

-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pendant), 발찌, 손톱 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과 플라스틱, 목재 등의 표면을 금속재료로 도금한 제품 포함
 - 그러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과 금(함량이 58.5%이상), 은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2) 안전요건

- 접촉성금속장신구류는 니켈용출량 한 가지를 관리

 [표 3-39] 접촉성금속장신구 안전요구사항

구분	허용 기준
유해원소 방출량	니켈용출량이 0.5 $\mu\text{g}/\text{cm}^2/\text{week}$ 이하여야 함

3) 시험 방법

- 접촉성금속장신구의 겉모양은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
- 공급자적합성 확인기준 부속서 37에 따라 니켈 용출량이 $0.5 \mu\text{g}/\text{cm}^2/\text{week}$ 이하이어야 함
 - 니켈용출을 시험할 제품을 일주일 동안 인공 땀액에 방치 후 니켈의 용도를 원자 흡수 분광법, 유도 결합 플라즈마 분광법 또는 적절한 분석방법으로 측정

다. 소상공인 심층면접 결과

1) 심층면접 개요

- 서울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의 입주상인 10명을 대상으로 진행

☐ [표 3-40] 접촉성금속장신구 심층면접 응답자 특성

평균연령	종사자수	종사기간
43.8세	1.4명	11.2년

- 심층면접은 서울시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주무관을 통해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의 상인회장을 소개받아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개받은 상인을 예비조사한 후 무작위로 업체를 방문하여 본조사를 진행
- 접촉성금속장신구를 제조하는 업체는 부품 생지를 구입하여 직접 도금공장에서 원하는 소재로 도금을 한 다음 큐빅 같은 장식용 소재나 천 등을 덧붙여서 제품을 완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품화 과정

2) 사업운영 특성

- 접촉성금속장신구를 만드는 업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공이 끝난 재료를 구입해서 단순조립가공만 하는 업체와 여러 모양의 생지를 구입해서 원하는 디자인을 만든 후 도금공정과 표면처리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들거나, 필요 재료를 처음부터 자체 디자인해서 만드는 업체로 구분

- 주로 헤어밴드나 헤어핀 같이 금속재료보다는 섬유나 가죽, 플라스틱 등의 재료가 디자인을 결정하는 품목을 만드는 곳은 가공이 끝난 재료를 구입해서 단순조립하는 경우가 많고, 브로치, 팔찌 등과 같이 금속재료가 디자인에서 중요한 품목은 생지를 구입하기도 하지만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음
- 완성된 재료를 구입해서 단순조립형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10여 가지 정도로 파악됨
- 기본 소재의 금속을 직접 캐스팅(주조)해서 업체는 연간 40~50회를 발주
 - 액세서리업체는 주석과 아연 등의 소재를 주조공법으로 원하는 형태로 만든 후 도금공정을 통해 강도를 얻고 표면도금으로 마감 칼라를 얻는데 유해성 기준이 되는 니켈이 도금공정에서 사용되므로 캐스팅 횟수는 제품검사의 대상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됨
- 접촉성금속장신구업체가 보유한 제품의 기본모델은 적게는 100여 개, 많은 곳은 1,000개를 넘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 150~250여 가지임
 - 보통 한 개의 기본모델은 4~6개의 옵션모델이 있기 때문에 칼라가 다른 옵션모델을 기준하면 업체당 제품수는 600~1,000가지임
- 신제품은 품목당 한 주에 2~3개씩 개발되고 있으며 연간 신모델은 대략 잡아도 2,000개가 넘다는 의견이나 업체에서 말하는 신모델은 동일한 상태에서 큐빅의 위치나 크기 숫자 등을 바꾼 형태이거나 섬유재질의 장식부재를 변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변형이 수반되는 신제품 개발과는 거리가 있고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신제품수를 파악하면 월간 3~4개 정도임
 - 품목당주간신제품 2~3개 × 취급품목수 3~4개 × 칼라수 5개 × 50주
- 유해물질의 변형이 생기는 신제품은 보통 캐스팅을 거치기 때문에 연간 캐스팅 횟수가 50번이라면 유해물질의 변형이 생긴 개발도 50회로 보는 것이 타당
- 안전확인 대상인 니켈 문제에 대해서는 무니켈을 사용하고 싶어도 도금비용이 20~30%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설명

3) 전생안법에 대한 인식과 이행 여건

가) 전생안법 인식

○ 안경제조업체 다음으로 전생안법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 2013년 지식경제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남대문 일대의 액세서리 업체 중 KC 신고 업체는 2,300여 업체 중 23.7%인 544개인 것으로 나타남¹⁴⁾

☐ [표 3- 41] 접촉성금속장신구 심층면접 업체의 전생안법 이해도

전혀모른다	들어봤으나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법의 세부내용과 규정을 안다	인증서 보유
0%	40%	60%	80%

- 또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과 액세서리 업계의 간담회를 통해 ‘재질별 종류별 시험 구분 대신에 재질별 검사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남대문의 액세서리업체는 KC 인증시험을 재질별로 한 가지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
- 조사에 응한 업체는 통상 1~3개 정도의 제품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헤어밴드 제품, 귀걸이, 반지, 팔찌 등 자기가 취급하는 대표 품목당 1개씩 시험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시험은 상가별 상인회가 주선하여 시험기관과 단체계약으로 진행하였고 비용은 업체당 10 ~ 15만원 정도였다고 설명
- 전생안법이 이슈화되면서 안전확인 제품시험성적서를 품목별 대표제품에 대해 받아두고 있는데 이것이 무력화되고 개별 제품별로 혹은 모델별로 전부 받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

14) "KC안전인증 관련 중소기업의 "손톱 밀 가시"제거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3.3.15.)

< 사례 >

“ 전에 장관이 와서 품목별로 받으면 된다고 해서 여기 상인들 싹 다 십만원인가 얼마가를 내고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와서 제품별로 받아야 한다느니 모델별로 받아야 한다느니 인증서가 없으면 판매를 못한다느니 야단들이니 답답해 죽겠네요. 뭐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맞으니 따라 간다든지 잘못 됐으니 바꾸기라도 할 것인데, 아무도 자세한 이야기를 안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는 거지요. 하루 한 두 손님 만나기도 힘든데 인증하라면 문 닫지”

“ 장관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 인증서 받았으니 그걸로 쓰는 거지. 여기서 쓰는 재료가 맨날 그것이 그것이니까 재료 기준으로 받으면 한두 개는 하는데 제품마다 하려면 할 재주가 없어. 이거 머리핀인데 핀은 전부 같은 거고 여기에 알맹이만 바꿔 붙이는 거여. 형겅도 아주 감긴걸 사서 온다고. 그냥 조립인데 왜 우리보고 하라는지 몰라 ”

나) 공급자적합성확인 이행 여건

- 현재 업체가 재고 보유 또는 생산 중인 제품의 기본모델 약 200여 가지임
 - 기본모델은 디자인은 같아도 큐빅의 색상이나 섬유장식의 모양 등 제품의 일부가 다른 제품은 제외하고 디자인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
- 완성된 재료를 사서 쓰는 단순조립업체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성적서를 재료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
 - 재료상은 제조업체가 사서 조립만하면 되는 상태의 완성된 소자를 판매하고 있고, 무니켈 제품을 판매하는 곳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장신구제조에 사용되는 금속재료를 도금이전의 상태인 생지상태로 구입해서 제조하는 업체는 스스로 제품시험을 해야 함

4) 전생안법 관련 의견

가) 품목별 인증체계 유지를 요구

- 남대문시장의 장신구제조업체는 2013년 지식경제부 장관과 액세서리 업계의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재질별 검사기준을 전생안법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

나) 안전인증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요구

- 전생안법에 따르면 접촉성장신구에 대해 직접적인 피부접촉제품인지를 기준으로 안전확인 대상을 분류하고 있으나 제조업체는 인증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헤어밴드의 경우 금속으로 만들었으나 표면을 천으로 감싸고 있는 경우 안전확인 대상인지 아닌지가 모호하다는 입장

라. 전생안법 영향 분석

1) 안전확인 시험비용 부담

가) 분석의 전제

- 안전확인 시험비용은 성인용 제품에 대한 시험기준을 적용
- 법에서 정한 안전확인 대상이 되는 제품의 모델기준은 장신구에 부착된 섬유, 가죽, 큐빅, 유리 등의 구성품이 달라지더라도 금속재료가 같으면 유해물질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금속재료부분의 디자인이 변경된 제품만 안전확인 대상의 모델단위로 설정
- 제품의 안전확인을 위한 시험에는 시편이나 제품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겠지만 이것은 고려하지 않았고 기타 시험의뢰를 위한 교통비, 물류비, 통신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 등은 배제
- 접촉성금속장신구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니켈용출량 한 가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니켈용출량 검사비는 3만원을 기준으로 함

나) 안전확인 시험비용 산출 결과

- 직접 캐스팅해서 만든 신제품은 안전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추정하면 150만원 정도가 됨
- 연간캐스팅 50회 × 검사비 3만원 = 150만원

- 로트단위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비용을 계산하면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제품 100여 개 중 20개 정도가 매월 재주문되기 때문에 금액은 720만원이 됨

- 매월발주하는 제품수 20개 × 연간 12회 × 검사비 3만원 = 720만원

- 완성된 부품을 단순조립하는 경우 사용하는 재료는 10여 가지이나 재질은 기준으로는 2~3개에 불과하므로 시험비용은 30만원 또는 9만원 정도임

☐ [표 3-42] 접촉성금속장신구 제조업체당 시험 비용

구분		연간 발생량	시험단가	시험비용(천원)
제품 기준	신제품 한정	50가지	30,000원	1,500
	생산 모델 포함	240회		7,200
재료 기준	주사용 재료	10가지		300
	주사용 재질	3가지		90

-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 접촉성금속장신구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업체수는 2,385개인데 남대문지역에서 단순조립만 하는 업체는 약 40%이고, 직접 제조하는 비율은 60%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표 3-43] 접촉성금속장신구 제조업종의 시험 비용

구분	해당업체수	시험비용(백만원)	
		업체별	업종 전체
기본모델	1,350 (60%)	1.5	2,025
제조로트		7.2	9,720
재료종류기준	901 (40%)	0.3	270
재질기준		0.09	81

7. 구매대행업

가. 구매대행업 이해

1) 정의

○ 구매대행업에 대한 법적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구매자를 대신해서 해외의 상품을 구입하는 제반 절차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정의

○ 구매대행은 통상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

- 고객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찾아서 구매대행자에게 견적을 요청
- 구매대행자는 그 상품을 구입하는 상품비용과 물류비용 및 수수료를 포함해서 견적을 제시
- 견적을 바탕으로 비용협의를 끝내고 구매대행자에게 입금
- 입금 확인 후 구매대행자는 상품을 구입. 이 때 구입한 상품의 해외배송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매대행자가 계약한 물류회사(배대지)로 상품을 주문
- 배대지에서 한국의 주소로 배송하면 구매대행은 종료

☐ [그림 3-18] 구매대행 절차도



2) 구매대행업 현황

- 우리나라의 구매대행업에 대한 자세한 통계자료는 아직 없으나 구매대행을 포함한 해외직구 현황을 통해 간접적인 추정은 가능
- 소비자보호원은 해외직구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¹⁵⁾에서 해외직구 경험자의 28.1%가 구매대행을 이용한 것으로 발표
- 관세청의 해외직구 관련 통계에서 2016년의 해외직구는 1,739만 건 규모 전년 전수 대비 1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직구 국가별로는 미국(65%) > 유럽(15%), 중국(8%), 일본(6%)의 순
 - 품목별로는 건강식품(20%), 화장품(16%), 기타식품(14%)이고 전생안법의 공 급자적합성확인대상인 의류는 12%, 신발은 8%로 집계됨
- 당사가 구매대행업체수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통신판매업 등록업체 대상 의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구매대행업체는 약 1만6천여 개로 추정
- 한편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전생안법의 쟁점과 소비자의 안전을 주제한 발표 자료에서 구매대행의 규모를 1조원, 구매대행 물품 중 의류의 비중을 42% 정도된다고 언급¹⁶⁾
- 구매대행업계에서는 대행 건당 평균수수료 수입을 대략 6천원 ~ 1만원임¹⁷⁾

나. 구매대행업체의 전생안법 영향

1) 업체당 구매대행 규모

- 당사가 서울시에 등록된 통신판매사업자 중 구매대행을 한다고 응답한 업체의 설문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업체당 구매대행 규모는 월 10건 미만에서 월 1,000건 이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어서 평균값 보다는 중간값 월 40~50건 정도를 구매대행 전수기준으로 사용

15) 해외직구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2014)

16) 전생안법 개정 토론회(서울특별시, 소상공인연합회, 2017.7)

17) 글로벌셀리창업연구소 안영신(맥스컨설팅 전생안법 관련 인터뷰, 2017)

- 구매대행 하는 물품의 종류(모델수)는 의류 2,500개, 안경 70개, 가죽제품 700개, 장신구 1,100개 정도가 된다고 응답
- 매월 발굴하는 신상품은 약 150~200개 정도

2) 구매대행업 안전확인 비용

- 온라인 조사에 응한 구매대행업체 중 안전인증을 한 품목이 있는 업체는 6개 업체였는데 이들 업체는 구매대행 뿐만 아니라 병행수입을 하고 있는 업체였음. 병행수입을 하지 않고 구매대행만 하는 업체 중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대행 하는 경우는 약 15%임
- 따라서 구매대행건의 85%가 향후 안전확인을 위한 시험성적서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연간으로 보면 대략 160만 건으로 추정 가능
 - 업체당연간구매대행건수 600건 × 구매대행업체수 1만6천개 × 안전미확인제품 85% × 의류·신발의 비중 20% = 163만건
- 구매대행업체의 건당 수수료가 1만원 내외인데 의류나 신발의 안전확인 제품시험 비용은 10만원과 20만원이기 때문에 안전확인 성적서가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3) 국내 구매대행업체의 역차별

- 만약 구매대행업체가 안전확인 책임을 지게 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구매대행사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반면 사업자를 외국에 등록하고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들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역차별이 발생하며, 소비자 안전문제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

8. 전자상거래업

가. 전자상거래업 이해

- 산업표준분류에서 전자상거래업은 기업소비자간전자상거래(B2C), 상품소매(전자상거래방식), 쇼핑몰운영(전자상거래 : 유형재), 온라인상품판매(소매), 온라인통신판매(통신소매 : 유형재), 인터넷상품판매(소매), 인터넷통신판매(소매 : 유형재), 전자상거래(소매 : 유형재), 전자쇼핑몰운영(소매 : 유형재), 통신판매(온라인)업을 하는 업체로 정의

나. 전생안법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입대행업자, 판매업자, 판매중계업자, 구매대행자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 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
-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인터넷 게시의무는 현재 1년간 유예된 상태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의 전자상거래 규모

- 전자상거래업체는 2014년 사업체조사기준으로 전국에 10,168개가 있으며 그 중 소상공인업체는 9,711개로 95%를 차지
- 이들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한 전자상거래 규모는 40조 3천억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거래규모는 10조 8천억원으로 전체거래액의 26.8%를 차지¹⁸⁾

☐ [표 3-4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전자상거래 규모

가 구	의 복	신 발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
1,296,874	5,833,533	937,184	896,612
1,672,578	6,909,212	1,057,804	1,135,491

라. 전생안법 관련 온라인조사 결과

1) 온라인조사 배경

- 전생안법은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 중개할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정보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온라인에서 판매 또는 소규모인터넷몰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계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심층면접하려 했으나, 예비조사 결과 온라인 조사로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 조사로 대체

2) 조사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서울시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자정보를 내려받아 신고서에 따른 판매상품을 기준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과 관련된 업체를 선별하고, 폐업·휴업, 진출한 업체와 법인사업자를 제외하여 모집단 10,599개의 리스트를 구성
- 이 중 2015~2017년 사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업체 6,239개를 대상으로 온라인조사서를 배포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제품 관련성이 있는 업체만 응답하게 하여 회신된 112개의 유효표본 확보

18) 온라인 쇼핑동향조사(통계청, 2016)

3) 조사 결과

가)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평균연령은 33세이고 평균사업기간은 2.3년, 종사자수는 2.6명임
- 주로 취급하는 상품은 의류가 6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장신구(19.5%) > 가죽(10.6%) > 안경(5.3%) > 가구(1.8%)의 순서임
- 사업형태별로 보면 온라인판매업은 94.5%,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매중계업자는 19.1%이고 병행수입 6.4%, 구매대행 8.0%, 일반수입 6.4%임
- 취급하는 상품의 모델수는 평균 276개임

나) 전생안법에 대한 인식과 이행

- 전생안법에 대한 이해수준의 질문에서 응답자의 62.5%는 ‘법이 있는 것을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의견이었고, ‘법의 세부내용을 알고 있다’는 의견은 25.0%, ‘법에 따라 적극적 대응하고 있다’는 비율은 8.0%을 보이고 있어 일반 소상공인에 비해 법에 대한 인식은 양호한 편임
- 판매중계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몰에서 전생안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되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에서는 17명의 응답자 중 1명(5.9%)은 이미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했지만 9명(52.9%)은 ‘보완할 생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

< 사례 >

“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워서 다른 업체가 하는 것을 보고 할까 생각중인데, 다른 업체들도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인지 아직 참고할 만한 곳을 찾기가 힘드네요. 또 법이 시행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으니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

다) 전생안법 관련 의견

- 전생안법 시행에 따른 판매위축, KC미부착 제품의 재고, 상품의 안전확인에 따른 애로(시간투입, 인력추가 등)의 문제가 없는지에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

- 온라인판매자 중에서 액세서리를 취급하는 업체는 남대문에서 액세서리 재료를 구입해서 자기가 집에서 손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인증비용으로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
- 그러나 동대문에서 옷을 사다가 재판매하는 소매업자인 경우는 거래업체가 인증을 어떤 형태로든지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아무래도 안전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신경이 쓰인다고 함
- 판매중개업체 중에는 법 시행이 확실해지면 다른 업체보다 먼저 KC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매자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홍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도 존재

○ 전생안법은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 일정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함

- 전생안법의 시행되더라도 하루아침에 모든 제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법 시행과 동시에 단속하는 것 보다는 일정기간 계도를 하고 그 후에 단속하는 식으로 해야 현장에서 혼란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

4) 전생안법 영향 분석

- 직접적인 시험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재고를 거의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인증제품의 재고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임

제4장 조사 결과 종합

- 1절.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 비용 부담
- 2절. 시장상황의 변화

1.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 비용 부담

1) 가구

- 가구는 제조에 사용되는 목재류가 대부분이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유통되고 있어서 가구제조 업체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급의 목재제품을 사용하면 제품의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성이 확인됨
- 다만, 가구제조업체 중에는 표면도장이나 표면마감제를 접착하는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명확히 원재료가 아닌 제품을 기준으로 안전확인을 해야 할 것이나 소량의 접착제나 표면처리제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확인 시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웠음
- 가구제조업체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추정한 결과 제품의 규격이나 색상이 바뀔 때마다 시험을 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업체당 연간 72회의 시험이 필요
- 구매처에서 목재제품을 살 때 품질확인서로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경우라면 연간 3회의 시험으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이 가능할 수 있음

☐ [표 4-1] 가구 기준별 시험비용 산출

구분		시험 실시 기준	발생빈도 (회)	시험단가 (천원)	금액 (천원)
신제품기준	기본모델 한정	신제품 모델별로 시험	24	100	2,400
	옵션모델 포함	신제품의 마감재 색상별로 시험	72		7,200
생산제품기준		월간 생산되는 제품별로 시험	240		24,000
원자재 기준	주사용 자재	원자재가 추가될 때만 시험	10		1,000
	목재제품 품질인증서 활용	품질인증서가 없으면 시험	3		300

- 소상공인 가구제조업체 총매출액은 3조425억원이고 영업이익은 3천180억 원(19)으로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311백만원, 영업이익은 32백만원임

- 소상공인 가구제조업체가 신제품 개발 시 기본모델마다 안전확인 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비용이 차지하는 부담은 매출액의 0.8%, 영업이익의 7.4% 정도이며, 주로 사용하는 원자재를 시험하는 경우는 매출액의 0.3%, 영업이익의 3.1%를 시험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표 4-2] 가구 매출액·영업이익 대비 시험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제품별 시험			원자재 시험	
	기본모델 한정	옵션제품 포함	생산제품 기준	주사용 자재 한정	구매처 성적서 활용
시험비용(a)	2,400	7,200	24,000	1,000	300
매출액 평균(b)	310,976				
영업이익 평균(c)	32,512				
매출액 비율(b/a)	0.8%	2.3%	7.7%	0.3%	0.1%
영업이익 비율(c/a)	7.4%	22.1%	73.8%	3.1%	0.9%

2) 가정용 섬유제품

- 가정용섬유제품은 원단의 종류도 다양하고 만들어지는 옷의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사용하는 옷감의 수, 염색의 방법과 색상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 기준을 설정하는데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요인이 매우 많았음
- 본 조사에서는 크게 가정용섬유제품 제조 시 원단상태에서 더 이상의 화학적 처리과정 없이 단순 봉제가공만 하는 경우와 원단에 추가적인 화학물질이 유입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 하였음
- 신제품에 대해서만 시험을 해도 된다고 가정하면 업체당 468회의 시험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고, 신규원단을 사용할 때만 조사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192회의 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19) 경제총조사(통계청, 2015)

[표 4-3] 가정용섬유제품 기준별 시험 비용

구분		시험 발생 횟수			시험단가 (천원)	시험비용 (천원)
		성수기	비수기	연간		
제품 기준	신제품 및 옵션 포함	360	108	468	100	46,800
	생산되는 제품 기준	720	180	900	100	90,000
원단 기준	신규원단 한정	144	48	192	60	11,520
	기존원단 포함	684	156	840	60	50,400

- 소상공인 가정용섬유제품제조업 27,169개의 총매출액은 2015년 기준 6조 6천274억원이고 영업이익은 7천248억원으로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244백만원이며, 영업이익은 27백만원임
- 소상공인 가정용섬유제조업체가 신제품 개발 시 기본모델마다 안전확인 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비용이 차지하는 부담은 매출액의 19.2%, 영업이익의 175.4%이며, 신규사용 원단을 시험하는 경우는 매출액의 4.7%, 영업이익의 43.2%를 시험비용을 써야 할 것으로 나타남
- 가정용섬유제품의 경우 신규원단을 검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비용을 시험비용으로 지출해야 함

[표 4-4] 가정용섬유제품 매출액·영업이익 대비 시험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제품대상 시험		원단대상 시험	
	신제품 한정	기존제품 포함	신규 사용원단 한정	기존원단 포함
시험비용(a)	46,800	90,000	11,520	50,400
매출액 평균(b)	243,934			
영업이익 평균(c)	26,679			
매출액 비율(b/a)	19.2%	36.9%	4.7%	20.7%
영업이익 비율(c/a)	175.4%	337.3%	43.2%	188.9%

3) 가죽제품

- 가죽제품은 가죽원단으로 제품형태를 만든 후 마감처리(염료사용, 광택제 사용 등)를 거쳐 최종 판매제품을 탄생되고, 수공으로 맞춤 제품을 만드는 경우라면 매 제품마다 원단도 다르고 마감처리 상태도 달라지므로 제품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을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유해물질은 가죽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입되고 봉제·접합·마감의 과정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가정할 경우 가죽원단에 대한 안전기준 확인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음
- 본 조사에서는 제품마다 엄격히 안전확인을 하는 경우와 가죽원단으로도 안전확인이 되는 상황으로 나누어서 시험의 필요상황을 검토하였음
- 제품모델마다 시험을 받는 경우 연간 50회이나 제품의 생산로트단위로 시험을 받는 경우라면 554회의 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표 4-5] 가죽제품 기준별 시험 비용

(단위 : 회, 천원)

구분		연간 발생량	시험단가	시험비용
제품 기준	신제품 기준	57	200	11,400
	생산제품 기준	100		20,000
원단 기준	주사용 자재 기준	18.3		3,660
	재사용 원단 포함	91		18,200

- 소상공인 가죽제품제조업 654개의 총매출액은 2015년 기준 3천431억원 이고 영업이익은 252억원으로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525백만원이며, 영업이익은 39백만원임
- 소상공인 가죽제조업체가 신제품 개발 시 기본모델마다 안전확인 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비용이 차지하는 부담은 매출액의 2.2%, 영업이익의 29.5%이며, 신규사용 원단을 시험하는 경우는 매출액의 0.7%, 영업이익의 9.5%를 시험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표 4-6] 가죽제품 매출액·영업이익 대비 시험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제품대상 시험		원단대상 시험	
	신제품 한정	기존제품 포함	신규사용원단 한정	기존원단 포함
시험비용(a)	11,400	20,000	3,660	18,200
매출액 평균(b)	524,625			
영업이익 평균(c)	38,580			
매출액 비율(b/a)	2.2%	3.8%	0.7%	3.5%
영업이익 비율(c/a)	29.5%	51.8%	9.5%	47.2%

4) 안경테

- 안경테에서 규제하는 유해물질은 도금과 코팅의 과정에서 생기므로 신제품은 물론 기존 제품도 생산 로트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가정할 수 있음
- 법에서는 금속성 안경테만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은 제외되나 금속과 플라스틱이 조합된 제품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시험의 필요정도를 분석하였음
- 제품시험은 기본모델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113회이고 제품의 로트 단위 별로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면 1,260회의 시험을 거쳐야 함

[표 4-7] 안경테 기준별 시험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연간 발생량	시험단가	금속테 비율	시험비용
신제품	기본모델 기준	113	30,000원	44.1%	1,495
	옵션모델 기준	588			7,779
기존제품	옵션모델 기준	1,260	30,000원		16,670

- 소상공인 안경제조업 578개의 총매출액은 2015년 기준 2천198억원이고 영업이익은 260억원으로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380백만원이며, 영업이익은 45백만원임

- 소상공인 안경제조업체가 신제품 개발 시 기본모델마다 안전확인 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비용이 차지하는 부담은 매출액의 0.4%, 영업이익의 3.3%이며, 기존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시험하는 경우는 매출액의 4.4%, 영업이익의 36.9%를 시험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표 4-8] 안경테제조 매출액·영업이익 대비 시험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신제품대상 시험		기존제품 생산모델
	기본모델 한정	옵션모델포함	
시험비용(a)	1,495	7,779	16,670
매출액 평균(b)	380,333		
영업이익 평균(c)	45,140		
매출액 비율(b/a)	0.4%	2.0%	4.4%
영업이익 비율(c/a)	3.3%	17.2%	36.9%

5) 접촉성금속장신구

- 접촉성금속장신구는 안경과 비슷해서 도금과정에서 유해물질이 혼입되기 때문에 업체가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도금을 얼마나 자주하는가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확인 시험의 필요가 달라짐
- 제품의 모델별 시험의 경우도 고려하여 시험상황을 분석하였는데, 제품기준으로는 연간 50회 정도이며, 주로 사용하는 재질을 기준으로 하면 3회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소상공인 접촉성금속장신구제조업체 2,385개의 총매출액은 2015년 기준 5천986억원이고 영업이익은 375억원으로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267백만원이며, 영업이익은 28백만원임
- 소상공인 접촉성금속장신구제조업체가 신제품 개발 시 기본모델마다 안전확인 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비용이 차지하는 부담은 매출액의 0.6%, 영업이익의 9.5%이며, 주사용 원재료별로 시험하는 경우는 매출액의 0.1%, 영업이익의 1.9%를 시험비용을 써야 할 것으로 나타남

[표 4-9] 접촉성금속장신구 기준별 시험 비용

구분		연간 발생량	시험단가	시험비용(천원)
제품 기준	신제품 한정	50가지	30,000원	1,500
	생산 모델 포함	240회		7,200
재료 기준	주사용 재료	10가지		300
	주사용 재질	3가지		90

[표 4-10] 접촉성금속장신구제조 매출액·영업이익 대비 시험 비용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제품대상 시험		원재료 대상 시험	
	신제품 한정	기존제품 포함	주사용 재료 기준	주사용 재질 기준
시험비용(a)	1,500	7,200	300	90
매출액 평균(b)	250,987			
영업이익 평균(c)	15,731			
매출액 비율(b/a)	0.6%	2.9%	0.1%	0.0%
영업이익 비율(c/a)	9.5%	45.8%	1.9%	0.6%

6) 구매대행업체 및 전자상거래중계업체

○ 전국 한 해 구매대행건수는 대략 160만 건으로 추정되나 구매대행업체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책임에 대해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비용의 부담으로 구매대행업체가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구매대행물품이 무엇인지 확인된 바도 없기 때문에 분석자체가 불가

- 업체당연간구매대행건수 600건 × 구매대행업체수 1만6천개 × 안전미확인제품 85% × 의류·신발의 비중 20% = 163만건

○ 전자상거래중계업체가 부담해야 할 시험비용은 별도로 없음

7) 소상공인의 시험비용 부담 종합

○ 본 조사용역에서 소상공인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한 가구, 가정용섬유제품,

가죽제품, 안경테, 접촉성금속장신구 5개 품목을 제조하는 소상공인업체수는 업종전체의 사업체수 44,486개 중 91.2%인 40,570업체이기 때문에 전생 안법은 소상공인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됨

- 실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시험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경제총조사(2015)에 따르면 5개 품목의 소상공인 제조업체 40,570개의 매출총액은 10조8천315억이며, 제조원가율은 76.6%, 영업 이익률은 10.45%임
- 공급자적합성 5개 품목의 소상공인 제조업체 40,570개 업체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안전확인을 위한 시험을 하는 경우의 시험비용은 1조3천68 억으로 업체 총매출액 10조8천315억원의 12.1%에 이르고, 업체의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시험비용은 115.5%로 시험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

☞ [표 4-11] 5대 품목의 시험 비용 종합

(단위 : 백만원)

구분		가구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안경테	접촉성 금속장신구	전체
업체수		9,784	27,169	654	578	2,385	40,570
시험비용	신제품 기준(a)	23,482	1,271,509	7,456	867	3,578	1,306,892
	신규원재료 기준(b)	9,784	312,987	2,354	-	716	325,841
매출액(c)		3,042,586	6,627,434	343,105	219,833	598,604	10,831,562
매출액 대비 시험비용 비율	신제품 기준(a/c)	0.8%	19.2%	2.2%	0.4%	0.6%	12.1%
	신규원재료 기준(b/c)	0.3%	4.7%	0.7%	-	0.1%	3.0%
제조원가		2,099,384	4,685,596	262,475	152,344	448,953	7,647,083
시험비용에 따른 원가상승률	신제품 기준(a/d)	1.1%	27.1%	2.8%	0.6%	0.8%	17.1%
	신규원재료 기준(b/d)	0.5%	6.7%	0.9%	-	0.2%	4.3%
영업이익(d)		318,094	724,846	25,231	26,091	37,518	1,131,780
영업이익 대비 시험비용 비율	신제품 기준(a/d)	7.4%	175.4%	29.5%	3.3%	9.5%	115.5%
	신규원재료 기준(b/d)	3.1%	43.2%	9.3%	-	1.9%	28.8%

- 신규원자재를 사용할 때마다 안전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그 원자재에 한해서는 추가 시험 없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다고 가정할 때에는 시험 비용이 3천258억원이 되는데 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의 3.0%이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8.8%임
 - 단, 안경테는 동일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도금과정을 다시 거치기 때문에 재료단위의 시험으로는 안전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산에서 제외
-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에 따른 원가상승률은 신제품을 기준으로 시험할 경우 17.1%이고 신규원자재를 기준으로 하면 4.3%임
-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이 제조원가, 영업이익,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용 섬유제품 > 가죽제품 > 가구 > 접촉성금속장신구 > 안경의 순으로 나타남
 - 가정용섬유제품에서 시험비용에 따른 원가상승률은 신제품 기준 시 27.1%이고 신규원자재 기준 시 6.7%이며, 영업이익의 175.4%와 43.2%가 감소
 - 가죽제품의 경우 신제품 기준 시 2.8%, 신규원자재 기준 시 0.9%의 원가상승률로 나타나며 영업이익은 각각 7.4%와 3.1%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가구제품은 신제품 시험 시 1.1% 신규원자재 시험 시 0.5%의 원가상승이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각각 7.4%와 3.1%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접촉성금속장신구 업종은 신제품 기준 시 0.8% 신규원자재 기준 시 0.2%의 원가상승이 유발되며 영업이익은 각각 9.5%, 1.9% 감소할 것임
 - 안경테는 5개 조사품목중에서 가장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가상승률은 신제품 기준시 0.8%이고 영업이익은 3.3% 감소할 것으로 예상

2. 시장상황의 변화

1) 원자재 부문

○ 소규모 공급업체의 위축과 공급업체의 양극화

- 공급자적합성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품단위의 시험보다는 원자재 상태에서의 시험이 비용면에서 경제적이므로 제조업체는 직접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을 받지 않고도 안전성 관련 성적서 등을 확보될 수 있는 공급업체로 구매선을 점차 전환할 것임
- 가구제조업체는 소규모 목재유통상(목재상)이나 라미네이팅 업체보다는 목재제품 품질인증서 등을 확보하기 쉬운 대형업체를 선호
- 국내 섬유원단 제조업체는 유해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능력을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을 받는데 애로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나, 소규모 원단 수입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애로가 커질 전망
- 국내 소규모 가죽제조업체는 가죽원단 생산공정의 표준화, 유해물질 안전관리 등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죽원단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시험성적서를 요구받을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 곤란

○ 원자재 공급가격 또는 가공비용의 상승

- 원자재 업체 입장에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원자재 가격에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특히 가죽원단의 경우 시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가격에 반영될 전망
- 안경테나 접촉성금속장신구는 니켈도금 방식에서 무니켈도금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면 20%이상의 가공비용이 증가되고, 기존 니켈도금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마감도금 품질을 높이는데 따른 비용증가로 가공비도 덩달아 인상될 것임

○ 친환경 자재 사용 증가와 제조공법의 변화

- 가구에서는 친환경도료나 접착제 사용이 늘어나고 안경테나 접촉성금속장신구 등은 무니켈도금 방식이 확대 적용될 전망

2) 제조 부문

○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의 약화

- 동대문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용섬유제품 클러스터는 소규모로 다양한 신제품을 쏟아내고 시장반응이 좋은 제품을 제빠르게 추가 생산·판매하여 제품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가격경쟁력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나 안전확인을 위한 시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이 지연되고 신제품개발 의욕이 낮아져 전반적으로 동대문 고유의 역동성이 약화될 수 있음
- 성수동지역의 수제화 제조업체나 가죽공예업체는 제품을 한 개만 만들더라도 공급자 적합성확인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시험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소규모 주문생산을 포기하고 하청생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 소재 및 디자인 개발 약화

- 안경테나 접촉성금속장신구 등은 디자인산업이라고 할 만큼 제품의 디자인이 중요한데, 새로운 소재를 사용할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던 소재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거나 공급자적합성 확인이 끝난 기성 재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어 제품간 디자인 차별성이 줄어들 수 있음
- 소재개발과 디자인 개발 위축은 안경테나 접촉성금속장신구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나타나게 될 것임

3) 유통·판매 부문

○ 전생안법 인식 부족에 따른 소매점의 위법과 피해

- 전생안법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중계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제조업체가 공급자 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만 생산·공급하면 유통·판매 부문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제품이 생산되는 것이 현실
- 대형유통점은 자체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제품구입 과정을 관리할 수 있겠으나 소규모 유통업체나 소매점은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생산단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한 판매자는 관행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도 이어질 것임

○ 전자상거래중개업체의 시스템 구축 영향

- 전자상거래중개업체(쇼핑몰 운영)는 전생안법에 따라 자사의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지만 비용부담은 크지 않는 수준

- 구매대행업체는 전생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구매대행할 때마다 불법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게시할 근거나 방법도 없기 때문에 생존권 차원에서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

☐ [표 4-12] 전생안법 시행에 따른 영향 종합

(영향의 정도: ◎:많음, ○:약함, △:거의없음)

품목		가구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안경테	접촉성 금속장신구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비용		○	◎	○	△	○
공급측면	소규모 원자재업체의 위축	◎	○	◎	○	○
	원자재 가격 상승 유발	△	△	○	◎	◎
제조측면	제조공정(법) 변화	○	△	△	◎	◎
	친환경 자재 사용 확대	◎	△	○	△	△
	제조원가의 상승	◎	○	○	◎	○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 위축	○	◎	◎	◎	◎
	디자인·소재개발 위축	○	◎	○	◎	◎
유통측면	판매업체의 위법과 피해	△	◎	◎	△	◎

[별첨]

1. 심층면접조사 내용
2. 심층면접조사 지침서

1) 가구

경력	사업장	주생산품	판매경로	종사자수
6	경기도 포천	옷장, 책상	인터넷판매	7
심층면접 주요 내용				
<p>○ (전생안법 인지) 우리는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니까 잘 알죠.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KC인증서류를 입력하라고 해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그거 안하면 못 판다고 해요. 날벼락 같은 소리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KC인증서번호를 넣으라고 하는데 시험을 받아도 가구는 인증번호가 없어요. 안전인증제품은 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공급자적합성은 번호가 없다고 했더니 좌우간 번호를 넣어야 한다고 해서 자재주문번호 이런 것을 대신 넣어서 시스템 상으로는 제품이 등록되게 했지요. 그러니까 인터넷업체도 법을 잘 모르고 KC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것이지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땐 그렇게 했는데 혼란이 컸습니다.</p> <p>○ (전생안법 영향) 모델별로 인증을 받으면 영세업자는 다 굶어 죽어요. 신제품 개발도 무서워서 못해요. 옛날에는 솔직히 자재 좋은 것 쓰지 않았죠. 소파 같은 것 만들 때 안보이니까 안에는 크게 신경 안 써요. 지금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 물건 팔아보세요. 그 사람들 현미경으로 따져요. 사업 안하려면 모를까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한 개도 못 팔아요. 자재를 좋은 것 써야 해요. 친환경자재 안 쓰면 안 되니까. 폼알데하이드요? 그거 솔직히 검사받을 때 솔에다 넣고 찌서 가져가면 안나와요. 제품검사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재 만들 때부터 등급을 붙여서 나오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뭘 검사를 또 받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품 만들 때마다 검사하라면 말이 되요? 한두 가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재로 검사받으라고 한다면 이미 등급에서 다 기준 정해진 것을 쓰니 자재구입서류로 대신하면 되요. 요즘엔 도장도 맘대로 못해요. 하도 단속이 심해서 난리 납니다. 또 쓰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써요. 접착제도 그렇고 친환경 재료 써서 팔아야 반품 안되죠. 냄새나 보세요. 받은 날 바로 반품당해요. 제발 탄 소리 좀 말라고 하세요. 영세업자 잡을 생각만 하지 말고, 소비자 안전 생각한다면 진짜 가능한 방법을 찾으라고 해야 합니다</p>				

경력	사업장	주생산품	판매경로	종사자수
9	경기도 포천	책상	도·소매, 납품	8
심층면접 주요 내용				
<p>○ (시험 비용) KC검사를 받는데 원자재 검사비용은 1회당 20만 원 정도 합니다. 완제품 검사비용은 1회당 50~80만원 주고 해 봤어요. 그런데 제품모델에 따라서 검사하라고 하면 중소기업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폼알데하이드가 나오는 것은 목재를 만들 때 나오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제작과정에서 접착제를 쓰거나 도장을 할 때도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가구에 사용되는 MDF나 PB는 대기업에서 만듭니다. 시설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할 수도 없고 경쟁력도 없습니다. 목재제품품질인증이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폼알데하이드 기준이 KC와 목재제품품질기준과 조금 다릅니다. 이것만 같이하면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KC인증시험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도장과정이나 사용하는 접착제가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자인별로 색상별로 사이즈별로 다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p> <p>○ (전생안법 개정) 전기제품 KC인증과 생활용품 KC인증을 다릅니다. 전기제품의 경우 중요부위, 예를 들면 파워 부분만 KC인증을 받으면 같은 파워를 여러 디자인에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비슷한 패턴을 파생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가구도 기본모델 파생모델을 두고 인증을 받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도 납품을 합니다만 대기업은 우리보고 이런저런 자재를 써서 만들어 납품하라고 시방서가 내려옵니다. 대기업은 수량이 많고 꾸준히 팔리니까 영향이 덜하겠지만 우리 회사는 계속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모델이 없으면 안 팔리니까요. 요즘엔 일감이 없어서 오후 4시면 문 닫을 때가 허다합니다. 식탁, 의자 이런 것은 수입 가구에 전부 밀려나서 이제 할 사람도 없습니다. 대기업 자재나 우리가 사용하는 자재나 다 같은데 우리 같은 소기업이 검사비는 더 들어갑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p>				

2) 가정용섬유제품

경력	사업장	주생산품	판매경로	종사자수
18	서울 동대문	면티	도매	1
심층면접 주요 내용				
<p>○ (전생안법 인식) 요즘 말이 많아서 관심은 있는데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른다. 물건 사가는 사람 중에는 인터넷에 파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이 KC인증을 찾으니까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여저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몇 제품은 검사도 하고, KC마크도 붙여서 판매도 했다. 그런데 여기 동대문 제품은 제품 라벨도 없는 것이 많다. 라벨 붙이는 것도 돈이다. T셔츠 한 장 팔아서 얼마 남을 것 같냐! 원단업자가 좋은 원단을 만들면 문제는 간단하다. 우리는 T셔츠 만들 때 원단에 미싱 작업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유해물질이 섞일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보고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p> <p>○ (전생안법 영향) 동대문은 오늘 기획해서 내일이라도 물건을 풀 수도 있다. 유행에 민감해야 살아남는다. 다른 집에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 어떤 것이 잘 나가는지 보고, 힌트를 얻어 따라 가야 한다. 시험비용이 많이 드니까 시험비용을 대 준다 보조해 준다 그런 말이 오가는 것도 들었는데 본질이 아니다. 비용문제가 아니라 동대문의 근본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검사받는데 1주일이 걸린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획해서 물건 만들 때는 1주일이 별 것 아닐지 모른다. 그런데 시험을 받아야 한다면 원단집에서 재고가 있는 것을 찾아서 즉석에서 물건주문을 넣을 때는 다르다.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결정이 가능하지만 시험을 받아야 한다면 불가능하다. 동대문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없어진다. 세계에서 동대문 같은 시스템이 있는 곳은 없다. 강점을 살려가야지 이게 다 망가지게 되는데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구입하는 원단이 안전하면 된다. 서울시가 KC은행을 만들었지만 잘 안돌아 간다. 왜냐? 원단이 자주 바뀌니까 두 번 쓸 일이 없어 이용이 안되는 것이다. 원단업체가 안전확인을 해야 한다고 못 박으면 쉽게 일이 끝난다. 옷집은 4만개고 원단업체는 4천개다. 어디서 하는 것이 쉽고 효과적이겠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p>				

경력	사업장	주생산품	판매경로	종사자수
13	서울 동대문	니트/스웨터	도매	2
심층면접 주요 내용				
<p>○ (시험 비용) 전생안법을 전혀 모르니까 시험비용이 얼마인지도 추정하기 어렵다. 시험비용이 한 번에 대략 10만원이라는데 우리는 원단이 보통 한가지로 된 옷이니까 10만원으로 가정하면 될 듯하다. 생지에 염색해서 옷을 만든다. 현재 판매중인 제품이 약 20여 가지가 된다. 성수기 때는 월 4~5가지 신상품을 만들고 있다. 기본 색상은 보통 밝은 것 2가지 어두운 것 2가지 흰색 1가지해서 5가지가 기본이다. 이걸 만들 때마다 검사받아야 한다고 하면 신제품 5개, 5가지 색상이니 250만원이 들지 않겠나 싶다.</p> <p>○ (사업 영향) 시험비용이 한 달에 250이면 한 사람 인건비다. 나하고 집사람하고 두 사람이 일하는데, 인건비 건지기 바쁘다. 시험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처음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장사가 덜되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면 신제품 만들기 힘들 것 같다.</p> <p>○ (판매 영향) 비용이 들면 그만큼 가격을 올리면 간단히 해결된다.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쉽지 않다. 1만원 팔아서 6~7백원 남기는 장사다. 왜 마진을 못 남기느냐? 여기 동대문에 수천 수 만개 옷집이 있다. 중국에서 왜 한국으로 옷 사러 오겠나. 싸니까 좋으니까 온다. 그런데 가격 올리면 어떻게 될까? 비싸고 좋은 옷은 사방에 널렸다. 도매장사에서 1~2백 원은 큰돈이다. 시중에서 1백 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100장 만드는데 검사비가 10만원이다. 장당 1천원이 검사비다. 도매에서 1천원이면 소매에서는 5천원이 올라간다고 봐야 한다. 인터넷에서 팔리는 옷가격이 얼마 하는지 잘 알지 않는가? 2~3만원이 수두룩하다. 5천원이면 20~25%를 올리는 것이다. 가능하겠는가? 이러니 시험비용을 가격에 포함시켜 팔수도 없고, 가격에 포함해서 올리면 동대문 물건을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고 보면 된다.</p>				

3) 가죽제품

경력	사업장	주생산물	판매경로	종사자수
5	서울 성동구	구두	소매(수제화)	3
심층면접 주요 내용				
<p>○ (전생안법 인식) 전생안법은 잘 모른다. 오늘 처음 듣는 법이다.</p> <p>○ (제품 원재료) 가죽은 동네 피혁점에서 필요할 때마다 몇 장씩 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장도 산다.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시로 사서 쓴다. 주문받은 제품에 맞는 가죽을 써야 하니까 주문에 따라 그 때 그 때 구입한다. 동네에 수입가죽이 더 많다. 국산가죽은 색상이나 품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도 꾸준하게 쓰는 원단은 6~7가지가 된다. 가늠하기 어렵지만 연간으로 치면 한 20여 가지는 족히 될 듯하다.</p> <p>○ (제품 검사) 제품검사를 받아본 일이 없지만, 보통 2가지 이상의 가죽을 쓴다. 겹가죽, 안가죽, 밑창이 다르다. 이야기하는 기준대로라면 제품당 3가지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p> <p>○ (제품 제조) 가방은 자르고 붙이고 바느질하면 되지만 구두는 다르다 마무리를 하는데 약칠을 하게 된다. 우리말로 사상이라고 하는데, 흠집도 감추고 광도 내고 살을 올리는 작업을 말한다. 사실 여기서 여러 가지 약품이 사용된다. 일부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쓰기도 하지만 아직은 대중적이지는 않다. 그런데 이런 작업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른다. 법에서 검사하라고 하는 항목들은 대부분 가죽을 만들 때 생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p> <p>○ (제품 시험) 수제구두를 만드는데 검사받으라고 하면 수제구두하지 말라는 말이다. 한 켤레 만들어서 검사받는 것은 가격 면에서 불가능하다. 검사비가 수십만 원인데 신발가격보다 비싸다. 원재료를 검사하면 수입가죽을 쓰니까 수입할 때 검사하면 좋겠다.</p> <p>○ (사업 영향) 법이 시행되면 수제화는 만들기 어려워질 것 같다.</p>				

경력	사업장	주생산품	판매경로	종사자수
21	서울 답십리	구두	제조	3
심층면접 주요 내용				
<p>○ (전생안법 인식) 잘 알고 있다. 직접 KC인증시험을 받아 판매하는 제품은 아직 없다. 대부분 원부자재 구매처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서 쓸 수 있다. 단, 자료는 지금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KC인증을 받지 않는 것은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서이다. 구두에는 여러 가지 약품이 사용되니까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다 하더라도 인증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제품별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p> <p>○ (제품 제조) 95% 정도는 구입한 가죽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5%는 화학처리 공정을 거친다. 가죽은 보통 한달에 10여 가지를 사용하고, 연간으로 따지면 20~30가지가 될 듯하다</p> <p>○ (시험 비용) 시험비용은 가죽 원단 하나라면 20만 원쯤 할 것 같다. 그런데 구두는 겹감, 안감, 밑창이 다르고 거기에 천도 포함되니까 전부 따지면 60~70만원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 모델별로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원단에서 문제가 있으면 모델과 상관없이 문제가 있고, 원단에서 문제가 없으면 모델이 달라진다고 문제되지는 않는다.</p> <p>○ (사업영향) 청년들이 공예를 시작하는데, 법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구두를 배우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대기업 아니면 맞춤형구두나 살롱화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법이 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한 두 사람이 하는 공방형 공장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나처럼 나이든 사람은 마땅히 대체할 수 없으니 하고 있지만, 검사비용도 검사비용이고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그 손실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원단이 문제 있는지 없는지 조금씩 사다 쓰는 사람이 따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 국산가죽도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수입가죽은 검사서류를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다. 국내업체는 이제 영세한 곳만 남았는데, 안전기준에 따라 만들려고 하면 타산을 못 맞출지도 모른다. 가죽산업도 구두산업도 모두 힘들게 될 것이다.</p>				

4) 안경테

경력	사업장	주생산물	판매경로	종사자수
22	대구	안경테	제조·도매, 납품	5
심층면접 주요 내용				
<p>○ (전생안법 인식) 전생안법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KC마크를 붙여서 판매하는 제품은 10%정도다. 최근 1년간 시험받은 것도 없다. 전에 받은 인증서류는 찾을 수 없다. 인증을 받지 않는 것은 일단 비용이 들기 때문이고, 또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KC마크가 없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KC마크를 부착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제품은 시험받지 않았다. 사실 안경테는 전생안법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다.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품질관리가 잘 되고 있고, 내수보다는 수출이 많은 상황에서 수출제품은 모두 납검사 니켈검사를 통과해야 수출이 된다. 품질검사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p> <p>○ (제품 생산) 우리는 국내에서 전부 생산한다. 어떤 업체는 중국에서 프레임을 만들어 오고 국내에서 마감만 하는 곳도 있는데, 아직은 중국의 도금품질이 우리를 못 따라오기 때문에 마감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다. 안경은 수십 가지 공정을 거치고, <u>전에는 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전부 분업해서 연쇄적으로 생산하고 있다.</u> 그래서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30~40개씩 5~6가지 모델을 만드는데, 사실 주문은 모델당 10개도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p> <p>○ (시험비용) 옷이나 가구는 원단이나 원재료가 있으니 그걸로 심사를 받으면 된다. 우리는 도금이 잘 됐는지를 검사하는 것과 같다. 니켈용출 검사는 도금 때문에 하는 것이다. 모델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서로 다른 모양의 제품을 동시에 도금하고 생산한다. 안경다리가 넓은 것이든 좁은 것이든 상관없이 주문량에 맞춰 생산한다. 그러니까 모델별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불필요한 중복 검사가 되는 것이다. 비용이 다른 업종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수백 가지를 검사하면 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 원칙대로 하면 도금이 달라질 때마다 검사해야 한다면 연간 몇 번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p>				

경력	사업장	주생산품	판매경로	종사자수
5	대구	안경테	제조·도매	1
심층면접 주요 내용				
<p>○ (전생안법 인식) 전생안법을 잘 알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 지금도 KC마크 부착 제품이 90%이상이지만 법이 잘못되었다. KC마크 부착을 위해 시험을 받은 것은 아니다. 원부자재업체에서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쓰고 있지만, 그것이 꼭 우리 제품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인지는 자신할 수 없다. KC마크를 붙인 근거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면 없다. 보관하지 않고 있다. 전생안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험성적서 등의 근거를 보관하라는 것이다. KC마크를 붙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만 붙인 제품이 하자가 있을 때는 리콜조치도 문제다. 그 많은 제품을 일일이 검사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리콜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시험성적서를 보관해야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자료가 없으면 허위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KC마크를 붙이지 못한다.</p> <p>○ (제품생산) 수입재료는 10%정도 쓴다. 가격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시험을 받아야 한다면 수입제품을 쓰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한 달에 10여 가지 모델을 판매하는데 많아야 40~50개씩 만들어서 판다.</p> <p>○ (시험비용) 월 3~5개 신제품을 만든다. 옵션을 포함하면 15가지도 넘는다. 모델별로 받으라고 하면 연간 50가지가 넘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제품이라도 생산하려면 계속 도금을 해야 하니까 제품이 안전한지를 확실하게 검사하려면 매월 판매하는 10여 가지 제품에다 신제품 4~5개를 더하면 15번 이상을 매월 검사받아야 한다. 안경테 하나에 1만원도 안 된다. 시험비용만 해도 원가의 10%이상이 될 듯하다.</p> <p>○ (사업 영향) 안경은 일제시대에 건너온 기술이고, 니켈도금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니켈도금을 안 하면 되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이 니켈도금이니까 KC가 강화되면 당연히 안경도금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모두 영세하고 나이 많은 분들이라 쉽지 않다.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p>				

5) 접촉성금속장신구

경력	사업장	주생산품	판매경로	종사자수
18	남대문	헤어밴드	제조·도매	1
심층면접 주요 내용				
<p>○ (전생안법 인식) 전생안법은 잘 모른다. 하지만 몇 KC마크는 안다. 몇 년 전에 산업부 장관이 시장에 왔을 때 KC마크 문제로 힘들다고 해서 품목으로 인증하면 된다고 해서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여기 모두 15만원씩 내고 전부 인증 받았다. 성적서도 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다 만들어진 재료를 사다가 붙이기만 한다. 그런데 왜 우리가 검사를 받아야 하나. 억울하다.</p> <p>○ (제품 조제) 재료상에서 밴드사오고 핀 사와서 붙인다. 핀도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 사용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모델별로 시험을 받으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장관이 왔을 때도 그래서 한 개 품목을 받으면 된다고 해서 헤어밴드로 받았다. 그리고 헤어밴드도 다 형질으로 감싸진 것이다.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은가.</p> <p>○ (시험 비용) 얼마인지 모르지만 15만원 주고 했다. 여기 보이는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 보라. 500개도 넘는다. 이걸 모델별로 건건이 받으라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 하루에 개수도 못할 때도 있다. 가게 처분하고 싶어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냥 이려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시험비용이 감당 되겠는가. 그냥 문 닫아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하면 이거 만들기도 힘들어지는데 이참에 문 닫아야겠다.</p> <p>○ (사업 영향) 중국서 손님들이 많이 왔다. 물건 사가서 베낀다. 그리고 싸게 우리나라에 판다. 그 사람들 우리 디자인 샘플을 사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시험 받으라고 하면 신제품 못 만든다. 일단 만들어 보고 또 만들고 해서 한 가지 성공하면 보상받는 것인데, 그런 것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제품마다 시험받으려면 여기 디자인 다 죽을 것이다.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장관이 왔을 때 이야기 한 것이 왜 지켜지지 않는가. 액세서리를 일본에서 우리가 뺏어 왔는데 중국에 맨입으로 넘기게 생겼다</p>				

경력	사업장	주생산품	판매경로	종사자수
10	남대문	브러치 등	제조·도매	2
심층면접 주요 내용				
<p>○ (전생안법 인식) 우리 상가는 상인회에서 앞장서서 인증을 받았다. 몇 년 전에 15만원씩 들여서.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상인들만 힘들게 됐다. 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하니 우리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장사할 수 있게 해 달라.</p> <p>○ (제품 생산) 전에는 디자이너 두고 했다. 그런데 장사가 어려우니까 내가 다 한다. 우리집 모델북을 봐라 1,600가지도 넘는다. 계속 신제품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많이 못한다. 한 모델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150만원이 든다. 그런데 팔린다는 보장이 없으니 할 수가 없다. 거기다가 시험받으라고 하면 부담만 생겨서 못한다.</p> <p>○ (사업 영향) 요즘에는 무니켈 재료도 많이 나온다. 정부에서 도금 공장을 지원해서 무니켈로 만들도록 해주면 액세서리는 자체를 검사할 필요가 없어진다. 도금공장이 영세하니까 니켈도금 하다가 무니켈할 수가 없다. 솔을 비우고 전부 청소하고 새로 해야 하니 단가가 비싸다. 처음부터 무니켈로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만들던 것을 멈추고 해야 하니 단가가 올라간다. 정부에서 액세서리 업계를 도울 것이라면 도금공장을 지원해서 무니켈로만 하게하면 좋겠다. 니켈이나 무니켈이나 품질차이는 크지 않다. 우리나라 액세서리가 중국보다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것이 도금이다. 우리 것은 오래 되도 변하지 않지만 중국 것을 변색돼서 못쓴다. 무니켈로 만들면 우리도 좋다. 많은 제품을 검사 하라고 하기 전에 도금을 지원하면 안전도 담보되고 산업도 발전한다.</p> <p>○ (시험 비용) 시험단가는 비싸지 않고 재료 종류도 많지 않다. 그런데 기성재료로는 디자인 차별이 없으니 캐스팅을 해야 한다. 한 달에 캐스팅 10번만 해도 50만원은 족히 넘는다. 거기다 모델 색상 따지면 수백은 든다고 본다. 현실을 모르고 만든 법이다.</p>				

6) 구매대행업체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 (구매대행업 정의) 구매대행업은 서비스업이다. 무역업이 아니다. 구매대행물품은 구매자의 소유이고 모든 통관관련 책임과 세금도 구매자 몫이다. 구매대행은 해외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대지(배송대행지)를 제공하는 역할과 구매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매대행업자 중에는 미리 재고를 확보해서 구매대행인 것처럼 하는 업체도 있으나 이것은 구매대행이 아니다.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수입업자고 판매업자다.
- (전생안법 적용) 구매대행업자에게 구매대행물품의 안전확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구매대행을 모르고 한 일이다. 안전확인을 받으려면 해당 물품이 있어야 하는데,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을 어떻게 안전확인할 수 있겠나. 택배기사보고 안전확인을 하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아마존, 이베이 어디에도 안전확인을 요구하는 곳은 없다.
- (사업 영향) 전생안법이 시행된 순간부터 우리는 범법자다. 안전확인을 하라고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전생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라도 할 생각이다.



전생안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심층조사 지침서

2017.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

조사 개요

2 조사 기간

- 현장실사기간 : 2017. 6. 7 ~ 7. 7(4주)

3 조사 목적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소상공인이 전생안법의 시행으로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
- 전생안법 시행시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영향을 줄이면서도 소비자안전의 확보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취합·수렴
- 조사·분석의 결과는 전생안법이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소비자안전의 문제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데 활용

4 조사 대상 범위

- 조사·표준산업분류상 아래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분 야		표준산업분류업종
가구	4개	C32019 C32021 C32029 C32099
가정용섬유제품	8개	C13221, C13223, C14111, C14112, C14120, C14194, C14130, C14191, C14192, C14199 C14300, C14411, C14419, C14491, C14499, C15129
가죽제품	2개	C14193, C15219
안경테	1개	C27310
접촉성금속장신구	2개	C33120, C33110

- 통신판매업신고를 필한 온라인판매업자, 중계업자 및 구매대행업자



II

조사 진행 요령

1 심층면접원

가. 기본 원칙

- 심층면접원은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서 조사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 사업장 방문 시 조사지침서를 휴대하고 의문 발생 시 확인을 받은 후 조사
- 조사기간 중 완료된 조사표는 당일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내용검토를 받고, 조사책임자의 검토결과에 따라 즉시 보완 및 추가조사를 진행
- 조사 진행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조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고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됨
[통계법 제33조(비밀 보호), 통계법 제39조(벌칙)에 의해 처벌]
- 심층면접원은 명함, 조사표, 조사협조공문, 기타 자료 등을 출발 전에 확인

나. 숙지 사항

- 단정한 복장과 겸손한 태도로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 조사지침을 반드시 숙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응답자에게 신뢰감을 줄 것
- 자신이 직접 판단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사례는 조사표에 구체적으로 메모해두고, 반드시 조사책임자와 상의할 것

2 단계별 대응 요령

가. 사전 준비

- 인터넷,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대상 업종의 전생안법 관련 동향을 숙지할 것
- 개별 업체에 대한 심층면접 전에 반드시 조사대상 업종의 대표단체를 먼저 파악하고 업종의 특성과 전생안법 관련 예상문제를 청취한 후 조사에 임할 것
- 업종별로 조사가 용이한 시간을 파악하여 면접조사 계획을 수립할 것
 - 동대문 일대의 가정용섬유제품 제조업체는 밤 9시 이후에 개점함을 고려
 - 가구업체는 오후 4시쯤에 당일 납품 건으로 매우 바쁘기 때문에 피할 것

나. 컨택 단계

-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협조공문을 제시하고, 조사의 배경, 목적,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
-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전달하고, 사업체의 대표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
- 심층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체의 사업내요을 확인하여 단순임가공업만 하는 경우는 면접을 중단
- 사업체 일반현황이 아니라 원부자재 구매, 매출 등의 파악이 필요하므로 업체의 대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는 경우 다른 업체를 조사
- 조사 소요시간(최대 1시간 이내)을 사전 안내하여 업무의 불편의 최소화

다. 현장 조사

- 심층면접조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에 주의
- 조사업무 수행 시에는 가급적 낮에 방문하고 야간조사가 불가피 할 때에는 조사대상을 미리 알림
- 차량을 이용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안전운전에 주의
(졸음운전, 빗길 운전 등 사고 주의)
- 안전한 장소에서 조사 : 공장이나 작업장 등에는 가동 중인 기계, 쌓아올린 자재,

위험한 약품류 등이 있으므로 피함

-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듣되,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확인

3 조사표 작성기준

가. 가구

응답자	응답자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직원	연령	세
	종사자수(대표포함)	명		업무경력	년
사업내용 (모두체크)	<input type="checkbox"/> 도매	<input type="checkbox"/> 소매	<input type="checkbox"/> 인터넷판매	<input type="checkbox"/> 납품	<input type="checkbox"/> 수입
				주소지 (시/군)	

- 조사안내가 끝나면 조사응답자가 대표자(임원)인지를 확인후 진행할 것
- 사업내용이 납품만 있거나 수입만 있는 경우는 조사를 중단할 것

①KC인증시험을 받은 품목	<input type="checkbox"/> 침대	<input type="checkbox"/> 소파	<input type="checkbox"/> 옷장/이불장	
	<input type="checkbox"/> 의자	<input type="checkbox"/> 책상 및 테이블	<input type="checkbox"/> 싱크대	
	<input type="checkbox"/> 캐비닛류	<input type="checkbox"/> 로커	<input type="checkbox"/> 기타	
②KC인증마크 붙여 판매하는 비중				%
③최근 1년간 KC인증 시험 의뢰 횟수				건
④KC인증 시험의뢰 건당 비용(평균)				원

- KC인증시험을 받은 품목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시험을 받은 것이 있으면 √표
- KC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하는 비중은 시험받은 품목의 매출비중으로 표시
- 최근 1년간 KC인증 시험의뢰 횟수나 건당 비용 등은 증빙이 있는지를 확인

주로 사용하는 목재류	재료의 종류	품질 등급(모두 체크)
<input type="checkbox"/> 천연목	가지	<input type="checkbox"/> SEO <input type="checkbox"/> E0 <input type="checkbox"/> E1 <input type="checkbox"/> E2
<input type="checkbox"/> 파티클보드	가지	<input type="checkbox"/> SEO <input type="checkbox"/> E0 <input type="checkbox"/> E1 <input type="checkbox"/> E2
<input type="checkbox"/> MDF	가지	<input type="checkbox"/> SEO <input type="checkbox"/> E0 <input type="checkbox"/> E1 <input type="checkbox"/> E2
<input type="checkbox"/> LPM(L)	가지	<input type="checkbox"/> SEO <input type="checkbox"/> E0 <input type="checkbox"/> E1 <input type="checkbox"/> E2
<input type="checkbox"/> HPM(L)	가지	<input type="checkbox"/> SEO <input type="checkbox"/> E0 <input type="checkbox"/> E1 <input type="checkbox"/> E2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지	<input type="checkbox"/> SEO <input type="checkbox"/> E0 <input type="checkbox"/> E1 <input type="checkbox"/> E2

- 재료의 종류는 규격은 불문하고, 재질 또는 구입처가 다른 것은 한 가지로 볼 것

- 추가 질문을 통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재의 품질등급을 확인할 것

화학물질 사용공정	<input type="checkbox"/> 도색 / 도장 <input type="checkbox"/> 오버레이 <input type="checkbox"/> 라미네이팅 <input type="checkbox"/> 접착제 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도색/도장 공정이 있는 경우 직영인지 혹은 외주인지를 추가로 확인할 것
- 접착제 사용은 오버레이나 라미네이팅 외에 옆면마감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

현재 판매하는 제품의 모델 수	개
------------------	---

- 판매하는 제품의 모델이라 함은 제조업체에서 고유한 제품번호를 붙여 관리하는 품목단위를 의미하며, 규격의 변화만 있는 것은 파생모델로 하고 제외
- 예를 들어 3단서랍장, 4단서랍장은 1개의 모델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안내

연간 신모델 개발 수	
신모델의 초도물량 수 (옵션포함)	

- 연간 신모델 개발수는 KC검사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갖춘 제품의 개발수를 의미
- 기존과 다른 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서 모델번호를 새롭게 부여하는 경우
- 신모델의 초도물량은 옵션(단순 규격변경)을 포함한 평균 생산수량

나. 가정용섬유제품

응답자	응답자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직원	연령	세 년
	종사자수(대표포함)	명		업무경력	
사업내용 (모두체크)	<input type="checkbox"/> 도매	<input type="checkbox"/> 소매	<input type="checkbox"/> 인터넷판매	<input type="checkbox"/> 납품	주소지 (시/군)

- 조사안내가 끝나면 조사응답자가 대표자(임원)인지를 확인후 진행할 것
- 사업내용이 납품만 있거나 수입만 있는 경우는 조사를 중단할 것

주요 생산(판매) 제품 - 가장 대표적인 품목에 ☑ 표시			
외의/중의	<input type="checkbox"/> 면(티셔츠, 후드티 등)	<input type="checkbox"/> 정장(자켓, 블라우스)	<input type="checkbox"/> 남방
	<input type="checkbox"/> 치마(스커트)	<input type="checkbox"/> 바지(청바지, 면바지)	<input type="checkbox"/> 니트/스웨터
내의	<input type="checkbox"/> 속옷	<input type="checkbox"/> 잠옷	
기타	<input type="checkbox"/> 모자	<input type="checkbox"/> 양말류(양말, 장갑, 스타킹 등)	

- 생산품목이 다양한 경우 매출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 표시

월간 신규 사입 원단 품목 수	가지
------------------	----

- 월간 신규사입 원단 품목수는 아래의 신규원단 기준을 명확히 안내한 후 조사

- ① 처음 사용하는 원단
- ② 같은 원단이라도 사입하는 거래처가 달라지면 신규원단으로 간주
- ③ 동일 거래처에서 같은 원단을 구입하더라도 로트가 달라지면 신규원단으로 간주
- ④ 수(예: 30수, 40수)가 달라지면 신규원단으로 간주

화학처리 공정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프린팅	<input type="checkbox"/> 염색	<input type="checkbox"/> 워싱(탈색)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	-----------------------------

- 화학 위한 중요한 질문이므로 정확히 안내하고 추가질문을 통해 간헐적으로라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파악

신상품을 만들 때 기존원단 사용비율	%
---------------------	---

- 재고보유 원단만을 사용하여 신제품을 만드는 경우 또는 일부 재고보유 원단으로 신제품을 만드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여 평균비율을 파악

연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델의 수	연간 () 개
-----------------------	----------

- 모델은 디자인과 기능이 완전히 달라 새로운 품번으로 관리하는 제품단위를 말하며 동일원단으로 디자인만 약간 변형한 경우는 모델에서 제외할 것

다. 가족제품(구두)

응답자	응답자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직원	연령	세
	종사자수(대표포함)	명		업무경력	년
사업내용 (모두체크)	<input type="checkbox"/> 도매	<input type="checkbox"/> 소매	<input type="checkbox"/> 인터넷판매	<input type="checkbox"/> 납품	주소지 (시/군)

- 조사안내가 끝나면 조사응답자가 대표자(임원)인지를 확인후 진행할 것
- 사업내용이 납품만 있는 경우는 조사 중단

주요 생산(판매) 제품			
신발류	<input type="checkbox"/> 남성구두	<input type="checkbox"/> 여성구두	<input type="checkbox"/> 캐주얼구두

- 제조 품목 중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제품 한 가지만 표시

①KC인증시험을 받은 품목	<input type="checkbox"/> 남성구두	<input type="checkbox"/> 여성구두	<input type="checkbox"/> 캐주얼구두
②KC인증마크 붙여 판매하는 비중			%
③최근 1년간 KC인증 받은 건수			건
④KC인증에 사용한 시험 비용			원

- KC인증을 받은 품목은 단 1회라도 받은 제품이 있으면 표시
- 전체 매출액 중 KC인증마크를 붙여서 판매하는 제품의 비중을 표시
- 최근 1년간 KC인증 건수나 시험비용은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 전체를 표시

주로 사용하는 피혁원단의 종류	가지
------------------	----

- 피혁의 종류는 소, 돼지, 양 등의 축종은 물론 가죽의 가공방법이 다른 경우를 말하며, 원피와 가공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생산자가 다르면 다른 종류로 간주

염료(물감)을 사용하는 화학적 처리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비중	%
-----------------------------------	---

- 제품의 마감공정을 포함하여 염료를 추가하는 공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품비중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여 답을 얻을 것

현재 판매 중인 모델 수	가지
---------------	----

- 동일 원단업체, 동일소재, 동일공법의 원단으로 만든 제품으로 디자인만 다른 경우는 동일 제품으로 인정

기본 모델당 옵션제품의 수	가지
----------------	----

- 안경테의 소재나 디자인이 같고 색상만 다른 경우는 한 가지로 간주

월간 신모델 개발 수	가지
-------------	----

- 신모델은 소재나 디자인이 다른 제품으로 도금 로트가 완전히 다른 제품을 의미

연간 신규로 공급자적합성확을 받아야 하는 모델의 수	개
------------------------------	---

- 소재의 변경이나 디자인 변경, 기존제품의 추가생산 등으로 도금공정의 로트가 변경되어 생산되는 모델의 수를 파악

무니켈 도금으로 제조되는 비율	%
------------------	---

- 금속재료의 도금공정이 니켈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되는 제품의 비율을 조사

마. 접촉성금속장신구

응답자	응답자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직원	연령	세
	종사자수(대표포함)	명	업무경력	년
사업내용 (모두체크)	<input type="checkbox"/> 도매 <input type="checkbox"/> 소매 <input type="checkbox"/> 인터넷판매 <input type="checkbox"/> 납품 <input type="checkbox"/> 수출		주소지 (시/군)	

- 조사안내가 끝나면 조사응답자가 대표자(임원)인지를 확인후 진행할 것
- 사업내용이 납품만 하거나 수출만 하는 경우는 조사 중단

①KC인증시험을 받은 품목	<input type="checkbox"/> 목걸이 <input type="checkbox"/> 귀걸이 <input type="checkbox"/> 반지/팔찌 <input type="checkbox"/> 헤어밴드 <input type="checkbox"/> 브러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②KC인증마크 붙여 판매하는 비중	%
③KC인증 받은 품목의 수	건
④KC인증 건당 비용	원

- KC인증을 받은 품목은 시험성적성에 표시된 품목명을 확인하여 체크할 것
- KC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하는 비중은 인증제품의 전체 매출액 비중으로 표시

- KC인증 받은 품목 수는 인증받은 제품의 모델 수를 기준으로 작성
- KC인증 건당 비용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받았을 경우 제품당 평균 비용을 추정하여 조사

1년 평균 캐스팅 발주건 수	건
-----------------	---

- 금속성접촉장신구의 니켈용출의 원인이 되는 도금을 얼마나 자주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모델이나 크기에 무관하게 캐스팅 발주 횟수를 파악할 것

국내산 금속재료 비율	%	수입산 금속재료 비율	%
-------------	---	-------------	---

- 수입산금속재료의 비율과 함께 수입국을 확인하고, 무니켈 여부도 파악할 것

품목	판매중인 모델 수	모델 별 (파생)제품 수*	연간 신제품 모델수	초도물량 (제품 기준)
목걸이				
귀걸이				
반지/팔찌/발찌				
헤어류:핀,밴드,비녀 등				
브러치				
기타				

- 모델수는 비금속성 마감재료의 색상이나 디자인과 무관하게 금속성소재의 기능이 나 디자인이 다른 제품을 의미
- 파생제품은 모델별로 마감재료의 색상이 다른 제품을 의미
- 연간신모델은 금속성소재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캐스팅 로트가 달라지면 신제품으로 간주

바. 온라인유통업체(구매대행업 포함)

사업 내용 (모두 표시)	<input type="checkbox"/> 온라인판매(오픈몰 또는 자체쇼핑몰 판매)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판매중계(판매사이트 운영) <input type="checkbox"/> 병행수입 <input type="checkbox"/> 구매대행 <input type="checkbox"/> 일반 수입
취급품목수	취급하는 상품 모델은 몇 가지나 됩니까? () 가지

- 온라인판매는 자체 쇼핑몰 또는 오픈몰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온라인 판매 중계는 직접 제품을 판매하지는 않으나 제품판매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체를 의미하며, 구매대행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구입대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 취급상품 모델은 전생안법 조사대상 5개 제품중에서 제품의 상세페이지가 별도로 작성된 제품의 수를 의미

구매대행 가능한 상품의 수	가정용 섬유제품(의류 등)	개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개
	가죽제품(신발, 핸드백 등)	개
	가구류	개
	접촉성금속장신구(액세서리류)	개
	기타	

- 구매대행가능한 상품의 수는 상세페이지 한 건을 1개로 간주하여 조사

월간 구매대행 건 수	건
-------------	---

- 구매대행건수는 국내로 배송되는 택배 1건을 기준으로 조사

월간 신상품 등록건수	개
-------------	---

- 신상품 등록건은 구매대행 또는 판매사이트에 등록하는 상세페이지 기준임



III 조사표

1 가구제품

ID

(목재,가죽)가구제조 소상공인의 전안법 영향 심층조사

가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는 자체시험 또는 제3의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을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애로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 KC마크 표시)

조사내용은「통계법」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특히 매출액 등은 통계목적 이외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답자	응답자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직원	연령	세
	종사자수(대표포함)	명	업무경력	년
사업내용 (모두체크)	<input type="checkbox"/> 도매 <input type="checkbox"/> 소매 <input type="checkbox"/> 인터넷판매 <input type="checkbox"/> 납품 <input type="checkbox"/> 수입		주소지 (시/군)	

주요 생산(판매) 제품				
가정	<input type="checkbox"/> 침대	<input type="checkbox"/> 소파	<input type="checkbox"/> 옷장/이불장	
	<input type="checkbox"/> 의자	<input type="checkbox"/> 책상 및 테이블		<input type="checkbox"/> 썩크대
기타	<input type="checkbox"/> 사무용 캐비닛	<input type="checkbox"/> 파일 캐비닛	<input type="checkbox"/> 로커	<input type="checkbox"/> 기타

【전안법 이해】

문1-1. 귀사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가구류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임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르고 있다
- ② 법이 있는 것을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 ③ 법의 세부내용과 규정을 알고 있다
- ④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문1-2. 귀사가 KC인증확보와 관련된 아래의 물음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KC인증시험을 받은 품목	<input type="checkbox"/> 침대 <input type="checkbox"/> 소파 <input type="checkbox"/> 옷장/이불장 <input type="checkbox"/> 의자 <input type="checkbox"/> 책상 및 테이블 <input type="checkbox"/> 썩크대 <input type="checkbox"/> 캐비닛류 <input type="checkbox"/> 로커 <input type="checkbox"/> 기타
②KC인증마크 붙여 판매하는 비중	%
③최근 1년간 KC인증 시험 의뢰 횟수	건
④KC인증 시험의뢰 건당 비용(평균)	원

문2-4. 귀사가 현재 판매중인 제품의 모델 수는 몇 가지나 됩니까?

현재 판매하는 제품의 모델 수	개
------------------	---

문2-5. 귀사가 연간 생산하는 신모델은 몇 가지나 됩니까? 또 신모델의 초도생산량은 몇 개나 됩니까?

연간 신모델 개발 수	
신모델의 초도물량 수 (옵션포함)	

문2-6. 귀사는 가구를 어떤 경로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까?

유통(대리점) 판매	%
온라인(인터넷) 판매	%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점 판매	%
납품	%
기타	%
합계	100%

【안전인증 영향 파악】

문4-1. 현행 전안법에 따르면 모델마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귀사에서 받아야 하는 인증대상 제품의 모델 수는 현재기준 몇 개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 인증받아야 하는 제품의 모델수	개
---------------------	---

문4-2. 현행 전안법에서는 제품단위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원자재에서 KC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가 있을 경우 그것을 통해서도 인증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귀사가 목재류 구입처로부터 안전인증서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몇 %나 됩니까?

- ① 10% 미만 ② 10~30% 정도 ③ 30~ 50%정도 ④ 50~70% 정도 ⑤ 70~90% 정도 ⑥ 90% 이상

문6. 귀하는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 의견

문1-3. 귀사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을 때 사용한 성적서는 어떻게 확보하셨습니다?

- ① 자체 시험을 통해서
- ② 원단업체의 관련 자료를 받아서
- ③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서
- ④ 기타

문1-4. 귀사는 지금 공급자적합성확인(KC인증)을 받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 ① 계속 보관해 오고 있다
- ② 일부만 보관 중이다
- ③ 보관하지 않고 있으나 근거를 찾을수는 있다
- ④ 전혀 보관도 안되어 있고 찾기도 어렵다

문1-5. 가정용섬유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인증을 비용이 많이 들어서
- ② 인증관련 방법을 잘 몰라서
- ③ 인증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서
- ④ 사업특성상 현실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어서

문1-6. 가정용섬유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안전인증은 꼭 필요하다
- ② 필요하지만 인증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③ 필요하지만 시험내용을 바꿔야 한다
- ④ 가정용섬유제품의 안전인증은 전혀 불필요하다

[제조 및 유통 관련]

문2-1. 귀사는 신상품 디자인을 결정한 후 원단입고에서 상품도착까지 통상 몇 일이 걸립니까?

소요기간	일
------	---

문2-2. 리오더(재주문)인 경우 주문에서 상품입고까지는 보통 몇 일이면 됩니까?

소요기간	일
------	---

문2-4. 성수기때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사입하는 신규 원단은 몇 가지입니까?

[신규 원단 기준]

- ① 처음 사용하는 원단
- ② 같은 원단이라도 사입하는 거래처가 달라지면 신규원단으로 간주
- ③ 동일 거래처에서 같은 원단을 구입하더라도 로트가 달라지면 신규원단으로 간주
- ④ 수(예: 30수, 40수)가 달라지면 신규원단으로 간주

월간 신규 사입 원단 품목 수	가지
------------------	----

문2-5. 귀사는 원단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종합시장/원단상사를 거치지 않고 공장에 직발주해서 사용하는 원단이 있습니까?

동대문종합시장 / 원단상사	%
종합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발주	%
합계	100%

문2-6. 귀사가 구입한 원단에 화학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화학처리 공정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프린팅	<input type="checkbox"/> 염색	<input type="checkbox"/> 워싱(탈색)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	-----------------------------

문2-7. 귀사가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품목수(디자인 기준)는 몇 가지나 됩니까?

(디자인이 같으면 칼라가 달라도 하나의 품목으로 간주)

현재 판매중인 품목의 수	가지
---------------	----

문2-8. 귀사는 성수기 때를 기준으로 한 달에 보통 몇 가지 신상품(디자인)을 만듭니까?

월평균 신상품 수	가지
-----------	----

문2-9. 신상품의 경우 보통 몇 가지 색상의 제품을 만듭니까?

신상품의 디자인별 색상 수	가지
----------------	----

문2-10. 신상품의 초도물량은 보통 색상별로 몇 벌을 만듭니까?

신상품의 색상별 초도물량수	가지
----------------	----

문2-11. 신상품을 만들 때 기존 원단을 사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신상품을 만들 때 기존원단 사용비율	%
---------------------	---

문2-12. 귀사의 유통경로별 판매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의류 소매업체 대상 도매판매	%
온라인(인터넷)업체에 판매	%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점 판매	%
자체매장을 통한 소매판매	%
기타	%
합계	100%

【전안법 영향 및 기타】

문3-1. 현행 전안법에서는 제품의 모델을 인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귀사에서 받아야 하는 인증대상 제품의 모델수는 연간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연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델의 수	연간 () 개
-----------------------	---------------------

문3-2. 현행 전안법에서는 제품단위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원자재(원단)에서 KC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가 있을 경우 그것을 통해서도 인증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귀사가 원자재 업체로부터 안전인증서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몇 %나 됩니까?

- ① 10% 미만 ② 10~30% 정도 ③ 30~ 50%정도 ④ 50~70% 정도 ⑤ 70~90% 정도 ⑥ 90% 이상

문3-3. 귀사가 업무에 컴퓨터를 활용있는 분야를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 발주/생산 판매/재고 기타

문3-4. 귀하는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 의견

끝

문2-5. 귀사는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모델 수는 몇 개나 됩니까?

* 디자인이 같고 색상만 다른 것은 한가지로 간주

현재 판매 중인 모델 수	가지
---------------	----

문2-6. 귀사는 한 가지의 기본 모델에 몇 가지의 옵션 제품을 만듭니까?

* 옵션제품 : 디자인은 같으나 재질이나 색상 등이 달라진 제품을 의미함

기본 모델당 옵션제품의 수	가지
----------------	----

문2-7. 귀사는 보통 한달에 몇 가지의 신모델을 만드십니까?

* 기본 모델을 기준으로 계산

월간 신모델 개발 수	가지
-------------	----

문2-8. 귀사는 신모델을 출시할 때 초도물량은 보통 옵션별로 몇 개를 생산하십니까?

신모델의 경우 옵션별 초도생산량	개
-------------------	---

문2-9. 귀사의 유통경로별 판매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의류 소매업체 대상 도매판매	%
온라인(인터넷)업체에 판매	%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점 판매	%
수출(중국손님 등)	%
자체매장을 통한 소매판매	%
기타	%
합계	100%

[안전인증 관련]

문3-1. 현행 전안법에서는 제품모델을 인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모델마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귀사에서 받아야 하는 인증대상 제품의 모델 수는 연간 몇 개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연간 인증받아야 하는 제품의 모델수	개
---------------------	---

문3-2. 현행 전안법에서는 제품단위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원자재(가죽)에서 KC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가 있을 경우 그것을 통해서도 인증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귀사가 원자재 업체로부터 안전인증서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몇 %나 됩니까?

- ① 10% 미만 ② 10~30% 정도 ③ 30~ 50%정도 ④ 50~70% 정도 ⑤ 70~90% 정도 ⑥ 90% 이상

문3-3. 귀사가 업무에 컴퓨터를 활용있는 분야를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 발주/생산 판매/재고 기타

문3-4. 귀하는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 의견

끝

문2-4. 귀사는 한 가지의 기본 모델에 몇 가지의 옵션 제품을 만듭니까?

* 옵션제품 : 디자인은 같으나 재질이나 색상 등이 달라진 제품을 의미함

기본 모델당 옵션제품의 수	가지
----------------	----

문2-5. 귀사는 보통 한달에 몇 가지의 신모델을 만드십니까?

* 기본 모델을 기준으로 계산

월간 신모델 개발 수	가지
-------------	----

문2-6. 귀사는 신모델을 출시할 때 초도물량은 보통 옵션별로 몇 개를 생산하십니까

신모델의 경우 옵션별 초도생산량	개
-------------------	---

참고사항	
------	--

문2-7. 귀사의 유통경로별 판매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안경테 도매상에 판매	%
안경점에 판매	%
온라인 판매	%
수출	%
대기업 납품	%
기타	
합계	100%

【원재료 및 제조 관련】

문3-1. 현행 전생안법에서는 모델별로 KC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귀사에서 매년 신규로 받아야 하는 인증 건수는 연간 몇 개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연간 신규로 공급자적합성확을 받아야 하는 모델의 수	개
------------------------------	---

문3-2. 귀사가 원자재 업체로부터 공급자적합성확인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몇 %나 됩니까?

- ① 10% 미만 ② 10~30% 정도 ③ 30~ 50%정도 ④ 50~70% 정도 ⑤ 70~90% 정도 ⑥ 90% 이상

문3-3. 귀사에서 제조하는 안경테 및 선글라스 중에서 무니켈도금으로 제조되는 제품의 비율은 전체 제품 중 대략 몇 퍼센트나 됩니까?

무니켈 도금으로 제조되는 비율	%
------------------	---

【통계처리 관련】

문4-1. 귀사의 2016년도 매출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응답 내용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2016년 매출액	백만원
-----------	-----

문4-2. 귀사는 평소 업무에 컴퓨터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업무분야	업무분야		
	높음	보통	낮음
회계관리 분야			
생산관리 분야			
판매/재고관리분야			
기타			

문5. 귀하는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 의견

끝

문2-4. 주로 사용하는 금속재료는 어디를 통해 구입합니까?

재료 도매상에서 구입	%
제조업체에 발주하여 제작	%
합계	100%

문2-5. 귀사의 품목별 제품판매 및 개발에 대해 아래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품목	판매중인 모델 수	모델 별 (파생)제품 수*	연간 신제품 모델수	초도물량 (제품 기준)
목걸이				
귀걸이				
반지/팔찌/발찌				
헤어류:핀,밴드,비녀 등				
브러치				
기타				

* (파생)제품 : 1개 모델을 기준으로 사이즈, 색상, 디자인이 다른 제품

문2-6. 귀사의 유통경로별 판매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소매업체 대상 도매판매	%
온라인(인터넷)업체에 판매	%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점 판매	%
수출(중국손님 등)	%
자체매장을 통한 소매판매	%
기타	%
합계	100%

문2-7. 접착성금속장신구의 KC인증은 원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있을 경우 그것을 통해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귀사가 원자재 업체로부터 KC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몇 %나 됩니까?

- ① 10% 미만 ② 10~30% 정도 ③ 30~ 50%정도 ④ 50~70% 정도 ⑤ 70~90% 정도 ⑥ 90% 이상

문2-8. 귀사가 업무에 컴퓨터를 활용있는 분야를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 발주/생산 판매/재고 기타

-끝-

6 온라인유통

ID

구매대행, 온라인판매, 온라인판매중계업 관련 전안법 영향 심층조사

2017년 3월에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르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KC마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구매대행 및 온라인판매, 온라인판매중계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이하 KC인증)를 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구매대행 또는 온라인판매업자, 온라인판매중계업자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KC마크)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전안법이 소규모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조사내용은「통계법」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특히 매출액 등은 통계목적 이외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련 연락처 : 맥스컨설팅(주) 조운재 (02-3474-090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종민(042-363-788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KC마크 부착 대상 제품)

- 가정용 섬유제품 : 내의, 중의, 외의 및 신발류 등 대부분의 섬유제품
- 가죽제품 : 옷, 신발 등 가죽제품
- 접착성금속장신구 : 금속이 포함된 악세서리류(14K 이상은 제외)
- 가구 : 목재류로 제작된 대부분의 가구
- 안경 및 선글라스 : 금속이 붙은 안경테와 선글라스
- 블라인드 등

【응답자 선정 질문】

귀하가 구매대행 또는 온라인판매 및 온라인판매중계하는 품목은 어떤 것인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섬유제품 <input type="checkbox"/> 가죽제품 <input type="checkbox"/> 가구 <input type="checkbox"/> 안경/선글라스 <input type="checkbox"/> 장신구(악세서리)	→ 설문 계속
<input type="checkbox"/> 해당 품목 없음	→ 응답 중단

【업체 현황 정보】

응답자	응답자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직원	연령	세
	종사자수 (대표포함)	명	사업기간	년

문2-5. 귀사에서 매월 신규로 등록하는 신상품은 몇 가지나 됩니까?
(주문을 위한 상세페이지를 작성 단위를 1건으로 계산)

월간 신상품 등록건수	개
-------------	---

문2-6. 귀사가 구매대행 전에 상품을 직접 구입 또는 샘플을 받아 상품의 안전성이나 성능, 품질 등을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전체 구매대행 상품 중 몇 퍼센트나 됩니까?

구매대행 상품으로 등록하기 전에 상품의 실물을 입수하여 검사분석하는 상품의 비율	%
--	---

문2-7. 귀사가 구매대행하는 상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대상 제품(의류, 신발, 약세서리, 안경/선글라스, 가구류)은 대략 몇 퍼센트(%)나 됩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10% 미만 ③ 10~30% 미만 ④ 30~50%미만 ⑤ 50% 이상

【온라인 판매업】

문3-1. 귀사는 오픈몰에서 상품을 판매하십니까?

- ① 오픈몰에서 상품을 판매 중이다
② 오픈몰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 문4-1로 진행

문3-2. 귀사가 오픈마켓에서 팔고 있는 상품은 대략 몇 가지나 됩니까?

- * 주문자를 위한 상세페이지 한 개를 하나의 상품으로 계산
*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의 상황 파악을 위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중인 상품의 수	가정용 섬유제품(의류 등)	개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개
	가죽제품(신발,핸드백 등)	개
	가구류	개
	접촉성금속장신구(약세서리류)	개
	기타	개

문3-3. 귀사가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 KC마크가 표시된 상품은 대략 몇 퍼센트(%)나 됩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10% 미만 ③ 10~30% 미만 ④ 30~50%미만 ⑤ 50% 이상

문3-4. 귀사에서 매월 신규로 등록하는 신상품은 몇 가지나 됩니까?
(주문을 위한 상세페이지를 작성 단위를 1건으로 계산)

월간 신상품 등록건수	개
-------------	---

